



 **한-중 국제공동연구 가이드라인**
(KOREA-CHINA Collaborative Research IP Tool-Kit)

2015.10.14.
법무법인 다래

목 차

| | |
|------------------------------|-----|
| I. 국제공동연구 가이드라인 | 7 |
| (중국의 법 제도를 중심으로) | |
| II. 국제공동연구 계약서 설명 | 60 |
| III. 국제공동연구 계약서 | 126 |
| IV. 국제공동연구 협력 의향서(MOU) | 188 |
| V. 비밀보호 협약서(NDA) | 214 |
| VI. 국제공동연구 관련 용어의 해설 | 244 |
| VII. 국제공동연구 계약 체크리스트 | 252 |

1. 국제공동연구 가이드라인

(중국의 법 제도를 중심으로)

목 차

| | |
|--|----|
| 1. 한 - 중 국제공동연구 현황 | 9 |
| 2. 중국 특색의 전리제도 | |
| 가. 중국의 전리제도 일반 | 12 |
| 나. 중국 특색의 신용신안제도 | 14 |
| 다. 비밀심사 제도 | 16 |
| 라. 중국에서 전리권 등 출원시 유의사항 | 17 |
| 3. 국제공동연구 성과물의 권리화와 배분 | |
| 가. 국제 공동연구와 성과물 배분의 유형 | 20 |
| 나. 전리권 등의 단독소유와 공동소유 | 20 |
| 다. 전리권 등의 사용권 | 21 |
| 4. 기술수출입에 관한 중국 법규 | |
| 가. 계약법 | 23 |
| 나. 기술계약 분쟁 심리의 법률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 | 31 |
| 다. 대외무역법 | 37 |
| 라. 기술수출입관리조례 | 39 |
| 마. 기술수출입계약 등록관리 규칙 | 43 |
| 바. 전리 실시허가계약 등록방법 | 44 |
| 5. 비밀보호 | |
| 가. 물리적 접근통제 | 47 |
| 나. 비밀유지 의무의 부과 | 49 |
| 다. 종업원에 대한 경업제한 약정 | 50 |
| 6. 직무발명 | |
| 가. 전리법상 직무발명 | 51 |
| 나. 전리법 실시세칙상 직무발명 | 52 |

| | |
|-------------------------|----|
| 다. 직무발명 조례(안) | 53 |
| 7. 중국의 지식재산법원과 중재기관 | |
| 가. 지식재산법원의 신설 | 55 |
| 나.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 56 |
| 다. 북경 중재위원회 | 57 |

1. 한-중 국제공동연구 현황

세계적으로 R&D 개발에 투자하는 금액은 수치로 쉽게 환산하기 어려울 만큼 크다. R&D 투자에 관한 최근의 추이를 보면,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한국과 중국 등의 R&D 투자는 증가하고 있다. OECD 전망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현 추세대로 R&D 투자를 늘리면 2019년 세계 최대 R&D 투자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 R&D 개발이 확대되는 만큼 각 국가 영역 내의 연구개발을 넘어 다수 국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주체간의 협력을 통해 성과를 얻어내는 국제공동연구도 활발해지고 있다.

그림. 국가별 과학기술 R&D 투자 추세



출처:미래창조과학부

중국은 70년대 개혁 개방 이후로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첨단기술 산업화를 국정 아젠다로 추진하는 과학기술 드라이브 정책으로 2014년 기준 세계 1위 연구개발(R&D)인력, 연구개발 투자 세계 2위, 연간 과학인용색인(SCI) 논문 세계 2위(13년 OECD Technology & Industry Scoreboard) 국가로 성장하였다.

한국과 중국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과학기술분야에 있어서 교류를 이어 왔고, 최근 들어 중국의 비약적인 경제 발전과 양국의 우호 관계로 인하여 한국과 중국 간의 국제공동연구가 더욱 활발해지는 추세이다. 한국 미래창조과학부와 중국 과학기술부가 2014년 12월 8일 과학기술 분야 '대형 실용화 합작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사업화'를 이루기 위하여 양해각서

(MOU)를 체결한 바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 국제공동연구와 관련하여, 한국 측 연구자들의 이해를 위해 중국의 관련 법제도와 유의사항 등을 설명함으로써 협약 체결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한-중 국제공동연구 협약 체결시 유의사항〉

- ◎ 한국과는 다른 중국 특색의 지식재산권 제도 및 법률 제도가 운영되므로 중국 법률 및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 ◎ 공동연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 품목이 중국 법률에 의하여 제한/금지 되는 품목인지를 확인해 보아라.
 - 국제 공동연구는 성과물의 귀속과 배분과정에서 ‘기술의 수출입’(특허권 양도, 특허실시허가 등) 문제와 연결된다.
 - 중국의 기술 수출입 금지 품목의 경우 수출입 자체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므로 국제공동연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 중국의 기술 수출입 제한 품목의 경우, 중국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기술 수출입이 가능하다.
- ◎ 계약 종류별, 기술유형별 행정신고 절차 구분이 구분되어 있음을 주의하라.
 - 중국 상무기관에는 기술수출입 허가/계약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전리권 등의 실시허락이 이루어지는 경우 지식재산권 관련기관에 계약을 등록해야 한다.
- ◎ 유효한 기술 수출입 계약이 체결되면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기술 수출입 계약 정보관리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한다.
- ◎ 실시허가 계약의 유형이 독점/배타/보통 실시허가 계약으로 구분됨을 유의하라.
- ◎ 중국의 기술 실시허가계약에서는 라이선서가 제공기술의 완전성, 무오류성, 유효성과 목표 달성을 보증하게 되어 있음을 유의하라(중국 계약법 제 349조, 기술수출입관리 조례 제25조 참고).

- ◎ 공동연구 협약에서, 당사자 쌍방이 후속하는 개량기술 성과의 귀속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중국 계약법 및 기술수출입관리 조례에 의해 개량기술의 성과가 개량자 측에 귀속될 수 있음을 유의하라(중국 계약법 제354조, 기술수출입관리 조례 제61조 참고).
- ◎ 비밀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라
 - 비밀정보를 파악할 자의 수를 엄격하게 컨트롤해야 한다.
 -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종업원, 하청업체, 라이선시 등과 비밀유지계약 혹은 보안각서 등을 꼭 체결해야 한다.
- ◎ 분쟁해결의 방법은 법원에 제소 혹은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 방식 중에서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공동연구협약에 중재조항을 삽입하는 경우 중재판정에 불만이 있더라도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2. 중국 특색의 전리제도

가. 중국의 전리제도 일반

중국은 지식재산권을 지식산권(知识产权)이라 하며, 전리권, 상표권, 판권, 및 영업비밀 등 기타권리로 구분한다. 또한, 전리권에는 발명전리(한국의 특허발명), 실용신형전리(한국의 실용신안), 외관설계전리(한국의 디자인)로 구분된다.

한국 특허법은 ‘특허발명’만을 보호하고,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대해서는 실용신안보호법 및 디자인보호법이라는 별개의 법으로 보호한다. 반면, 중국 전리법 제2조에서 전리라 함은 발명전리, 실용신안 및 디자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전리법(专利法)’에서 이를 함께 규율하고 있다.

한국은 상표권 및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관련 업무는 특허청(저작권은 제외) 소관이지만, 중국에서는 전리권은 국가지식산권국에, 상표권 및 영업비밀 등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소관이다.



중국 지식재산 보호의 큰 특징은 ‘행정보호’와 ‘사법보호’의 이중적인 보호(쌍궤제)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전리권 등에 대한 침해행위가 있을 때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전리국 혹은 공상국에 청구하여 침해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할 수 있으며 동시에 두 가지 보호를 다 받을 수도 있다.

표. 행정구제와 사법구제의 비교

| 구 분 | 행정구제 | 사법구제 |
|-------|------------------|------------------|
| 시간 | 단기에 처리가능 | 장기화 될 수 있음 |
| 비용 | 상대적으로 비용 저렴 | 비용 비쌈 |
| 절차난이도 | 간단 | 복잡 |
| 증거요건 | 비교적 엄격함 | 매우 엄격함 |
| 집행력 | 집행력이 약함 | 집행력이 강함 |
| 손해배상 | 크지 않음 | 상대적으로 많이 받음 |
| 장점 | 명확한 상표침해 단속에 효율적 | 복잡한 발명전리 침해에 효율적 |

중국 정부도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2014. 8. 31. 전국인민대표회의 결정을 통하여 지식재산권 관련사건을 전문적으로 심리하는 지식재산권 법원을 북경, 상해, 광주 3개의 도시에 설립하여 운영 하는 등 지식재산권의 창출, 보호, 활용의 측면에 있어서 비약적인 발전이 계속되고 있다.

나. 중국 특색의 실용신안 제도

최근 일본, 미국 등 주요 외국 기업들의 중국 내 실용신안 출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실용신안 출원 증가율이 87.3%에 이르고 있다. 이는 중국의 실용신안이 발명전리에 준하는 권리를 보장하지만, 권리의 유효성을 까다롭게 심사하는 발명전리와 달리 형식적인 심사만 거치는 무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그 등록이 매우 간단하다는 특징 때문이다.

표. 중국 실용신안 제도의 특징

| | |
|------------|---|
| 출원비용 저렴 | 출원비용이 최초 등록시까지 발명전리와 비교하여 대략 1/4정도 밖에 들지 않음(OA 비용이 거의 없는 편임) |
| 신속한 권리획득 | 발명전리는 대략 22개월 이상 실용신안은 대략 5개월 정도 |
| 권리행사 제약 없음 | 발명전리와 비교하여도 권리행사에 제약이 없음 - 등록받으면 별도의 절차 없이 곧바로 권리행사 가능 |
| 무효시키기 어려움 | 실용신안은 발명전리에 비해 진보성 기준이 낮으므로 등록이후 무효화도 쉽지 않음 |
| 보호기간 충분 | 권리보호 기간 10년 (특허 20년) 기술사이클이 짧은 분야나 조기 실시가 필요한 기술의 경우 아주 유용 |
| 이중출원제도 활용 | 이중 출원제도가 있어 동일 기술에 대해 실용신안과 발명전리를 동시에 출원하고 먼저 실용신안권을 행사한 후 발명전리권 등록이 되면 실용신안권을 포기하면서 특허권을 행사하는 전략도 활용이 가능 (실용신안 공고 후 발명전리 공고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발명을 실용신안으로 보호할 수 있음) |

다만, 실용신안은 ‘고안’에 대해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방법전리’의 경우 실용신안으로 출원하기에 적절치 않다.

중국 실용신안 제도가 '중국식의 특허괴물(Patent troll)'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있고, 중국 내에서도 ‘무심사 주의’라는 특징으로 인해 실용신안에 대한 무효심사 청구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용신안 권리에 불안정성이 존재한다는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중국도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중국 지식산권국을 통한 ‘전리권 평가보고서’ 제도를 도입하고, 실용신안권에 대한 권리성 확인을 통해 실용신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침해 소송시 증거로 활용하여 심리의 효율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특색의 ‘실용신안 제도’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바, 국내 기업들도 그 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중국 내 특허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 비밀심사제도 (중국 전리법 제20조)

중국 전리법 제20조 제1관에 의하면, 어떠한 단위(단체)나 혹은 개인이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 혹은 실용신안을 외국에 전리 신청할 경우, 응당 먼저 중국 국무원 전리행정부문에서 시행하는 ‘비밀심사’를 받아야 한다. 동법 제4관에 의하면, 본 규정에 위반하여 외국에 발명 혹은 실용신안 전리 신청을 하는 경우, 중국에서 신청한 전리는 권리권 수여를 받지 못한다. 전리법 실시세칙 제8조 제1관에서,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이라 함은 기술방안의 실질적 내용이 중국 경내에서 완성된 발명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규정에서 ‘어떠한 단위(단체) 혹은 개인’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밀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중국 기업 혹은 개인뿐만 아니라, 외국기업 혹은 개인도 ‘중국 경내에서 완성한 발명 혹은 실용신안’에 대해서는 비밀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실무상 이해하고 있다.

또한, 전리국의 ‘전리침사지침(2010)’ 제1부분 제7.3절에서, 초보 심사 중에 심사원이 신청인이 전리법 제20조를 위반하여 외국에 전리 신청을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국내에 같은 발명에 대해 제출된 전리 신청에 대해서, 응당 ‘심사의 견통지서’를 내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신청인이 제출한 이유가 부족한 경우, 심사원은 전리법 제20조 제1관, 제4관 위반 및 전리법 실시세칙 제44조 위반을 이유로 전리 신청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 단위(단체)나 개인은 중국이 참여하는 국제 조약에 의하여 특히 국제 신청이(PCT 신청) 가능하고, 국무원 전리행정부문(중국 전리국)이 조약, 법률, 국무원 관련 규정에 의하여 특히 국제 신청을 처리한다. 중국 경내에서 완성된 발명 혹은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비밀심사’ 제도로 인하여 PCT 신청을 함에 있어서 ‘WIPO’ 등 다른 수리 관청에 신청을 할 수 없고, 중국 전리국에 PCT 신청을 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라. 중국에서 전리권 등 출원시 유의사항

1. 중국출원의 대략적인 비용 (20페이지, 10개항 기준)

| 구분 | 출원 및 심사청구 | 중간단계 | 등록단계 |
|------|-----------|---|-----------|
| 특허 | 450~500만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A 1회당 150~250만원 • OA는 1~2회가 일반적이거나, 3회 이상인 경우도 있음 | 200~250만원 |
| 실용신안 | 350~450만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A가 없거나, 있더라도 형식적 하자이므로 50~100만원 | 180~230만원 |

2. 실용신안을 적극 활용하자

- 중국에서 실용신안은 형식적 사항만 심사함
- 심사기간이 6~9개월이고, 심사통과율이 90% 이상이며, 특허와 마찬가지로 권리행사 가능함
- 다만, 존속기간은 10년으로서 특허보다 짧음
- 규정상으로는 "명백한" 신규성 결여를 심사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심사관이 선행기술을 검색하지 않으므로 "명백한" 신규성 결여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음
- 신규성 및 진보성이 결여된 실용신안등록은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될 수 있으나, 무효율이 높지 않고 많은 시간이 소요됨 → 일단 등록만 받으면 이용 가치가 있음
- 다만, 물건의 형상/구조만 대상으로 하므로 프로세스, 재료 등에 특징이 있는 발명은 실용신안으로 진행하기 곤란함

3. 홍콩특허는 별개이다

- 일국양제에 따라 홍콩에는 중국 본토와 별개의 법률이 적용됨 → 중국특허를 등록받는 것만으로는 홍콩에서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음
- 홍콩은 별도로 특허등록을 받아야 함 → 중국특허 공개일로부터 6개월 내에 홍콩등록신청 하면 중국특허가 등록될 경우 홍콩에서도 특허권을 취득함
- EP 출원 또는 영국출원에 기초하여 홍콩에 등록신청하는 방법도 있음

4. 중국어 이외의 언어로는 출원할 수 없다

- 미국, 일본과는 달리 중국에는 외국어출원제도가 없음
- 파리조약에 의한 출원의 경우 반드시 우선기간 이내에 중국어명세서를 완성해야 함
- 실무상 한국어→영어→중국어의 번역단계를 거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국 출원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해야 함
- 다만, PCT 중국진입의 경우 번역문 유예제도가 있음 → 수수료를 납부하면 중국어명세서 제출을 2개월 유예받을 수 있음

5. 중국어 번역의 실무 프로세스

- 실무상으로는 ① 영문명세서를 중국대리인에게 송부하여 중국어로 번역하게 하는 방법, ② 국문명세서를 중국대리인에게 송부하여 중국어로 번역하게 하는 방법, ③ 국내에서 중문명세서를 작성하여 중국대리인에게 송부하는 방법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④ 일문명세서를 중국대리인에게 송부하여 중국어로 번역하게 하는 방법도 있음
- 영문이 존재한다면 ①의 방법이 바람직함 → (i) 중국어명세서는 중국대리인이 가장 잘 작성할 수 있고, (ii) 중국대리인이 번역할 경우 한중 번역보다는 영중 번역의 질이 높은 경우가 많으며, (iii) 출원후 중간단계에서 출원인, 국내 대리인 및 중국대리인이 출원 내용에 관한 의사소통을 하려면 영문명세서가 필요함
- 다만, 출원인 또는 국내 대리인이 중국어명세서를 잘 이해할 수 있거나 중국대리인이 한국어명세서를 잘 이해할 수 있다면 ② 또는 ③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6. 중국출원과 대만출원을 모두 진행하는 경우

- 대만 특허청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기본적으로 중국 본토와 같음 → 글자체가 다르고, 용어가 일부 다르며, 표현이 일부 상이함
- 중국출원 명세서를 대만대리인에게 송부하거나 대만출원 명세서를 중국대리인에게 송부하면 중국어 번역비용이 절감됨 → 글자체, 용어, 표현 등의 수정으로 인한 수수료만 발생함

7. 출원전에 공지되면 예외를 인정받기 어렵다

- 중국은 공지에외를 제한적으로만 인정함 → 한국보다 인정범위가 좁음
- 중국정부가 주최하거나 승인하는 국제박람회에 전시하거나, 소정의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에서 발표하거나, 타인이 출원인의 승낙 없이 발명을 누설한 경우에만 공지에외가 적용되고, 해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해야 함
- 한국출원에서 공지에외를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중국출원에서는 인정 못받는 사례가 많음

8. 1차 OA 이후에는 보정 범위가 제한된다

- 중국출원의 1차 OA 이후에는 한국보다 보정 범위가 좁아짐
- 1차 OA 이후에는 독립항의 보호범위를 확대/변경할 수 없고, 원 청구범위에 없었던 기술방안에 관한 청구항을 임의로 신설할 수 없음
- 청구항 또는 명세서의 보정이 필요하다면 1차 OA 이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함
- 1차 OA 이전의 자진보정은 (i) 실질심사청구와 동시에 하거나 (ii) 실질심사단계 진입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함

3. 국제공동연구 성과물의 권리화와 배분

가. 국제공동연구와 성과물 배분의 유형

본 연구에서는 한-중 국제공동연구 모델계약을 작성함에 있어서 성과물 귀속에 따라 모델 계약의 유형을 구분하지 아니하였다. 향후, 한-중 간 국제공동연구의 성숙도를 고려하여 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약의 유형을 구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 제1유형 | 제2유형 | 제3유형 |
|-------------------|----------------|----------------------------|
| 일방이 지식재산권 소유 | 일방이 지식재산권 소유 | 공동연구 당사자 간 성과물인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
| 상대방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권 | 상대방은 학술적 목적 이용 | |

나. 전리권 등의 단독소유와 공동소유

1) 전리권과 권리귀속

전리법 제9조에서 동일한 발명창조에 대해서는 하나의 전리권만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에서는 ‘전리를 출원할 권리’와 ‘전리권’은 양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전리권의 공동소유

전리권의 공동소유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법 규정은 아래와 같다. 양 국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의 특허법은 특허권의 공유관계에 있어서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특허권에 대하여 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지만, 중국 전리법은 약정이 없는 경우 단독으로 타인에게 해당 전리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 한국 <특허법> | 중국 <전리법> |
|---|--|
| <p>제33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p> <p>제44조 [공동출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p> <p>제99조 [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 ① 특허권은 이전할 수 있다. ②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③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④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p> | <p>제8조 [합작 발명전리권 귀속] 둘 이상의 단위 또는 개인이 합작하여 완성한 발명창조, 하나의 단위 또는 개인이 기타 단위 또는 개인의 위탁을 받아 완성한 발명창조는 별도의 협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리를 출원할 수 있는 권리는 완성 또는 공동 완성한 단위 또는 개인에 속하며, 출원이 비준된 후 출원한 단위 또는 개인이 전리권자이다.</p> <p>제15조 [전리 공유] 전리출원권 또는 전리권의 공유자가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 그 약정에 따른다. <u>약정이 없는 경우, 공유자는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보통 허가 방식으로 타인에게 당해 전리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u> 타인에게 당해 전리의 실시를 허락한 경우, 취득한 실시료는 공유자간에 분배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공유의 전리출원권 또는 전리권의 행사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p> |

다. 전리권 등의 사용권

중국 전리법 제12조에서 『어떠한 단위(단체)나 개인을 불문하고 타인의 전리를 실시하려면 전리권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전리권자에게 전리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라이선스를 취득한 자는 계약에서 규정한 외에 그 어떠한 단위나 개인에게 당해 전리의 실시를 허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전리 등 라이선스 관계는 라이선스 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다.

중국에서 라이선스를 체결할 때에는 독점허가, 배타허가, 일반허가 등의 의미와 범위에 대해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최고인민법원의 기술계약 분쟁사건 심리에 적용되는 법률에 관한 약간의 문제 해석 제25조 참고).

1) 보통실시(普通实施)허가

보통실시허가 계약에 따르면, 라이선서와 라이선시 모두 동일한 지역과 시간 내에 해당 전리를 실시할 수 있고, 또한 라이선서는 제 3자에게 중첩적으로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통상실시권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2) 배타실시(排他实施)허가

배타실시허가는 라이선시에게 배타적 실시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즉, 라이선서 자신은 해당 전리에 대한 실시권이 있으나 제 3자에게 실시권을 부여하지 못한다. 배타실시 허가와 아래 독점실시 허가의 차이점은, 라이선서에게 실시권이 있는지 여부이다.

(3) 독점실시(独占实施)허가

독점적 실시허락은 라이선서가 계약에서 약정한 시간과 지역 범위 내에서 라이선서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실시권을 배척하고 라이선시에게만 실시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전용실시권과 유사하다.

(4) 기타

위에서 언급한 허가 방식 이외에도, 서브라이선스 개념인 분실시(分实施)허가, 크로스라이선스 개념인 교차실시(交叉实施)허가가 있다.

4. 기술수출입에 관한 중국 법규

국제공동연구는 국적을 달리하는 복수의 연구주체가 과학 기술 분야에 상호 협력하여 얻어낸 성과물을 지식재산권으로 권리화하고, 그 권리배분 과정에서 국경을 넘어선 기술의 교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진다. 중국에서는 이와 같은 국경을 넘어선 기술 교류 및 거래를 ‘기술 수출입(技术进出口)’이라 칭한다.

중국에서 기술 수출입과 관련되어 적용될 수 있는 법규는 아래와 같다.

| 구 분 | 법 규 |
|-----|--|
| 1 |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
| 2 |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
| 3 | 중화인민공화국 기술수출입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技术进出口管理条例) |
| 4 | 최고인민법원의 기술계약 분쟁 사건 심리에 적용되는 법률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해석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技术合同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
| 5 | 기술수출입계약 등록관리방법 (技术进出口合同登记管理办法) |
| 6 | 중국 기술 수출입 제한/금지 목록 |

가. 계약법

중국 계약법(合同法) 제18장에서는 ‘기술계약(技术合同)’에 대한 별도의 장을 두고 있다. 중국 계약법 제2절(제330조 내지 제341조)에서는 '기술개발계약'을 규정하고 있고, 제3절(제324조 내지 355조)에서는 '기술양도계약'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절(제356조 내지 364조)에서는 '기술자문계약'과 '기술서비스계약'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공동연구 협약도 당사자 간에 작성된 '계약'이므로 당연히 당사자 간 계약 해석에 있어서 중국 계약법 제18장 '기술계약' 부분이 기준이 된다. 특히 당사자 간에 공동 연구개발을 한다는 점에서 제2절 '기술개발계약' 부분이, 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의 실시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3절 '기술양도계약' 부분이 적용된다(계약법 제342조에서 '특히 실시허가 계약'도 기술양도 계약의 하나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특허 라이선스 계약은 중국 계약법 제342조 내지 제355조 기술양도계약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국제공동연구 협약도 당사자 간에 작성된 '계약'이므로 당연히 당사자 간 계약 해석에 있어서 중국 계약법 제18장 '기술계약' 부분이 기준이 된다. 특히 당사자 간에 공동 연구개발을 한다는 점에서 제2절 '기술개발계약' 부분이, 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의 실시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3절 '기술양도계약' 부분이 적용된다(계약법 제342조에서 '특히 실시허가 계약'도 기술양도 계약의 하나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특허 라이선스 계약은 중국 계약법 제342조 내지 제355조 기술양도계약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아래 계약법의 규정은 중국 국내 당사자 간의 기술계약인지 혹은 외국인과의 기술수출입 관련 계약인지 여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중국법의 규율을 받은 '기술계약' 전부에 적용된다.

| 주요 내용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은 당사자 간 '계약' 해석의 기준이 됨 • 계약법 제18장에서는 국제공동연구와 관련된 기술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18장 제2절 제330조 내지 제341조에서 기술개발 계약에 관한 규정, 제3절 제342조 내지 제355조에서 기술양도계약에 관한 내용을 두고 있음 (관련 조항 : 제330조~제355조) | |
| 국제공동연구 관련 규정 | 관련 규정의 해석 |
| 第十八章 技术合同 第二节 技术开发合同 | 제18장 기술계약 제2절 기술개발계약 |
| 第三百三十条 技术开发合同是指当事人之间就新技术、新产品、新工艺或者新材料及其系统的研究开发所订立的合同。 技术开发合同包括委托开发合同和合作开发合同。 | 제330조 ① 기술개발계약은 당사자간에 신기술 신상품 신공예 또는 신재료 및 그 계통의 연구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다. ② 기술개발계약은 위탁개발계약과 합작 |

| 국제공동연구 관련 규정 | 관련 규정의 해석 |
|---|--|
| <p>技术开发合同应当采用书面形式。 当事人之间就具有产业应用价值的科技成果实施转化订立的合同，参照技术开发合同的规定。</p> | <p>개발계약을 포함한다. ③ 기술개발계약은 서면형식으로 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간에 산업응용가치를 가진 과학 기술성과의 전환(转化)실시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기술개발계약의 규정을 참조한다.</p> |
| <p>第三百三十一条 委托开发合同的委托人应当按照约定支付研究开发经费和报酬；提供技术资料、原始数据；完成协作事项；接受研究开发成果。</p> | <p>제331조 위탁개발계약의 위탁자는 약정에 따라 연구개발경비와 보수를 지불하여야 하고, 기술자료 원본(原始)데이터를 제공하고, 협조제작사항을 완성하고, 연구 개발성과를 받는다.</p> |
| <p>第三百三十二条 委托开发合同的研究开发人员应当按照约定制定和实施研究开发计划；合理使用研究开发经费；按期完成研究开发工作，交付研究开发成果，提供有关的技术资料和必要的技术指导，帮助委托人掌握研究开发成果。</p> | <p>제332조 위탁개발계약의 연구개발자는 약정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고, 연구개발경비를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기간에 따라 연구개발 작업을 완성하여 연구개발성과를 교부하고 관련된 기술자료와 필요한 기술지도를 제공하여 위탁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장악하는데 도와야 한다.</p> |
| <p>第三百三十三条 委托人违反约定造成研究开发工作停滞、延误或者失败的，应当承担违约责任。</p> | <p>제333조 위탁자가 약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작업의 정체·연기 또는 실패를 야기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p> |
| <p>第三百三十四条 研究开发人员违反约定造成研究开发工作停滞、延误或者失败的，应当承担违约责任。</p> | <p>제334조 연구개발자가 약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작업의 정체·연기 또는 실패를 야기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p> |
| <p>第三百三十五条 合作开发合同的当事人应当按照约定进行投资，包括以技术进行投资；分工参与研究开发工作；协作配合研究开发工作。</p> | <p>제335조 합작개발작업의 당사자는 약정에 따라 투자를 진행하여야 하고, 기술로 투자를 진행하는 것을 포함하고, 업무를 나누어 연구개발업무에 참여하고, 연구개발작업에 협력하고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p> |

| 국제공동연구 관련 규정 | 관련 규정의 해석 |
|--|--|
| <p>第三百三十六条 合作开发合同的当事人违反约定造成研究开发工作停滞、延误或者失败的，应当承担违约责任。</p> | <p>제336조 합작개발계약의 당사자가 약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이 정체·지연 또는 실패하는 경우,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p> |
| <p>第三百三十七条 因作为技术开发合同标的的技术已经由他人公开，致使技术开发合同的履行没有意义的，当事人可以解除合同。</p> | <p>제337조 기술개발계약 목적으로서의 기술이 이미 다른 사람이 공개하여 기술개발계약의 이행에 의미가 없게 되는 경우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p> |
| <p>第三百三十八条 在技术开发合同履行过程中，因出现无法克服的技术困难，致使研究开发失败或者部分失败的，该风险责任由当事人约定。没有约定或者约定不明确，依照本法第六十一条的规定仍不能确定的，风险责任由当事人合理分担。</p> <p>当事人一方发现前款规定的可能致使研究开发失败或者部分失败的情形时，应当及时通知另一方并采取适当措施减少损失。没有及时通知并采取适当措施，致使损失扩大的，应当就扩大的损失承担责任。</p> | <p>제338조</p> <p>① 기술개발계약이행 과정 중에 극복할 수 없는 기술곤란으로 연구개발이 실패하거나 부분 실패하는 경우, 그 위험책임은 당사자가 약정한다.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하여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위험책임은 당사자가 부담한다.</p> <p>② 당사자 일방이 전항 규정의 가능성이 연구개발의 실패 또는 부분 실패시키는 정황을 발견한 때에 즉시 다른 일방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적당한 손실감소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손실을 확대시키는 경우, 확대된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p> |
| <p>第三百三十九条 委托开发完成的发明创造，除当事人另有约定的以外，申请专利的权利属于研究开发人。研究开发人取得专利权的，委托人可以免费实施该专利。</p> <p>研究开发人转让专利申请权的，委托人享有以同等条件优先受让的权利。</p> | <p>제339조</p> <p>① <u>위탁개발이 창조한 발명창조는 당사자에게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신청의 권리를 연구개발자에게 귀속한다.</u> 연구개발자가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는 그 특허를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p> <p>② 연구개발자가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위탁자는 동등한 조건으로 우선 양수의 권리를 향유한다.</p> |

| 국제공동연구 관련 규정 | 관련 규정의 해석 |
|---|--|
| <p>第三百四十条 合作开发完成的发明创造, 除当事人另有约定的以外, 申请专利的权利属于合作开发的当事人共有。当事人一方转让其共有的专利申请权的, 其他各方享有以同等条件优先受让的权利。</p> <p>合作开发的当事人一方声明放弃其共有的专利申请权的, 可以由另一方单独申请或者由其他各方共同申请。申请人取得专利权的, 放弃专利申请权的一方可以免费实施该专利。</p> <p>合作开发的当事人一方不同意申请专利的, 另一方或者其他各方不得申请专利。</p> | <p>제340조</p> <p>① <u>합작개발이 완성한 발명창조는 당사자에게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신청의 권리를 합작개발의 당사자 공유로 귀속한다.</u> 당사자 일방이 그 공유한 특허신청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기타 각자는 동등한 조건으로 우선 양수의 권리를 향유한다.</p> <p>② 합작개발 당사자 일방이 공유하는 특허신청권의 포기를 표명하는 경우,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기타 각자가 공동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인이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 특허신청권리를 방치한 일방은 무상으로 특허를 실시할 수 있다.</p> <p>③ 합작개발의 당사자 일방이 특허신청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다른 일방 또는 기타 각자는 특허를 신청할 수 없다.</p> |
| <p>第三百四十一条 委托开发或者合作开发完成的技术秘密成果的使用权、转让权以及利益的分配办法, 由当事人约定。没有约定或者约定不明确, 依照本法第六十一条的规定仍不能确定的, 当事人均有使用和转让的权利, 但委托开发的研究开发人不得在向委托人交付研究开发成果之前, 将研究开发成果转让给第三人。</p> | <p>제341조</p> <p>위탁개발 또는 합작개발이 완성한 기술비밀성과의 사용권·양도권 및 이익의 분배방법은 당사자가 약정한다.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하여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는 균등하게 사용·양도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다만 위탁개발의 연구개발자는 위탁자에게 연구개발 성과를 교부하기 전에 연구개발 성과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p> |
| <p>第三节 技术转让合同</p> <p>第三百四十二条 技术转让合同包括专利权转让、专利申请权转让、技术秘密转让、专利实施许可合同。</p> <p>技术转让合同应当采用书面形式。</p> | <p>제3절 기술양도계약</p> <p>제342조</p> <p><u>기술양도계약은 특허권양도·특허신청권양도·기술비밀양도·특허실시허가 계약을 포함한다.</u></p> <p>기술양도계약은 서면형식으로 하여야 한다.</p> |
| <p>第三百四十三条 技术转让合同可以约定</p> | <p>제343조</p> |

| 국제공동연구 관련 규정 | 관련 규정의 해석 |
|---|---|
| <p>让与人和受让人实施专利或者使用技术秘密的范围，但不得限制技术竞争和技术发展。</p> | <p>기술양도계약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허 실시 또는 기술비밀 사용의 범위를 약정할 수 있고, 다만 기술경쟁과 기술발전을 제한할 수 없다.</p> |
| <p>第三百四十四条 专利实施许可合同只在该专利权的存续期间内有效。专利权有效期限届满或者专利权被宣布无效的，专利权人不得就该专利与他人订立专利实施许可合同。</p> | <p>제344조 <u>특허실시허가 계약은 오직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 내에 유효하다.</u> 특허권 유효기간 만료 또는 특허권이 무효로 선포되는 경우, 특허권자는 그 특허에 관해 타인과 특허실시허가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p> |
| <p>第三百四十五条 专利实施许可合同的让与人应当按照约定许可受让人实施专利，交付实施专利有关的技术资料，提供必要的技术指导。</p> | <p>제345조 특허실시허가계약의 양도자는 약정에 따라 양수인의 특허실시를 허가하여야 하고, 특허실시와 관련 있는 기술자료를 교부하고, 필요한 기술지도를 제공하여야 한다.</p> |
| <p>第三百四十六条 专利实施许可合同的受让人应当按照约定实施专利，不得许可约定以外的第三人实施该专利；并按照约定支付使用费。</p> | <p>제346조 특허실시허가계약의 양수인은 약정에 따라 특허를 실시하여야 하고, 약정 이외의 제3자가 그 특허의 실시를 허가할 수 없고 약정에 따라 사용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p> |
| <p>第三百四十七条 技术秘密转让合同的让与人应当按照约定提供技术资料，进行技术指导，保证技术的实用性、可靠性，承担保密义务。</p> | <p>제347조 기술비밀양도계약의 양도자는 약정에 따라 기술 자료를 제공하고 기술 지도를 진행하고 기술의 실용성·신뢰성을 보증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p> |
| <p>第三百四十八条 技术秘密转让合同的受让人应当按照约定使用技术，支付使用费，承担保密义务。</p> | <p>제348조 기술비밀양도계약의 양수자는 약정에 따라 기술을 사용하고 사용 비용을 지불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p> |
| <p>第三百四十九条 技术转让合同的让与人应当保证自己是所提供的技术的合法拥有者，并保证所提供的技术完整、无误、有效，能够达到约定的目标。</p> | <p>제349조 <u>기술양도계약의 양도자는 자기가 제공한 기술의 합법소유자임을 보증하여야 하고 제공한 기술이 완전하고 결함이 없고 유효</u></p> |

| 국제공동연구 관련 규정 | 관련 규정의 해석 |
|--|---|
| | <p>함을 보증하고 충분히 약정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증하여야 한다.</p> |
| <p>第三百五十条 技术转让合同的受让人应当按照约定的范围和期限, 对让与人提供的技术中尚未公开的秘密部分, 承担保密义务。</p> | <p>제350조 기술양도계약의 양수자는 약정한 범위와 기한에 따라 양도자가 제공한 기술 중 아직 공개되지 않은 비밀부분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p> |
| <p>第三百五十一条 让与人未按照约定转让技术的, 应当返还部分或者全部使用费, 并应当承担违约责任; 实施专利或者使用技术秘密超越约定的范围的, 违反约定擅自许可第三人实施该项专利或者使用该项技术秘密的, 应当停止违约行为, 承担违约责任; 违反约定的保密义务的, 应当承担违约责任。</p> | <p>제 351조 양도자가 약정에 따라 기술을 양도하지 않는 경우, 사용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하고, 그리고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특허실시 또는 기술비밀 사용이 약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약정을 위반하여 마음대로 제3자가 그 특허를 실시하는 것을 허가하거나 그 기술비밀을 사용하는 경우, 위약행위를 정지하여야 하고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약정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p> |
| <p>第三百五十二条 受让人未按照约定支付使用费的, 应当补交使用费并按照约定支付违约金; 不补交使用费或者支付违约金的, 应当停止实施专利或者使用技术秘密, 交还技术资料, 承担违约责任; 实施专利或者使用技术秘密超越约定的范围的, 未经让与人同意擅自许可第三人实施该专利或者使用该技术秘密的, 应当停止违约行为, 承担违约责任; 违反约定的保密义务的, 应当承担违约责任。</p> | <p>제352조 양수자가 약정에 따라 사용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사용비용을 보전하여야 하고 약정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하고, 사용비용을 보전하지 않거나 위약금을 보전하지 않는 경우, 특허실시나 기술비밀 사용을 정지하여야 하고 기술자료를 반환하고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특허실시 또는 기술비밀 사용이 약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제 3자가 그 특허를 실시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그 기술비밀을 사용하는 경우, 위약행위를 정지하여야 하고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약정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p> |

| 국제공동연구 관련 규정 | 관련 규정의 해석 |
|--|--|
| <p>第三百五十三条 受让人按照约定实施专利、使用技术秘密侵害他人合法权益的，由让与人承担责任，但当事人另有约定的除外。</p> | <p>제353조 양수자가 약정에 따라 특허를 실시하거나 기술비밀을 사용하는 것이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양도자가 책임을 부담하고 다만 당사자에게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p> |
| <p>第三百五十四条 当事人可以按照互利的原则，在技术转让合同中约定实施专利、使用技术秘密后续改进的技术成果的分享办法。没有约定或者约定不明确，依照本法第六十一条的规定仍不能确定的，一方后续改进的技术成果，其他各方无权分享。</p> | <p>제354조 당사자는 상호이익의 원칙에 따라 기술양도계약 중에서 특허실시·기술비밀 사용을 약정한 후 지속적으로 개량한 기술성과의 배당방법을 약정할 수 있다.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하여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불명확한 경우, 일방이 후속적으로 개량한 기술성과는 기타 각자는 배당 받을 권한이 없다.</p> |
| <p>第三百五十五条 法律、行政法规对技术进出口合同或者专利、专利申请合同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p> | <p>제355조 법률·행정법규가 기술수출입계약 또는 특허신청계약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p> |

나. 기술계약 분쟁 심리의 법률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

'사법해석'은 중국 특유의 제도로 이해가 필요하다. 영미법체계에서는 판례가 재판의 가장 중요한 준거가 되나, 중국이나 한국과 같은 성문법 주의 국가에서는 판례가 중요한 준거이기는 하나 영미법체계 만큼은 아니다. 더구나 한국의 경우에는 사법제도가 상대적으로 발달하고 역사가 길어 축적된 판례의 양이 상당하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장기간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해 왔으므로 재판의 준거가 될 판례가 부족하다.

그러므로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사법해석(司法解釋)'을 제시하여, 판사가 구체적인 사안을 판단함에 있어서 법의 흠결을 보충할 판례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기술계약에 관해서도 '최고인민법원의 기술계약 분쟁사건 심리에 적용되는 법률에 관한 약간의 문제 해석(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技术合同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을 통해 당사자 간의 기술계약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할 만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① 양도인과 양수인이 체결한 전리권, 전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계약은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양도인과 타인이 체결한 관련 전리실시허가계약 또는 기술비밀이전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위 사법해설 제24조).
- ② 전리실시허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독점실시허가, 배타실시허가, 일반실시허가로 나뉘는데, 당사자가 전리실시허가 방식에 대해서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일반실시허가로 인정한다. 전리실시허가 계약의 양수인은 타인에게 전리실시를 재허가 할 수 있음을 약정한 경우,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해당 재허가는 일반실시허가로 인정된다(위 사법해설 제25조).
- ③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이미 전리를 출원하였으나 등록되지 않은 기술에 대해 체결한 전리실시허가계약임을 이유로 계약이 무효임을 인정하지 않는다(위 사법해설 제29조).

주요 내용

- 기술개발계약 및 기술이전계약을 포함하는 기술계약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설임(관련 조항 : 제17조~제29조, 제43조)

| 국제공동연구 관련 규정 | 관련 규정의 해석 |
|--|--|
| <p>二、技术开发合同</p> <p>第十七条 合同法第三百三十条所称“新技术、新产品、新工艺、新材料及其系统”，包括当事人在订立技术合同时尚未掌握的产品、工艺、材料及其系统等技术方案，但对技术上没有创新的现有产品的改型、工艺变更、材料配方调整以及对技术成果的验证、测试和使用除外。</p> | <p>2. 기술개발계약</p> <p>제17조 계약법 제330조에서 말하는 ‘신기술, 신제품, 신공정, 신재료 및 그 시스템’은 당사자가 기술계약 체결 시 파악하지 못한 제품, 공정, 재료 및 그 시스템 등 기술방안을 포함하는데, 기술적으로 혁신이 없는 현존 제품에 대한 모델갱신, 공정변경, 재료조제법 조절 및 기술성과에 대한 검증, 테스트와 사용은 제외한다.</p> |
| <p>第十八条 合同法第三百三十条第四款规定的“当事人之间就具有产业应用价值的科技成果实施转化订立的”技术转化合同，是指当事人之间就具有实用价值但尚未实现工业化应用的科技成果包括阶段性技术成果，以实现该科技成果工业化应用为目标，约定后续试验、开发和应用等内容的合同。</p> | <p>제18조 계약법 제330조 제4항에서 규정한 ‘당사자 간에 산업응용가치가 있는 과학기술성과의 전환실시를 위해 체결한’ 기술전환계약이란 당사자 간에 실용가치가 있지만 산업화 응용을 아직 실현하지 않은, 단계적인 기술성과를 포함한 과학기술성과에 대해 그 과학기술성과의 산업화 응용을 목표로 후속 테스트, 개발과 응용 등 내용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p> |
| <p>第十九条 合同法第三百三十五条所称“分工参与研究开发工作”，包括当事人按照约定的计划和分工，共同或者分别承担设计、工艺、试验、试制等工作。 技术开发合同当事人一方仅提供资金、设备、材料等物质条件或者承担辅助协作事项，另一方进行研究开发工作的，属于委托开发合同。</p> | <p>제19조 계약법 제335조에서 말하는 ‘연구개발사업 분담 참여’는 당사자가 약정한 계획과 분담에 따라 디자인, 공정, 테스트, 시험제작 등 업무를 공동으로 또는 각자 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기술개발계약 당사자 한쪽은 자금, 설비, 재료 등 물질적 조건만 제공하거나 또는 협조사항을 담당하고 다른 한쪽에서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할 경우, 위탁개발 계약에 속한다.</p> |
| <p>第二十条 …当事人一方将技术秘密成果</p> | <p>제20조</p> |

| 국제공동연구 관련 규정 | 관련 규정의 해석 |
|--|--|
| <p>的转让权让与他人，或者以独占或者排他使用许可的方式许可他人使用技术秘密，未经对方当事人同意或者追认的，应当认定该让与或者许可行为无效。</p> | <p>… 당사자 한쪽은 기술비밀성과의 양도권을 타인에 양도하거나 독점 또는 배타사용 허가 방식으로 타인이 기술비밀을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고,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 또는 추인이 없는 경우는 그 양도나 허가행위는 무효로 인정해야 한다.</p> |
| <p>第二十一条 技术开发合同当事人依照合同的规定或者约定自行实施专利或使用技术秘密，但因其不具备独立实施专利或者使用技术秘密的条件，以一个普通许可方式许可他人实施或者使用的，可以准许。</p> | <p>제21조 기술개발계약 당사자는 계약법의 규정 또는 약정에 따라 자체로 특허를 실시하거나 기술비밀을 사용할 수 있지만, 독립적으로 특허를 실시하거나 기술비밀을 사용할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일반허가방식으로 타인에게 실시 또는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다.</p> |
| <p>三、技术转让合同</p> <p>第二十二条 合同法第三百四十二条规定的“技术转让合同”，是指合法拥有技术的权利人，包括其他有权对外转让技术的人，将现有特定的专利、专利申请、技术秘密的相关权利让与他人，或者许可他人实施、使用所订立的合同。但就尚待研究开发的技术成果或者不涉及专利、专利申请或者技术秘密的知识、技术、经验和信息所订立的合同除外。</p> <p>技术转让合同中关于让与人向受让人提供实施技术的专用设备、原材料或者提供有关的技术咨询、技术服务的约定，属于技术转让合同的组成部分。因此发生的纠纷，按照技术转让合同处理。</p> <p>当事人以技术入股方式订立联营合同，但技术入股人不参与联营体的经营管理，并且以保底条款形式约定联营体或者联营对方支付其技术价款或者使用费的，视为技术转让合同。</p> | <p>3. 기술이전계약</p> <p>제22조 계약법 제342조에서 규정한 “기술이전계약”이란 대외적으로 기술이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 합법적으로 기술을 소유한 권리가 현존하는 특정 특허, 특허출원, 기술비밀 관련 권리를 타인에 양도하거나 타인이 실시, 사용하도록 허가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단, 아직 연구개발을 하지 않은 기술성과 또는 특허, 특허출원이나 기술비밀에 관련이 없는 지식, 기술, 경험과 정보를 위해 체결한 계약은 제외한다.</p> <p>기술이전계약에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기술 실시를 위해 제공한 전용설비, 원자재 또는 관련 기술자문, 기술서비스에 관련된 약정은 기술이전계약의 구성부분에 속한다. 이로 인해 발생한 분쟁은 기술이전계약에 따라 처리한다.</p> <p>당사자는 기술 지분참여의 방식으로 공동경영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기술 지분 참여자는 공동경영체의 경영관리에 참여하지 않으며 원금보장 조항형식으로 공동경영체나 공동경영 상대방이 기술대금 또는 사용</p> |

| 국제공동연구 관련 규정 | 관련 규정의 해석 |
|--|--|
| | 료를 지불하도록 약정한 경우, 기술이전계약으로 간주한다. |
| <p>第二十三条 专利申请权转让合同当事人以专利申请被驳回或者被视为撤回为由请求解除合同,该事实发生在依照专利法第十条第三款的规定办理专利申请权转让登记之前的,人民法院应当予以支持;发生在转让登记之后的,不予支持,但当事人另有约定的除外。</p> <p>专利申请因专利申请权转让合同成立时即存在尚未公开的同样发明创造的在先专利申请被驳回,当事人依据合同法第五十四条第一款第(二)项的规定请求予以变更或者撤销合同的,人民法院应当予以支持。</p> | <p>제23조 특허출원권 이전 계약의 당사자는 특허출원이 거절되었거나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청구하였으며, 이 사실은 특허법 제10조 제3항에서 규정한, 특허출원권을 이전하는 등록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발생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하며, 이전하는 등록절차를 이행한 후에 발생한 경우,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단,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이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p> <p>특허출원권 이전계약 체결 시 아직 공개되지 않은 동일한 발명창조의 선출원 특허가 있어 특허출원이 거절된 경우, 당사자는 계약법 제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변경 또는 계약 취소를 청구할 시,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p> |
| <p>第二十四条 订立专利权转让合同或者专利申请权转让合同前,让与人自己已经实施发明创造,在合同生效后,受让人要求让与人停止实施的,人民法院应当予以支持,但当事人另有约定的除外。</p> <p>让与人与受让人订立的专利权、专利申请权转让合同,不影响在合同成立前让与人 与他人订立的相关专利实施许可合同或者技术秘密转让合同的效力。</p> | <p>제24조 특허권 이전계약 또는 특허출원권 이전계약을 체결하기 전, 양도인이 스스로 이미 발명특허를 실시하였으며 계약이 효력을 발생한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실시를 중지할 것을 요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단, 당사자가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p> <p>양도인과 양수인이 체결한 특허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계약은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양도인이 타인과 체결한 관련 특허실시허가계약 또는 기술비밀 이전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p> |
| <p>第二十五条 专利实施许可包括以下方式:</p> <p>(一) 独占实施许可,是指让与人在约定许可实施专利的范围内,将该专利仅许可一个受让人实施,让与人依约定不得实施该专利;</p> <p>(二) 排他实施许可,是指让与人在约</p> | <p>제25조 특허실시허가는 다음과 같은 방식들을 포함한다:</p> <p>(1) 독점실시허가란, 양도인이 특허실시허가를 약정한 범위 내에서 해당 특허를 오직 한 양수인에게만 실시를 허가하고, 양도인은 약정에 따라 해당 특허를 실시해서</p> |

| 국제공동연구 관련 규정 | 관련 규정의 해석 |
|--|---|
| <p>定许可实施专利的范围内, 将该专利仅许可一个受让人实施, 但让与人依约定可以自行实施该专利;</p> <p>(三) 普通实施许可, 是指让与人在约定许可实施专利的范围内许可他人实施该专利, 并且可以自行实施该专利。</p> <p>当事人对专利实施许可方式没有约定或者约定不明确的, 认定为普通实施许可。专利实施许可合同约定受让人可以再许可他人实施专利的, 认定该再许可为普通实施许可, 但当事人另有约定的除外。</p> <p>技术秘密的许可使用方式, 参照本条第一、二款的规定确定。</p> | <p>는 안되는 경우를 가리킨다.</p> <p>(2) 배타실시허가란, 양도인이 특허실시허가를 약정한 범위 내에서 해당 특허를 오직 한 양수인에게만 실시를 허가하지만, 양도인도 약정에 따라 해당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p> <p>(3) 보통실시허가란, 양도인이 특허실시허가를 약정한 범위 내에서 타인에게 특허실시를 허가하며 자신도 그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p> <p>당사자가 특허실시허가 방식에 대해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할 경우, 보통실시허가로 인정한다. 특허실시허가계약에 양수인은 타인에게 특허실시를 재허가할 수 있음을 약정한 경우, 해당 재허가는 일반실시허가로 인정된다. 단, 당사자가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p> <p>기술비밀에 대한 사용 허가방식은 본 조항의 제1, 2항의 규정을 참고로 한다.</p> |
| <p>第二十六条 专利实施许可合同让与人负有在合同有效期内维持专利权有效的义务, 包括依法缴纳专利年费和积极应对他人提出宣告专利权无效的请求, 但当事人另有约定的除外。</p> | <p>제26조</p> <p>특허실시허가계약의 양도인은 계약유효기간 내에 특허권의 유효성을 유지할 의무를 지니며, 법에 따라 특허 연차료 납부와 타인이 제기한 특허권 무효심판 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단,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이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p> |
| <p>第二十七条 排他实施许可合同让与人不具备独立实施其专利的条件, 以一个普通许可的方式许可他人实施专利的, 人民法院可以认定为让与人自己实施专利, 但当事人另有约定的除外。</p> | <p>제27조</p> <p>배타실시허가계약의 양도인은 특허를 독립적으로 실시할 조건을 구비하지 않으며 보통허가의 방식으로 타인에게 특허실시를 허가할 경우, 인민법원은 양도인 스스로 특허를 실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단, 당사자가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p> |
| <p>第二十八条 合同法第三百四十三条所称“实施专利或者使用技术秘密的范围”, 包括实施专利或者使用技术秘密的期限、地域、方式以及接触技术秘密的人员等。</p> | <p>제28조</p> <p>계약법 제343조에서 말하는 “특허 실시 또는 기술비밀을 사용하는 범위”는 특허 실시 또는 기술비밀을 사용하는 기일, 지</p> |

| 국제공동연구 관련 규정 | 관련 규정의 해석 |
|--|--|
| <p>当事人对实施专利或者使用技术秘密的期限没有约定或者约定不明确的, 受让人实施专利或者使用技术秘密不受期限限制。</p> | <p>역, 방식 및 기술비밀을 접촉하는 인원 등을 포함한다. 당사자가 특허 실시 또는 기술비밀 사용 기간에 대해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할 경우, 양수인은 특허 실시 또는 기술비밀 사용에 기일 제한을 받지 않는다.</p> |
| <p>第二十九条 合同法第三百四十七条规定技术秘密转让合同让与人承担的“保密义务”, 不限制其申请专利, 但当事人约定让与人不得申请专利的除外。 当事人之间就申请专利的技术成果所订立的许可使用合同, 专利申请公开以前, 适用技术秘密转让合同的有关规定; 发明专利申请公开以后、授权以前, 参照适用专利实施许可合同的有关规定; 授权以后, 原合同即为专利实施许可合同, 适用专利实施许可合同的有关规定。 人民法院不以当事人就已经申请专利但尚未授权的技术订立专利实施许可合同为由, 认定合同无效。</p> | <p>제29조 계약법 제347조에서 규정한 기술비밀이 전 계약의 양도인이 져야 할 “비밀유지의무”는 출원한 특허에 한정되지 않지만, 당사자가 양도인이 특허를 출원할 수 없게 약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출원한 특허의 기술성과에 대해 당사자간에 체결한 사용허가계약은 특허출원이 공개되기 전에는 기술비밀이전계약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발명특허 출원 공개 후, 등록 전에는 특허실시허가계약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적용하며, 등록 후에는 원계약이 바로 특허실시허가계약으로 특허실시허가계약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이미 특허를 출원하였으나 등록되지 않은 기술에 대해 체결한 특허실시허가계약을 이유로 계약이 무효임을 인정하지 않는다.</p> |
| <p>第四十三条 技术合同纠纷案件一般由中级人民法院管辖。 各高级人民法院根据本辖区的实际情况并报经最高人民法院批准, 可以指定若干基层人民法院管辖第一审技术合同纠纷案件。 其他司法解释对技术合同纠纷案件管辖另有规定的, 从其规定。 合同中既有技术合同内容, 又有其他合同内容, 当事人就技术合同内容和其他合同内容均发生争议的, 由具有技术合同纠纷案件管辖权的人民法院受理。</p> | <p>제43조 기술계약분쟁사건은 보통 중급 이상의 인민법원에서 관할한다. 각 고급인민법원은 본 관할구역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약간의 기층인민법원을 지정하여 제1심 기술계약분쟁사건을 관할할 수 있다. 기타 사법해석에 기술계약분쟁사건의 관할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계약에 기술계약 내용도 있고 기타 계약 내용도 있으며, 당사자가 기술계약내용과 기타 계약 내용 모두에 대해 논쟁이 있을 경우, 기술계약분쟁사건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인민법원에서 수리한다.</p> |

다. 대외무역법

중국 대외무역법(对外贸易法)은 상품의 수출입, 기술의 수출입 및 국제 서비스 무역 등 외국과의 무역 및 대외무역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다.

대외무역법 제14조에서 ‘국가는 상품 및 기술의 자유로운 수출입을 허가한다. 다만, 법률, 행정법규가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기술 수출입 자유의 원칙'을 밝히고 있고, 동법 제16조, 제17조에서 기술의 수출입이 제한, 금지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그 외에, 중국 정부는 주요 기술 분야별로 [기술의 수출입 제한/금지 기술목록]을 정하여 발표하고 있으므로, 중국과 국제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해당 기술이 중국 정부가 제한/금지하는 기술목록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 주요 내용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무역 및 대외무역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보호에 적용되는 법으로, 제3장에서 기술수출입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관련 조항 : 제16조, 제17조) | |
| 국제공동연구 관련 규정 | 관련 규정의 해석 |
| <p>第十六条 国家基于下列原因, 可以限制或者禁止有关货物、技术的进口或者出口:</p> <p>(一) 为维护国家安全、社会公共利益或者公共道德, 需要限制或者禁止进口或者出口的;</p> <p>(二) 为保护人的健康或者安全, 保护动物、植物的生命或者健康, 保护环境, 需要限制或者禁止进口或者出口的;</p> <p>(三) 为实施与黄金或者白银进出口有关的措施, 需要限制或者禁止进口或者出口的;</p> <p>(四) 国内供应短缺或者为有效保护可能用竭的自然资源, 需要限制或者禁止出口的;</p> <p>(五) 输往国家或者地区的市场容量有限, 需要限制出口的;</p> | <p>제16조</p> <p>국가는 아래 원인에 근거해 관련 상품, 기술의 수입 또는 수출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안전, 사회의 공공이익 또는 공중도덕을 수호하기 위하여 수출이나 수입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2. 인류 건강이나 안전 보호,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 보호, 환경보호를 위하여 수입이나 수출을 제한 또는 금지해야 할 경우 3. 황금 또는 백은 수출입과 관련한 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수출제한이 필요한 경우 4. 국내공급이 부족하거나 국내자원의 고갈을 유효하게 방지하기 위해 수출 |

| 국제공동연구 관련 규정 | 관련 규정의 해석 |
|--|--|
| <p>(六) 出口经营秩序出现严重混乱, 需要限制出口的 ;</p> <p>(七) 为建立或者加快建立国内特定产业, 需要限制进口的 ;</p> <p>(八) 对任何形式的农业、牧业、渔业产品有必要限制进口的 ;</p> <p>(九) 为保障国家国际金融地位和国际收支平衡, 需要限制进口的 ;</p> <p>(十) 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 其他需要限制或者禁止进口或者出口的 ;</p> <p>(十一) 根据我国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协定的规定, 其他需要限制或者禁止进口或者出口的。</p> | <p>제한이 필요한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수출대상 국가나 지역의 시장물량의 한계로 수출제한이 필요한 경우 6. 수출경영질서가 심각하게 혼란하여 수출제한이 필요한 경우 7. 국내 특정산업의 육성 또는 육성의 가속화를 위해 수입제한이 필요한 경우 8. 어떠한 형태의 농업, 목축업, 어업 제품이던 수입제한이 필요한 경우 9. 국가의 국제금융에서의 위상과 국제수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수입제한이 필요한 경우 10.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해 수출이나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를 해야 할 기타 경우 11.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 협정에 의해 수출이나 수입 제한이 필요한 기타 경우 |
| <p>第十七条 国家对与裂变、聚变物质或者衍生此类物质的物质有关的货物、技术进出口, 以及与武器、弹药或者其他军用物资有关的进出口, 可以采取任何必要的措施, 维护国家安全。</p> <p>在战时或者为维护国际和平与安全, 国家在货物、技术进出口方面可以采取任何必要的措施。</p> | <p>제17조</p> <p>국가는 핵분열, 핵반응 물질 또는 이런 물질을 파생하는 물질과 관련된 상품, 기술의 수출입 및 무기, 탄약 또는 기타 군용물자와 관련된 수출입에 대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국가안전을 수호할 수 있다.</p> <p>전쟁시기 또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는 상품, 기술 수출입 분야에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

라. 기술수출입관리조례

중국은 대외무역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에 근거해 ‘기술수출입관리조례(技术进出口管理条例)’를 제정하여 외국과의 '기술수출입'을 관리하고 있다.

요약하면, 수출입 금지 기술은 수출입할 수 없다(조례 제9조, 32조). 수출입 제한에 속하는 기술은 국무원 외경부 주관부서의 인가를 얻어야 수출입이 가능하다(조례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수출입 자유에 속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계약을 등록관리 해야 한다(조례 17조, 39조).

주요 내용

- 대외무역 및 대외무역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보호에 적용되는 법으로, 제3장에서 기술수출입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관련 조항 : 제16조, 제17조)

| 국제공동연구 관련 규정 | 관련 규정의 해석 |
|---|--|
| <p>第二条 本条例所称技术进出口, 是指从中华人民共和国境外向中华人民共和国境内, 或者从中华人民共和国境内向中华人民共和国境外, 通过贸易、投资或者经济技术合作的方式转移技术的行为。</p> | <p>제2조 기술수출입이란 중국 국외에서 중국 국내로 또는 중국 국내에서 중국 국외로 무역, 투자 또는 경제 기술합작 등의 방식을 통해 기술을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기술수출입 행위에는 특허권 양도, 특허출원권 양도, 특허실시허가, 노하우 이전, 기술서비스 및 기타 방식의 기술이전이 포함된다.</p> |
| <p>第五条 国家准许技术的自由进出口; 但是, 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除外。</p> | <p>제5조 국가는 기술의 자유로운 수출입을 허가한다. 단, 법률과 행정법규상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
| <p>第八条 有对外贸易法第十六条、第十七条规定情形之一的技术, 禁止或者限制进口。 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 制定、调整并公布禁止或者限制进口的技术目录。</p> | <p>제8조 〈대외무역법〉 제16조, 제17조에 규정된 기술에 속할 경우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한다. 국무원 외경부 주관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수입금지 또는 수입제한기술 리스트를 제정, 조정 및 공포한다.</p> |
| <p>第九条 属于禁止进口的技术, 不得进口。</p> | <p>제9조 수입금지 기술은 수입할 수 없다</p> |

| 국제공동연구 관련 규정 | 관련 규정의 해석 |
|--|---|
| <p>第十条 属于限制进口的技术，实行许可证管理；未经许可，不得进口。</p> | <p>제10조 수입제한 기술은 허가관리를 실시한다. 허가를 얻지 못할 경우 수입할 수 없다.</p> |
| <p>第十一条 进口属于限制进口的技术，应当向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提出技术进口申请并附有关文件。 技术进口项目需经有关部门批准的，还应当提交有关部门的批准文件。</p> | <p>제11조 수입제한에 속하는 기술은 수입할 경우 국무원 외경무 주관부서에 기술 수입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관계부서의 인가가 필요한 수입기술은 관계부서가 인가한 서류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p> |
| <p>第十二条 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收到技术进口申请后，应当会同国务院有关部门对申请进行审查，并自收到申请之日起30个工作日内作出批准或者不批准的决定。</p> | <p>제12조 국무원 외경무 주관부서는 기술신청서를 접수한 후 국무원의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신청 내용에 대해 심사를 해야 하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p> |
| <p>第十三条 技术进口申请经批准的，由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发给技术进口许可意向书。 进口经营者取得技术进口许可意向书后，可以对外签订技术进口合同。</p> | <p>제13조 기술수입 신청을 인가했을 경우 국무원 외경무 주관부서는 기술수입허가 의향서를 발급한다. 수입기업은 기술수입허가 의향서를 취득한 후 기술 수입 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p> |
| <p>第十七条 对属于自由进口的技术，实行合同登记管理。 进口属于自由进口的技术，合同自依法成立时生效，不以登记为合同生效的条件。</p> | <p>제17조 수입자유 기술에 속하는 기술은 계약의 등록 관리를 실시한다. 수입자유 기술을 수입할 경우 계약은 법에 따라 체결된 시점부터 유효하며 등록이 계약효력의 발생 조건은 아니다.</p> |
| <p>第二十二条 设立外商投资企业，外方以技术作为投资的，该技术的进口，应当按照外商投资企业设立审批的程序进行审查或者办理登记。</p> | <p>제22조 외국인 투자기업내 외국측 파트너의 기술 투자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심사 절차에 준해 심사와 등기업무를 처리한다.</p> |
| <p>第三十二条 属于禁止出口的技术，不得出口。</p> | <p>제32조 수출금지에 속한 기술은 수출할 수 없다.</p> |
| <p>第三十三条 属于限制出口的技术，实行许可证管理；未经许可，不得出口。</p> | <p>제33조 수출제한에 속한 기술은 허가증 관리를 실시한다. 허가를 얻지 않을 경우 수출할 수 없다.</p> |

| 국제공동연구 관련 규정 | 관련 규정의 해석 |
|---|---|
| <p>第三十四条 出口属于限制出口的技术,应当向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提出申请。</p> | <p>제34조 수출제한에 속한 기술은 반드시 국무원 외경무 주관부서에 신청해야 한다.</p> |
| <p>第三十五条 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收到技术出口申请后,应当会同国务院科技管理部门对申请出口的技术进行审查,并自收到申请之日起30个工作日内作出批准或者不批准的决定。 限制出口的技术需经有关部门进行保密审查的,按照国家有关规定执行。</p> | <p>제35조 국무원 외경무 주관부서는 기술수출 신청을 접수한 후 국무원 과학기술 관리부와 공동으로 기술수출 신청에 대해 심사하고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출제한 기술은 관련 부서가 비밀리에 심사해야 하며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p> |
| <p>第三十六条 技术出口申请经批准的,由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发给技术出口许可意向书。 申请人取得技术出口许可意向书后,方可对外进行实质性谈判,签订技术出口合同。</p> | <p>제36조 기술수출 신청을 인가했을 경우 국무원 외경무 주관부서가 기술수출 허가 의향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청인은 기술수출허가 의향서를 취득한 후 실질적인 대외협상을 할 수 있으며 기술수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p> |
| <p>第三十七条 申请人签订技术出口合同后,应当向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提交下列文件,申请技术出口许可证: (一)技术出口许可意向书; (二)技术出口合同副本; (三)技术资料出口清单; (四)签约双方法律地位的证明文件。 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对技术出口合同的真实性进行审查,并自收到前款规定的文件之日起15个工作日内,对技术出口作出许可或者不许可的决定。</p> | <p>제37조 신청인은 기술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국무원 외경무 주관부서에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기술수출허가 의향서 2. 기술수출계약서의 사본 3. 기술자료 수출리스트 4. 계약 쌍방의 법적 지위를 증명하는 서류 국무원 외경무 주관부서는 기술수출 계약의 실질성을 심사해야 하며 위 조항에 규정된 서류 접수일로부터 근무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기술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p> |
| <p>第三十九条 对属于自由出口的技术,实行合同登记管理。 出口属于自由出口的技术,合同自依法成立时生效,不以登记为合同生效的条件。</p> | <p>제39조 자유수출 기술에 대해서는 계약의 등록관리를 실시한다. 자유수출에 속한 기술을 수출할 경우 계약이 체결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등록이 계약효력의 발생 조건은 아님)</p> |
| <p>第四十六条 进口或者出口属于禁止进出口的技术的,或者未经许可擅自进口或</p> | <p>제46조 수출입금지에 속한 기술을 수출입하는 경</p> |

| 국제공동연구 관련 규정 | 관련 규정의 해석 |
|--|--|
| <p>者出口属于限制进出口的技术的, 依照刑法关于走私罪、非法经营罪、泄露国家秘密罪或者其他罪的规定, 依法追究刑事责任; 尚不够刑事处罚的, 区别不同情况, 依照海关法的有关规定处罚, 或者由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给予警告, 没收违法所得, 处违法所得1倍以上5倍以下的罚款; 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并可以撤销其对外贸易经营许可。</p> | <p>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수출입 제한에 속한 기술을 수입할 경우 형법 내의 밀수죄, 위법경영죄, 국가기밀 누설죄 또는 기타 법규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 당한다. 만약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상황에 따라 세관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 또는 국무원 외경무 주관부서가 경고, 위법소득 몰수, 위법소득에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국무원 외경무 주관부서는 대외무역 경영권을 취소할 수 있다.</p> |
| <p>第四十七条 擅自超出许可的范围进口或者出口属于限制进出口的技术的, 依照刑法关于非法经营罪或者其他罪的规定, 依法追究刑事责任; 尚不够刑事处罚的, 区别不同情况, 依照海关法的有关规定处罚, 或者由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给予警告, 没收违法所得, 处违法所得1倍以上3倍以下的罚款; 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并可以暂停直至撤销其对外贸易经营许可。</p> | <p>제47조 수출입제한에 속하는 기술을 허가 받은 범위를 넘어 무단으로 수출입할 경우 형법의 위법경영죄 또는 기타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세관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 또는 국무원 외경무 주관부서가 경고하는 위법소득의 몰수, 위법소득에 2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국무원 외경무 주관부서는 대외무역 경영권을 일시 정지 및 취소할 수 있다.</p> |
| <p>第四十八条 伪造、变造或者买卖技术进出口许可证或者技术进出口合同登记证的, 依照刑法关于非法经营罪或者伪造、变造、买卖国家机关公文、证件、印章罪的规定, 依法追究刑事责任; 尚不够刑事处罚的, 依照海关法的有关规定处罚; 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并可以撤销其对外贸易经营许可</p> | <p>제48조 기술수출입 허가증 및 기술수출입 계약 등록증을 위조, 변조, 매매할 경우 형법의 위법 경영죄 또는 국가기관 공문서, 증서, 인감위조, 변조, 매매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세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국무원 외경무 주관부서는 대외무역 경영권을 취소할 수 있다.</p> |
| <p>第四十九条 以欺骗或者其他不正当手段获取技术进出口许可的, 由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吊销其技术进出口许可证, 暂停直至撤销其对外贸易经营许可。</p> | <p>제49조 사기나 또는 기타 부정당한 수단을 통해 기술수출입 계약 등록증을 취득했을 경우 국무원 외경무 주관부서는 기술수출입 허가증을 회수하고 대외무역 경영 허가권을 일시 정지 또는 취소한다.</p> |

마. 기술수출입계약 등록(登记)관리 규칙

기술수출입계약 등록관리방법(技术进出口合同登记管理办法)에서 자유 수출입 기술 계약을 등록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기술수출입 경영자는 상무부 홈페이지 ‘기술 수출입 계약 정보관리 시스템’ (jjckqy.fwmys.mofcom.gov.cn)에 로그인하여 계약등록을 하면 된다.

또한, 기술 수출입 계약서 사본(중국어 번역본 포함) 및 양 측의 법률적 지위를 계약한 증명서류를 상무 주무 부서에 등록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관리방법 제8조).

여기 ‘기술 수출입 계약을 상무기관에 등록하는 것’과 항목을 바꾸어 별도로 설명할 ‘중국 국내 일반적 기술허락계약을 중국 지식재산권국에 등록(备案)하는 것’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주요 내용

- 기술수출입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제정됨, 특히 양도, 특허 출원권 양도 계약, 특허 라이선스 계약, 기술비밀 라이선스 계약, 기술 서비스 계약 및 기술 수출입에 관한 기타 계약 등을 포함한 기술 수출입 계약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임(관련 조항 : 제8조)

| 국제공동연구 관련 규정 | 관련 규정의 해석 |
|--|---|
| <p>第八条 国家对自由进出口技术合同实行网上在线登记管理。技术进出口经营者应登陆商务部政府网站上的“技术进出口合同信息管理系统”(网址：jsjckqy.fwmys.mofcom.gov.cn)进行合同登记，并持技术进(出)口合同登记申请书、技术进(出)口合同副本(包括中文译本)和签约双方法律地位的证明文件，到商务主管部门履行登记手续。商务主管部门在收到上述文件起3个工作日内，对合同登记内容进行核对，并向技术进出口经营者颁发《技术进口合同登记证》或《技术出口合同登记证》。</p> | <p>제8조 나라에서 자유 수출입 기술계약을 온라인 등록 관리로 실행한다. 기술수출입 경영자는 상무부 정부 홈페이지의 ‘기술 수출입 계약 정보관리 시스템’(홈페이지 : jsjckqy.fwmys.mofcom.gov.cn)에 로그인하여 계약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수(출)입 계약 등록 신청서, 기술 수(출)입 계약 사본(중국어 번역본 포함) 및 양측의 법률적 지위를 계약한 증명서류를 상무 주무 부서에 등록하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상무 주무 부서는 상기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3일 이내에 계약 등록내용을 검토할 것이며, 기술수출입 경영자에게 <기술 수입 계약등록증> 또는 <기술 수출 계약등록증>을 발급한다.</p> |

바. 전리 실시허가계약 등록(备案) 방법

1) 등록(备案)의 의미

전리 실시허가 계약 체결 후 계약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양도인은 반드시 계약 효력 발생일(상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행정기관에(지식산업국, SIPO)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는 관련 기관이 실시허가 계약 사항에 대해 보존 및 대외 공시를 하기 위한 일종의 등록 행위라고 할 수 있다.¹⁾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전리법> 제12조는 타인의 전리를 실시할 때는 전리권자와 전리 실시허가(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리법 실시세칙> 제14조 제2항은 전리권자와 타인이 체결한 전리실시허가 계약은 계약효력 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에 국무원 전리행정부서에 등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가지식산업국은 <전리 실시 라이선스 계약 등록 방법>을 제정하여 전리권 라이선스 등록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2) 등록의 효력

라이선스 계약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의 효력에 대해서, 2001년 최고인민법원의 기술 계약 분쟁 사건을 심리하는 약간의 문제에 관한 전국 법원의 지식재산권 심판 업무 회의 기요 배포 통지(最高人民法院关于印发全国法院知识产权审判工作会议关于审理技术合同纠纷案件若干问题的纪要的通知)는 계약법 상의 기술계약(전리 라이선스 포함)은 관련 기관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되지 않는다²⁾고 명시하였다.

또한, 최고인민법원이 2002년에 발표한 <상표민사분쟁안건 심리에 적용되는 약간 법률 문제에 대한 해석> 을 참고할 수 있는데, 본 해석 제 19조는 상표사용 라이선스 계약을 등록 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아니하고, 상표국에 등록하지 않은 상표사용 라이선스 계약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1) 상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표국에 상표 라이선스 계약을 등록해야 한다

2) 10. 技术合同不因下列事由无效：

… (2) 技术合同未经登记或者未向有关部门备案；

이를 종합해 보면, 비록 등록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니지만, 권리자가 악의로 기존 계약 사실을 모르는 제3자와 다시 실시허락 계약을 맺고 등록을 한 경우 사용권자는 자신의 사용허가권을 갖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중국에서 전리권 등의 실시허가 계약을 체결할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3) 등록 절차

전리권 등 실시허락 계약 체결 후 등록을 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세부 서류는 아래와 같다.

그림. 전리권 실시허락 계약 등록 절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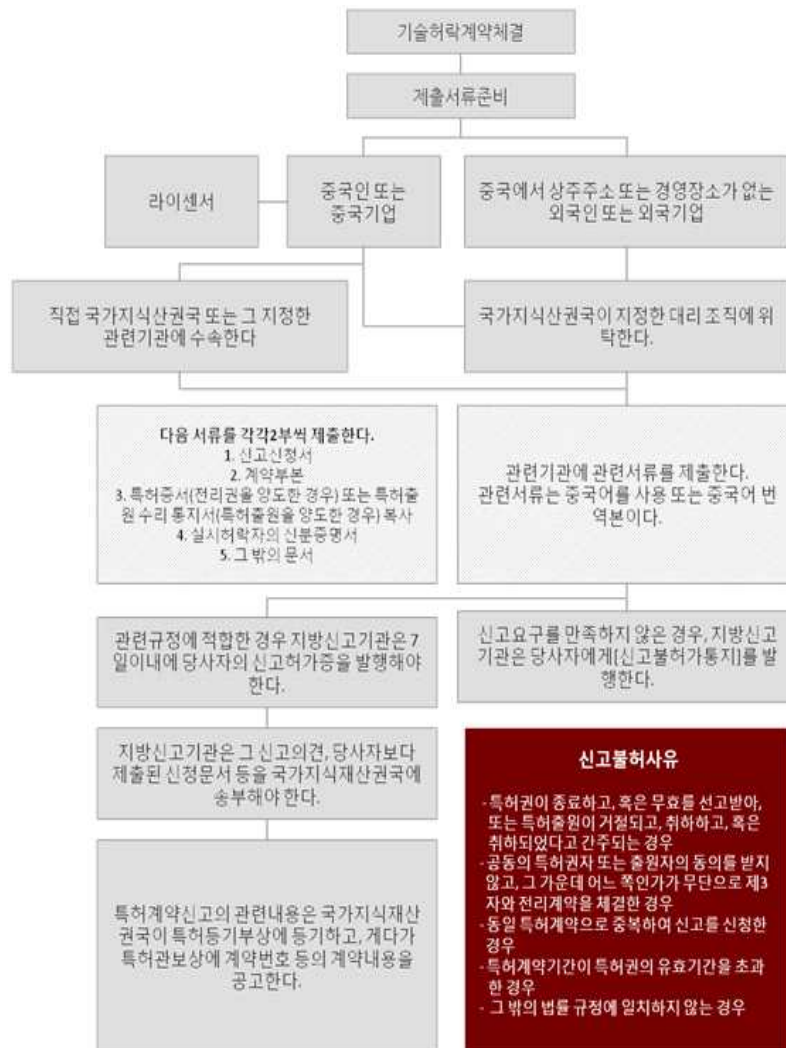


그림. 계약 종류별, 기술유형별 행정신고 절차 구분



* 출처 : 2014 해외 기술거래 지침서(중국편), 2014

5. 비밀보호

중국 반부정당경쟁법 제10조는 영업비밀의 요건으로 ‘비밀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비밀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아무리 중요한 정보라 하더라도, 반부정당경쟁법에 의하여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없다.

| 중국 반부정당경쟁법 | 중국 반부정당경쟁법 번역문 |
|---|---|
| <p>第十条 【禁止侵犯商业秘密】 本条所称的商业秘密，是指不为公众所知悉、能为权利人带来经济利益、具有实用性并经权利人采取保密措施的技术信息和经营信息。</p> | <p>제10조 [상업비밀침해금지] 본조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중에게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권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며, 실용성을 구비하고, 그 권리자가 비밀 조치를 취한 기술정보와 경영정보를 말한다.</p> |

비밀 보호조치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려할 수 있겠다.

가. 물리적 접근 통제

1) 물리적 보호조치

물리적 보호조치는 주로 기관 혹은 연구소 등의 안전 계통부터 착수하여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① 보통정보와 비밀정보를 명확히 구별하여야 한다.
- ② 절대적인 비밀, 기밀, 비밀등급을 명확히 표명하여야 한다.
- ③ 열쇠를 잠그거나 CCTV를 설치하는 등 엄격한 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 ④ 컴퓨터, 인터넷을 통한 접속을 통제하여야 한다.
- ⑤ 중요한 데이터에는 암호를 설정하는 등 관리를 해야 한다.
- ⑥ 방문기록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
- ⑦ 이직자로부터 영업비밀과 연관된 서류와 영상자료 등 매개물을 회수하여야 한다.
- ⑧ 외부인원의 공장참관제한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⑨ 폐기된 쓰레기 등을 타당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비밀서류관리

비밀서류란 문자, 도표, 음향 및 기타 기록형식으로 영업비밀 내용을 기재한 자료를 말한다. 이런 영업비밀서류는 반드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며 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채용할 수 있다.

- ① 비밀서류의 비밀등급의 구분과 표식: 영업비밀에 속하는 서류에 대하여 비밀과 관련된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 통일적인 표시를 한다. 예를 들어, ‘절대 비밀’, ‘기밀’, ‘비밀’ 3개 등급으로 나누어 서류 제1면에 동일한 글씨체의 날인을 하는 방식이다.
- ② 비밀서류의 수발관리: 비밀과 관련된 서류는 모두 등록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매 서류마다 번호, 건수, 제작 날짜를 주석으로 관리함으로써 비밀과 관련된 서류가 수발과정에서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 ③ 비밀서류의 보관: 영업비밀서류는 반드시 일정한 보관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서류보관 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비밀서류는 등급에 따라 금고와 보통서류함 등으로 분류하여 보관할 수 있다. 사업적 수요에 따라 개인이 보관하게 되는 상업서류문서는 심사비준 권한이 있는 주관 상사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문서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④ 비밀서류의 검열과 복제: 영업비밀 서류의 열람권한을 구분하여야 하며 비밀과 관련된 서류를 열람하는 것은 최소범위 내로 제한하여야 한다. 절대 비밀 서류는 비밀 유지실 내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며 마음대로 비밀과 관련된 서류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한다. 영업비밀서류에 대한 복제는 관련된 심사비준수속을 거쳐야 하며 규정된 장소에서만 진행하도록 제한하여야 한다.
- ⑤ 비밀서류의 폐기: 불필요한 영업비밀서류는 관련된 폐기절차를 마련하여 폐기하되, 폐기기록을 하여야 한다.

나. 비밀유지 의무의 부과

1) 비밀보호 규약의 제정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는 기관 내부에 ‘비밀보호규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비밀유지규정에는 비밀의 범위, 비밀 관리기구와 담당 직원, 비밀유지 의무, 비밀 서류의 관리, 폐기된 서류, 폐기물의 처리와 관리제도, 비밀의 신고와 심사,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등의 내용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 비밀유지 협의서의 작성

비밀유지규정은 기업 스스로의 요구이고 비밀과 연관된 개개의 종업원과의 합의가 아니므로 보다 엄격하게 비밀을 관리하기 위하여 규정을 마련하는 외에 별도로 아래와 같이 종업원 혹은 제3자와 ‘비밀유지 협의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① 종업원과의 비밀유지협약: 비밀유지협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i) 비밀의 정의, 범위; ii) 비밀유지기한; iii) 쌍방의 의무; iv) 비밀유지협약의 위반에 따른 책임.

비밀유지협약은 일반적으로 종업원을 채용할 때 체결하여야 하며, 근무 중 계약기간이 종료하였거나 또는 이직 시에 보충하여 체결할 수도 있다. 그 밖에 기술도입협상에 참가하는 경우 등과 같이 일부 특수상황에 따라 임직원과 그에 상응한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하청업체, 공급상, 고객 및 수탁자 등 제3자와의 비밀유지협약: 공동연구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외부인이 해당 비밀에 접근하고 사용하는 기회가 있으므로 이들 제3자와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같은 협약을 체결하는 사실 자체로 비밀소유자로서 비밀에 대하여 합리적인 비밀유지조치를 취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 이를 통해 법률상 제3자의 행위를 구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밀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다. 종업원에 대한 경업제한 약정

중국 영업비밀 분쟁의 대부분은 비밀정보를 취득하던 종업원이 타 업체로 이직을 하거나 혹은 스스로 경쟁영업을 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앞서 설명한 비밀보호 조치 외에, 종업원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 혹은 연봉계약 체결 시점에) 일정기간 동안 경쟁업체에 이직하거나 스스로 경쟁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경업제한 약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경업제한 약정서'를 작성하기만 하면,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경업제한 약정서상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상대방에게 경업제한 기간 동안 합리적인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중국 노동계약법 제23조 참고).

6. 직무발명

가. 전리법상 직무발명

중국 전리법 제6조는 아래와 같이 한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명확한 '사용자 주의 입장'에서 직무발명을 규정하고 있다.

| 한국 <발명진흥법> | 중국 <전리법> |
|--|---|
| <p>제2조 [정의]</p> <p>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p> <p>제10조 [직무발명]</p> <p>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 등을 받으면 사용자 등을 그 특허 등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 등이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 등과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 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 <p>제6조 [직무발명]</p> <p>본 단위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주로 본 단위의 물질과 기술여건을 사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직무발명창조로 된다. <u>직무발명창조의 전리 신청권은 당해 단위에 속하며, 신청이 비준(批准,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의견, 건의 또는 청구에 대하여 동의를 표시하는 것)된 후에는 당해 단위가 전리권자로 된다.</u></p> <p>비직무 발명창조의 전리 신청권은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속한다. 신청이登記된 후에는 당해 발명자 또는 설계자가 전리권자로 된다.</p> <p>본 단위의 물질과 기술여건을 사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로서 단위와 발명자 또는 설계자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전리의 신청권과 전리권의 귀속에 대해 약정하였을 경우 그 약정에 따른다.</p> |

나. 전리법 실시세칙상 직무발명

전리법 실시세칙 제6장에서 '직무발명의 발명자에 대한 장려와 보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가장 이슈가 되는 직무발명 보상 관련 규정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특허권을 수여받은 단위와 발명자 또는 설계자 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전리권 공고 후 3개월 내에 발명자 혹은 설계자에게 아래와 같은 장려금(獎金)을 지급해야 한다(실시세칙 제77조).

| | |
|-----------------|-------------|
| 1건의 발명전리 | RMB 3000 이상 |
| 1건의 실용신안 혹은 디자인 | RMB 1000 이상 |

특허권을 수여받은 단위와 발명자 또는 설계자 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전리권의 유효기간 내에 발명전리를 실시한 후 매년 발명자 혹은 설계자에게 아래와 같은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실시세칙 제78조).

| | |
|--------------|----------------------|
| 발명전리 혹은 실용신안 | 실시에 의한 영업이익의 2% 이상 |
| 디자인 | 실시에 의한 영업이익의 0.2% 이상 |

또한, 전리권을 수여받은 단위(단체)가 기타 단위(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전리권 실시를 허가한 경우, 취득한 사용료에서 최소한 10%를 보수로서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지급해야 한다(실시세칙 제78조).

다. 직무발명 조례

중국 특허청(SIPO)은 2014년 3월 31일 '직무발명 조례 초안'을 공표(현재 의견 수렴 중)하였는데,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발명자 장려금(獎金) - 한국의 출원보상금에 상당함

단위와 발명자 간에 직무발명자에 대한 장려금에 관한 약정이 없을 경우, 발명 전리권 혹은 식물신품종에 대한 직무발명을 획득한 경우, 전체 발명자에 지급하는 장려금 총액은 해당 단위 재직자 월 평균 임금의 2배보다 적어서는 안 되고, 기타 지식재산권 직무발명의 획득에 대해서는, 전체 발명자에 지급하는 장려금 총액은 해당 단위 재직자 월 평균 임금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직무발명조례 제 20조).

기업은 지식재산권을 획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위 조례 제23조).

2) 발명자 보수(報酬) - 한국의 실시보상금에 상당함

직무발명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이전, 사용권 허락, 또는 자기실시의 경우 사용자는 발명자에게 합리적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위 조례 제17조).

보상금의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다(위 조례 제21조)

| | | |
|------------|----------|-------------|
|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 발명전리 | 영업이익의 5% 이상 |
| | 실용신안·디자인 | 영업이익의 3% 이상 |
| 매출액을 기준으로 | 발명전리 | 매출의 0.5% 이상 |
| | 실용신안·디자인 | 매출의 0.3% 이상 |

이상의 보수 누계는 해당 지식재산권 실시 영업 이윤 누계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양도 혹은 타인에게 직무발명의 지식재산권 사용을 허락한 경우, 그로 인한 순수입에서 보수가 20%보다 적게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

양도 혹은 타인에게 직무발명의 지식재산권 사용을 허락한 경우 실시료 및 양도 비용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기업의 직접 실시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종료 이후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위조례 제23조).

7. 중국의 지식재산법원과 중재기관

국제 공동연구 당사자간 이견이 생기고 분쟁으로 발전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와 같은 ADR 제도를 이용하게 된다. 유의할 사항은,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삽입할 경우,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지, 중재판정에 불만족 한다 하여 나중에 다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은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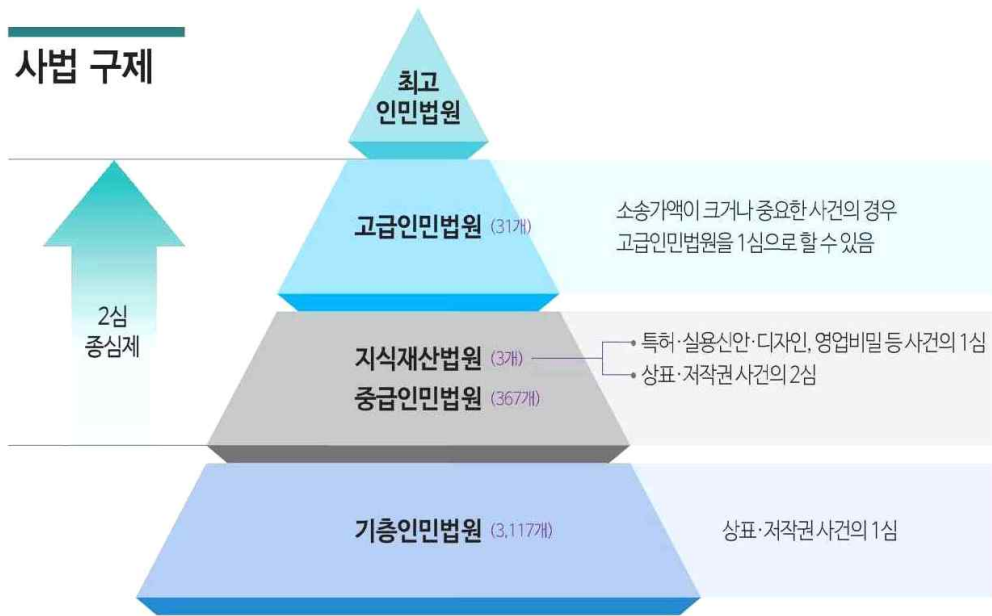
분쟁해결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참고 할 수 있도록, 중국에 2014년 신설된 지식재산법원과 대표적인 중재기구 CIETAC 및 BAC를 간단하게 소개한다.

가. 지식재산법원의 신설

2014년 8월 31일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을 심리하는 지식재산법원을 베이징과 상하이, 그리고 광저우 지역에 새로 설립할 것을 결정하였다.

〈최고인민법원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지식재산법원 사건관할 규정〉을 참고하여, 지식재산법원의 사건 관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특히, 식물 신품종, 반도체 설계도면, 기술비밀, 노하우(Know-how),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1심 민사 및 행정사건, 국무원(중앙정부) 각 부서 및 현급(县级) 이상 지방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상표, 부당경쟁 등 행정소송사건, 저명상표(驰名商标) 승인 관련 민사사건 등
- 기존에 지식재산권 재판을 담당하던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의 중급인민법원에서 더 이상 지식재산권 민사 및 행정 사건을 심리하지 아니함
- 기층인민법원에서의 저작권(소프트웨어 제외), 상표(저명상표 제외), 기술이전 계약, 부당경쟁행위(기술비밀 제외), 인터넷 도메인 등에 관한 민사 및 행정판결에 대하여 상소할 경우의 상소심
- 당사자가 지식재산권법원으로부터 받은 1심 판결에 대하여 상소할 경우 지식재산법원 소재지의 고급인민법원 지식재산권 재판부에서 심리함



출처: 특허청, 중국 지재권 활용 및 보호 가이드

나. 중국 국제경제 무역중재위원회

(中国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³⁾

CIETAC는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가 1956년 설립한 중국과 다른 나라와의 국제투자 및 무역에 관한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상사중재기관으로, 우리나라의 대한상사중재원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2014년 총 1,610건의 중재 사건을 처리하였으며 (섭외 사건은 387건으로 24%를 차지) 그 액수는 378억 위안 (약 6조 8천억원)에 달한다.

어떤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CIETAC 중재위원 명단에서 1명씩 중재위원을 지명하고, 쌍방이 지명한 중재위원이 1명의 중재위원을 선출하여 모두 3명이 법원의 재판부와 같은 중재판정부를 구성하고, 그 판정부가 중재절차를 진행하여 통상 6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고 있다.

3) <http://www.cietac.org/>에서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다. 북경중재위원회

(北京仲裁委员会, Beijing Arbitration Commission, BAC)⁴⁾

〈중재법〉에 근거하여 1995년 베이징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506명의 중재위원이 있다. 북경중재위원회는 2014년 총 2,041건(분쟁 금액 159.4억 위안)을 수리(受理)하였고, 이는 전년 대비 25.4%(분쟁 금액은 32.5%) 증가한 수치이며, 이 중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은 43건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하였다. 사건 종결에는 평균 89일이 소요되었다.

4) <http://arbitrator.bjac.org.cn/>에서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II. 국제공동연구 계약서 설명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고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도 어느 한 기업, 학교, 연구소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시대이다. 따라서 복수의 기업, 학교, 연구소들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프로젝트가 점차 보편화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있으며 과학기술 R&D 분야에서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는 중국과의 국제공동연구도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중국은, 우리가 기존에 국제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하면서 많이 접해 왔던 미국이나 유럽의 시스템과는 다른, 사회주의 법체계에 기반하는 중국식 법제도를 갖추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공동연구와 관련된 중국식 법제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이드라인으로 설명하였으므로 이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과 중국 양국의 국제공동연구 주체 모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한-중 국제공동연구 계약서’, ‘한-중 국제공동연구 협력 의향서(MOU)’, 및 ‘비밀 보호 협약서’의 샘플을 제시하였다.

이하 ‘한-중 국제공동연구 계약서 설명’에서는 그러한 샘플의 내용을 법률 비전문가들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고,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는 것을 1차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계약의 내용을 중문, 한글, 영문으로 표시하여 어떠한 형태로도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이어, 국제공동연구 계약 협의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한국의 학교, 기업, 연구소 등의 연구 실무자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도움이 되도록 작성하였다.

- ※ 이하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에는 당사자가 직접 입력함으로써 표준계약서를 개별계약으로 완성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 이하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복수의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 할 경우를 고려한 내용 이므로, 양 당사자 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붉은색 부분을 삭제하고 사용하면 됩니다.

1. 전문 및 정의(定义)

本合同在共同进行的研究项目上，为了谋求以下当事人之间的友好合作、共同发展，规定权利归属和分配等的重要事项而制定。

【甲】是根据【 】的法律合法成立的，位于【 (地址) 】。

【乙】是根据【 】的法律合法成立的，位于【 (地址) 】。

【丙】是根据【 】的法律合法成立的，位于【 (地址) 】。

본 계약은 공동으로 진행하는 연구 프로젝트에 있어서 아래 당사자 간의 우호 협력과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고 권리 귀속과 배분 등 중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갑]는 []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으며, []에 주소지를 둔다.

[을]는 []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으며, []에 주소지를 둔다.

[병]는 []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으며, []에 주소지를 둔다.

This Agreement intends to prescribe the important matters like promoting the corporation between the parties in carrying out the research collaboration, attributing and distributing the rights.

[Party 1] incorporated under the laws of [insert the country], whose registered office is at [insert the address]

[Party 2] incorporated under the laws of [insert the country], whose registered office is at [insert the address]

[Party 3] incorporated under the laws of [insert the country], whose registered office is at [insert the address]

한국과 중국 간의 국제공동연구개발계약(이하 “계약”)을 체결할 때 우선 정해야 할 것은 해당 계약에 참여하는 당사자이다. 보통 한국 측 당사자(기업, 학교, 연구원 등)와 중국 측 당사자가 각각 하나씩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술 수준이 높아지고, 다자간 협력이 없이는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3개 이상의 다수 당사자가 하나의 국제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별], [Party 3]와 관련되어 기재된 내용은 3당사자 이상의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경우를 고려한 것이므로, 양 당사자 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사용하면 된다(이하 같다).

1.1 本合同使用的词语，其定义如下；

| | |
|----------------|--|
| 本合同书 | 包括本跨国科技合作合同书、附录在内的根据当事人之间的协议修改、变更的合同书 |
| 项目 | 附录1说明的研究项目，可以随时修改 |
| 背景 | 为了利用于本项目，一方当事人在合同前后向另一方当事人提供的信息、技术、诀窍、软件以及资料（与公开或存储的方式或媒介无关）等一切 |
| 成果 | 通过本项目（与背景的使用与否无关）确认的、实施的、获得的所有信息、诀窍、结果、发明创造、软件以及其他知识产权一切 |
| 改良 | 利用了本项目的成果，但超出所形成的成果范围的所有发明创造、信息、诀窍、结果、软件以及其他知识产权 |
| 知识产权 | 专利权、实用新型权、外观设计权、商标权（包括服务商标）、著作权（包括对数据库和软件的权利）、机密信息、诀窍等一切无形财产权 |
| 诀窍 | 没有向大众公开的非专利技术信息（包括发明创造、发现、构想、方法、模型、研究开发和试验程序、实验、试验结果、制造工程、技巧和设计结构、品质管理数据、分析、报告和结果） |
| 机密信息 | 为了在本项目上使用而一方当事人向对方公开的背景、成果、改良等的知识产权以及其他不能向对外公开的信息 |
| 有关保密的法规 | 韩国的《关于不正当竞争防止和营业秘密保护等的法律》和中国的《反不正当竞争法》等所有有关保密的法律指南或规定以及它们的修订案、修正案或可以替代的法律 |
| 财政贡献 | 按照附录2明示的公司提供的财政贡献 |
| 外部捐助 | 第三方提供并在本项目上一方当事人使用的基金或补助金 |

1.2 本合同当中的‘书面’，包括电子邮件。

1.3 本合同上的‘包含’、‘特别’或与此类似的表达是为了明确其意思而使用的，并不限制该表达的说明、定义、语句或表达。

1.4 本合同上写明的时间、日期或期限【是】【并不是】都要必须被遵守的。

1.1 본 계약서상 아래의 용어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
|--------|--|
| 본 계약서 | 본 국제 공동연구 협력 계약서 및 부록을 포함하여 당사자간의 협의로 수정, 변경되는 계약서를 포함한다. |
| 프로젝트 | 부록 1에 설명된 연구 프로그램이며, 수시로 개정될 수 있음 |
| 배경 | 본 프로젝트에서의 활용을 위해 일방 당사자가 타방에게 본 계약의 전후로 제공한 정보, 기술, 노하우, 소프트웨어 그리고 자료 (공개 혹은 저장된 양식 혹은 매체에 관계 없이) 등 일체 |
| 성과 | 본 프로젝트를 통해 (배경의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확인되거나, 실행되거나, 얻어진 모든 정보, 노하우, 결과, 발명, 소프트웨어 그리고 기타 지식재산권 일체 |
| 개량 | 본 프로젝트의 성과를 활용하였으나 생성된 성과의 범위를 벗어나는 모든 발명, 정보, 노하우, 결과, 소프트웨어 그리고 기타 지식재산권 |
| 지식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서비스표권 포함),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및 소프트웨어에 관한 권리 포함), 비밀정보, 노하우 등 일체의 무형적 재산권 |
| 노하우 |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비특허 기술정보 (발명, 발견, 구상, 방법, 모델, 연구개발 및 테스트 절차, 실험, 테스트 결과, 제조공정, 기법 및 사양, 품질관리 데이터, 분석, 보고서 및 제출물 포함) |
| 비밀정보 | 본 프로젝트에 사용하기 위해 일방 당사자가 타방에 공개한 배경, 성과 및 개량 등 지식재산권과 기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되는 정보 |
| 비밀보호법규 | 대한민국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중화인민공화국의 '반부정당경쟁법' 등 모든 비밀보호 관련 법률 지침 혹은 규정 및 이들의 개정안, 수정안 혹은 이를 대체하는 법률 |
| 재정적 기여 | 부록 2 에 명시된 회사에 의해 제공되는 재정적 기여 |
| 외부 출연 | 제3자가 제공하여 본 프로젝트에서 어느 당사자가 사용하게 되는 기금 혹은 보조금 |

1.2 본 계약에서 '서면'이라고 언급된 것에는 이메일이 포함된다.

1.3 본 계약상의 '포함', '포함한다', '특히' 혹은 이와 유사한 단어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며, 해당 표현의 설명, 정의, 구절 혹은 표현을 제한하지 않는다.

1.4 본 계약서 상에 명시된 시간, 일자 그리고 기간이 모두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기한[이다]. 혹은 [아니다]

1. Definition

1.1 In this Agreement, the following term has the meaning defined below:

| | |
|---|--|
| Agreement | Agreement includes the current research collaboration agreement and appendixes, as amended from time to time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
| Project | the program of work described in Schedule 1, as amended from time to time; |
| Background | information, techniques, know-how, software and materials (regardless of the form or medium in which they are disclosed or stored) which are provided by one party to the other for use in the Project (whether before or after the date of this Agreement), except any Result; |
| Results | all information, Know-how, results, inventions, software and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dentified or first reduced to practice or writing in the course of the Project; |
| Improvements | all information, Know-how, results, inventions, software and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using the Results of the current Project but falls outside the scope of Results |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all the intangible rights including patent, utility model, design, trademark (including service mark), copyrights (including database and software right), confidential information, know how, etc |
| Know-how | unpatented technical information (including inventions, discoveries, concepts, methodologies, models, research, development and testing procedures, the results of experiments, tests and trials, manufacturing processes, techniques and specifications, quality control data, analyses, reports and submissions) which is not in the public domain |
| Confidential Information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Background, Results and Improvements disclosed by a party to the other party for the use in the Project |
| Confidentiality Protection Legislations | all the confidentiality protections related legislations or regulations including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of Republic of Korea and Anti-Unfair Competition Law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amendments, changes or replacements |
| Financial Contribution | Financial Contribution attributed by a company listed in the Appendix 2 |
| External Funding | Fund or subsidy made by a third party which is used by any party of the current Project |

- 1.2 A reference in this Agreement to writing or written includes email.
- 1.3 Any words in this Agreement following the expressions including, include, in particular, or any similar expression, are merely illustrative and do not limit the sense of the words, description, definition, phrase or expression preceding those expressions.
- 1.4 Time shall [not] be of the essence for all times, dates and periods specified in this Agreement.

실제 국제공동연구개발계약서들을 검토하면, 의외로 정의 조항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물론 계약서 본문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별도의 정의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일반적이라거나, 아니면 본문에서 별도로 정의되고 있어서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해당 계약에서만 쓰이는 생소한 용어들임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사용되거나, 본문에서 각 조항의 제목을 본문에서 특정 용어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계약서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특정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계약서의 경우, 추후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서 해석 시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양 당사자의 해석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법원에 제소를 하거나 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공방이 장기화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가능하면 처음에 계약서 본문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가 아니라 해당 계약에서만 쓰이는 특정 용어의 경우에는 그 의미를 명확히 정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추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법원이나 중재원에서 판사나 중재인이 그 특정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계약서 본문에 기재된 시간, 일자, 기간 등은 양 당사자의 의무이행기간을 명확히 하고자 기재하는 것이므로, 양 당사자는 이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국제공동연구의 특성상 연구개발의 진행정도에 따라 양 당사자의 의무이행이 가능하거나 혹은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일정이 양 당사자의 주의를 촉구하는 정도로서 불변기간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만일 본 계약에 기재된 일정 등이 불변기간으로 하고자 한다면 해당 조항을 삭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⁵⁾

2. 프로젝트(项目)

- 2.1 本项目从【20 】年【 】月【 】日到【20 】年【 】月【 】日，在【责任研究员】或【公司监督人】的指示和监督下在【(场所)】进行。本项目的详细课题内容在附录1规定。【项目开始以后签订本合同的，溯及适用于实行日当时或以后进行的与项目相关的研究。】
- 2.2 本合同当事人履行按照附录1分配的课题，并提供附录2规定负责的人力、资料、设施和装备。
- 2.3 各方当事人为了获得要履行按照附录1分配的课题所需要的所有规定的资格和伦理资格、承认和认可，尽妥当的努力。
- 2.4 各方当事人保证参加项目的职员和学生具有合适的资格、按照项目履行所有研究开发时遵守规定、履行项目的过程当中制作完整并准确的记录、遵守附录3的秘密管理规约。
- 2.5 各方当事人按照附录1，为履行项目尽妥当的努力，但任何当事人都不保证研究或项目会导出特定结果或者杰出的结果。
- 2.6 【 】向【 】提交简要项目进行情况的【每月】或【各季度】或【年度】报告、所有成果的副本。

- 2.1 [본 프로젝트]는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장소]에서 [책임연구원] 혹은 [회사 감독자]의 지시와 감독하에 진행된다. 본 프로젝트의 상세한 과제 내용은 부록 1에 규정한다. [프로젝트 시작 이후에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시작일 당시 혹은 이후의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진행된 연구에 소급적으로 적용된다.]
- 2.2 본 계약의 당사자는 부록 1에 따라 할당된 과제를 이행하며 부록 2에서 책임으로 지정된 인력, 자료, 시설 그리고 장비를 제공한다.
- 2.3 각 당사자는 부록 1의 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규정적 그리고 윤리적 자격, 승인 그리고 인가를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한다.
- 2.4 각 당사자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직원과 학생 등이 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이행되는 모든 연구, 개발에 규칙을 준수하며, 프로젝트의 수행 과정에서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을 작성하며, 부록 3의 비밀관리 규약을 준수한다.

5) 【是】【并不是】등과 같이 【 】부호는 본 가이드라인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양자 중 선택할 수 있음을 표시한 것이다. 이하 같다.

- 2.5 각 당사자는 부록 1에 따라서 프로젝트 이행을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이지만, 어느 당사자도 연구가 특정 결과로 이어지거나,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 2.6 []는 []에게 프로젝트의 진행상황을 요약한 [월별] 혹은 [분기별] 혹은 [연례] 보고서와 모든 성과의 사본을 제공한다.
- 2.1 The Project shall be performed from [insert date] until [insert date] at [insert place] under the supervision of [insert the name of principal investigator] or [insert the name of company supervisor]. The detailed task of the current Project shall be in accordance with Appendix 1. [If the Agreement is entered into after the execution date, it will apply retrospectively to work carried out in relation to the Project on or after the Commencement Date.]
- 2.2 The party of the Agreement shall perform the task allocated in accordance with Appendix 1 and provide the responsible personnel, facilities and devices allotted in Appendix 2.
- 2.3 Each of the parties shall use all reasonable endeavors to obtain all regulatory and ethical licenses, consents and approvals necessary to allow it to carry out the tasks listed in Appendix 1.
- 2.4 Each of the parties shall ensure that its employees and students involved in the Project have adequate qualification; observe the regulations related to all the research and developments performed in relation to the Project; keep complete and accurate records of the performance of Project; and observe the confidential agreement in Appendix 3.
- 2.5 Each of the parties shall use all reasonable endeavors to carry out the tasks listed in Appendix 1 but does not guarantee a particular result of research or successful result of the Project.
- 2.6 [] shall provide [monthly] or [quarterly] or [yearly] summary of project progress and a copy of all results to [].

국제공동연구개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연구의 범위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연구범위를 너무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정해놓으면, 추후 계약이 종료된 후이나 계약 기간 중에 독자적으로 개발된 결과물까지 공동연구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독자적으로 개발했으나 상대방이 공동연구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고, 공동연구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결과물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에 따라 공동소유로 한다거나 수익을 분배한다거나 상대방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본 샘플은 특정한 국제공동연구에 맞추어 제작된 것이 아니라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표준계약서이므로 구체적인 공동연구의 범위를 계약서 본문에 기재할 수는 없었다. 본 샘플을 이용하여 국제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록 1]6)을 완성하여 계약서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의 내용을 구체화 할 수 있겠다.

6) 부록은 계약의 부속서로서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연구계획서나 지식재산의 범위 등 계약서의 본문에 담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할 수 있으며, 부록은 필요한 경우 부록 1, 부록 2, ... 등으로 계속 추가할 수 있다.

2.7 各方当事人保证根据自己的章程对对方具有完全的权力和权限，并已取得了为了签订本合同、履行本合同上的义务所需要的、自己的章程或法律要求的所有认可、许可、承认和执照。

2.8 各方当事人保证，自己或自己的职员访问由对方当事人所有或控制或使用的场所、或在该场所进行研究时，遵守所有、控制、使用该场所的或提供设备的当事人通知的环境保护政策、保安和安全保障政策以及规定和程序。各当事人尽快通知对方所理解的有关健康和安全的危险性。各当事人立即通知对方履行本合同时发生的受伤、可能导致财产损失受伤或事故。

2.7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정관에 따른 완전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본 계약 체결과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관 혹은 법률에 의해 요구된 모든 인가, 허가, 승인 그리고 면허를 획득하였음을 보장한다.

2.8 각 당사자는 직접 혹은 자신의 직원이 상대 당사자들에 의해 소유, 통제 혹은 사용되는 장소에서 연구를 하거나 방문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소유, 통제 혹은 사용하거나 시설을 제공하는 당사자가 통지한 환경보호 정책, 보안과 안전보건 정책, 규정 그리고 절차를 준수함을 보장한다. 각 당사자는 인지한 보건안전관련 위험성을 최대한 신속히 다른 당사자들에게 통지한다.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 중 부상 혹은 재산상의 손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상 혹은 사고를 즉시 다른 당사자들에게 통지한다.

2.7 Each of the parties warrants to the other that it has full power and authority under its constitution, and has taken all necessary actions and obtained all authorizations, licenses, consents and approvals required under its constitution or by law, to allow it to enter into this Agreement and perform its obligations under it.

2.8 Each of the parties will ensure that the party and its employees who work on or visit any premises owned, controlled or occupied by the other party, or who use any facilities provided by the other party, comply with all environmental protection policies, security and health and safety policies, regulations and procedures made known to them by the other party from time to time. Each of the parties will notify the other as soon as practicable of any health and safety

hazards of which it becomes aware. Each party will notify the other immediately if any incident which causes any personal injury or damage to property which could give rise to any personal injury or damage to property occurs in the performance of this Agreement.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내용에 따라 해당 국가 정부, 관계기관, 학교나 연구원 내부 부서 등으로부터 사전에 심의를 받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현재 심각한 환경오염의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각종 환경보호 관련 규제가 자주 바뀔 수 있고, 그 외에도 정부 주도의 산업안전, 보안, 보건 관련 정책 등 각종 규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중국은 중앙 정부와 성(省)급, 시(市)급 지방 정부나 관계기관으로 행정조직이 나누어져 있고, 각 단위별로 심의나 인허가 절차나 규정이 다르며 이마저도 자주 바뀌므로 각별히 준비가 필요하다. 중국의 각종 규제나 인허가 문제는 중국을 잘 아는 중국 측 당사자가, 한국의 규제나 인허가는 한국 측 당사자가 담당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재정적 기여, 외부 출연 및 결제(财政贡献、外部捐款以及结算计划)

- 3.1 【甲】从收到付款通知之日起【30】或【60】日以内按照附录2给【乙】支付对项目的财政贡献金。【乙】应当管理、制作与项目支出有关的完整并准确的账户和账簿。
- 3.2 按照本合同应当支付的所有金额按照【韩元】或【人民币】支付，所有金额【包含】或【不包含】按各国法律规定支付的税金。
- 3.3 【甲】没有在期限内结算的，【乙】可以对未支付的金额每日请求年【 】%的利息。
- 3.4 【除了附录2规定的情况以外】各当事人所有利用财政贡献或外部捐款由其或为其购买或制造的全部装备。
- 3.5 项目有外部捐款的，当事人要遵守外部捐款条件。尤其，各方当事人为对方的外部捐款赞助人要求提供的项目报告，提供适当的支援。

- 3.1 [갑]은 인보이스 수령일로부터 [30] 혹은 [60]일 이내에 부록 2에 따라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적 기여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을]은 프로젝트 지출에 관한 완전하고도 정확한 계정을 관리하고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 3.2 본 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모든 금액은 [KRW] 혹은 [RMB]로 지급되며 모든 금액에는 해당 국가의 법에 의하여 지급하게 되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 혹은 [있지 않다].
- 3.3 [갑]이 기한 내에 결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을]은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연 [이자율 입력]%의 일일 단위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 3.4 [부록 2에 정해진 사항을 제외하고] 각 당사자는 재정 기여금 혹은 외부 출연금을 사용하여 자신이 혹은 자신을 위해 구매되거나 제작된 모든 장비를 소유한다.
- 3.5 프로젝트에 외부 출연이 제공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외부 출연 조건을 준수한다. 특히,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외부 출연 후원자에 의해 요구된 프로젝트 보고서 제공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 3.1 [A] shall pay the Financial Contribution to [B] in accordance with Appendix 2 within [30] or [60]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B] shall keep complete and accurate accounts of its expenditure on the project.

- 3.2 The amounts payable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paid in [KRW] or [RMB] and are [inclusive] or [exclusive] of any tax prescribed by laws of applicable country.
- 3.3 In case [A] is fails to make a payment within a prescribed time, [B] may charge interest on the amount outstanding, on a daily basis at the rate of [insert interest rate] per cent per annum.
- 3.4 [Except as set out in Appendix 2] each party shall own all equipment purchased or constructed by it, or for it, using the Financial Contribution or any External Funding.
- 3.5 If the Project receives any External Funding, [insert the applicable party] shall comply with the terms of that External Funding. In particular, each of the parties shall provide the other with reasonable assistance in submitting any report of the Project required by any provider of External Funding.

일방 당사자가 연구비를 지원하기로 한 경우, 연구비를 제공할 의무, 그렇게 지원 받은 연구비를 어떻게 쓸지, 연구비를 사용하여 구매한 장비의 소유 관계 등을 계약서에 상세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샘플 계약서는 표준 계약서의 특성상 **[부록 2]**를 별도로 두어 계약 당사자가 개별 국제공동연구의 내용에 맞추어 연구비 출연 및 사용의 상세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 연구비는 공동연구 범위 및 각 당사자의 업무 내용에 따라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어느 일방 당사자가 연구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각자가 연구비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거나, 아예 연구비에 관한 조항을 두지 않을 수도 있다. 각자가 연구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연구를 수행하여 예상된 결과물을 얻기만 한다면, 각자 부담하는 연구비를 굳이 상대방에게 밝힐 필요가 없고, 연구비를 얼마나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쓰는지도 밝힐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일방 당사자가 연구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상대방에게 연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국제간의 자금 이동에 따른 환율이나 조세문제를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환율변동이나 조세부담에 따라 연구비의 실지금액이 변동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본 샘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회피하기 위하여 지급화폐 및 조세부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정된 지급 일자에 연구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 또는 지연이자를 요구할 수도 있다. 지연손해금은 정액이 될 수도 있고, 미지급 금액에 비례하여 연 몇 %로 계산할 수도 있다. 지연손해금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할 사항이다.

4. 지식재산권의 사용과 활용(知识产权的使用与利用)

4.1 本合同对‘背景’的知识产权或不是‘成果’的其他技术、设计、研究、发明创造、软件、数据、技巧、专有技术或对资料的知识产权所有权，都不会起到任何的影响。给项目贡献的‘背景’的知识产权，属于做出该贡献的当事人（或许可人）的财产。除了通过本合同明确的授予知识产权的情况以外，本合同的内容不构成对使用知识产权的许可授权或默认授权。

4.2 各方当事人给对方授予不是为了其他目的而是只为了履行项目的、为使用‘背景’的无使用费的非独占性许可。不能授予让本合同以外的第三人使用对方‘背景’的分许可。

4.1 본 계약은 ‘배경’에 대한 지식재산권 혹은 ‘성과가 아닌’ 기타 기술, 설계, 연구, 발명, 소프트웨어, 데이터, 기법, 노하우, 혹은 자료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프로젝트에 기여된 ‘배경’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이를 프로젝트에 제공한 당사자(혹은 라이선서)의 재산으로 유지된다. 본 계약을 통해 명확히 지식재산권이 수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서의 내용은 지식재산권의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수여를 구성하지 않는다.

4.2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다른 목적이 아닌 프로젝트 이행만을 위해 ‘배경’을 사용하기 위한 로열티가 없는 비독점적 라이선스를 수여한다. 상대방의 ‘배경’을 본 계약 외 제3자가 사용하도록 하는 서브 라이선스를 줄 수는 없다.

4.1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the ownership of an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any Background or in any other technology, design, work, invention, software, data, technique, Know-how, or materials other than the Results.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any Background will remain the property of the party which contributes them to the Project (or its licensors). Except the rights expressly granted in this Agreement, this Agreement shall not expressly or impliedly grant any license to use an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4.2 Each Party shall grant the other party a royalty-free, non-exclusive license to use its Background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ut the

Project, but for no other purpose. Neither party may grant a sub-license to any third party to use the Background of the other Party.

우선, 공동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지식재산이 아니라 각 당사자가 공동연구 시작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배경’(기반 IP)은 공동연구와 관계없이 각 당사자가 소유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공동연구의 기반이 되도록 제공되어 추후 공동연구를 통해 얻어진 연구결과를 활용할 때에도 필요할 수 있지만, ‘배경’에 대한 권리는 공동연구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배경’은 공동연구의 기초로 사용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공동연구가 종료된 후에 연구결과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공동연구기간 뿐만 아니라 공동연구가 종료된 후에도 다른 당사자들이 ‘배경’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허락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배경’을 무제한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면 공동연구와 전혀 관련 없는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추구하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배경’의 소유자에게는 일체의 보상도 없이 막대한 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배경’의 사용을 어느 정도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 결국 ‘배경’에 대한 사용은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결과를 사용하기 위한 비상업적 목적으로만 허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배경’은 공동연구를 위해 본 계약의 당사자들에게만 특별히 사용을 허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의 자가 사용하는 것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배경’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무상(royalty-free), 비독점적(non-exclusive), 양도불가(non-transferable), 재실시불가(non-sublicensable)의 조건을 추가하여야 한다. 즉, ‘배경’의 소유자가 본 계약의 다른 당사자들에게 독점권을 주는 것은 아니고, 본 계약의 다른 당사자들이 제3자에게 ‘배경’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수 없도록 하며, 제3자에게 재실시권을 부여할 수도 없도록 사전에 제한하여야 한다.

4.3 对成果的知识产权归做出其‘成果’的【 】所有，按照自己的判断，利用自己的费用，通过专利申请等可以获得对‘成果’的权利。还有，可以采取起诉在内的对该知识产权的保护措施。

或者

4.3 【 】，【 】，【 】共同做出‘成果’的，并可以区分对其‘成果’形成的知识产权的贡献度的，对其‘成果’的知识产权按照各当事人贡献的比例归各方当事人共同所有（不能区分其贡献程度的，按照同等的比例归共同所有。当事人之间可以协商确定共同所有的份额）。所有权利人可以按照同等的比例、同样的费用，通过专利申请等的方式获得权利。还有， 可以采取起诉在内的对该知识产权的保护措施。

对成果的所有知识产权共同所有人，除了阻碍其他共同所有人行使其权利的以外，可以像独占所有权人一样使用该知识产权。

4.4 各方当事人确认产生了可以申请专利的‘成果’之后立即通知对方，并提交相关‘成果’的副本。

4.3 성과를 낸 []는 해당 ‘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가지며 독자적 판단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성과’에 대한 특허출원 등을 하여 권리를 획득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의심된 혹은 실질적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혹은

4.3 [], [], [] 공동으로 ‘성과’를 냈으며, 해당 ‘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 형성에 대한 각 기여분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각 당사자들이 기여한 비율에 따라 공동소유 한다(기여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균등한 비율로 공동소유 한다.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해 공동소유 지분을 정할 수 있다). 소유자들은 균등한 비율의 공동 비용 부담으로 ‘성과’에 대한 특허출원 등을 하여 권리를 획득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의심된 혹은 실질적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성과에 대한 모든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자들은, 다른 공동 소유자의 권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이 독점적 소유자인 것과 같이 해당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다.

4.4 각 당사자는 특허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성과’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즉시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며, 해당 ‘성과’의 사본을 제출한다.

4.3 [insert the name of who achieved the Result] shall have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the Result and may obtain a patent right for its Result in accordance with its discretionary decision at its own expenses. Further, it shall take necessary protections of i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commencing litigation against alleged or actual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4.3 [], [], [] (jointly achieved the Result) If the contribution of each party in the Result is possibly distinguished, each party shall jointly own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he relevant Results according to the contribution (If the contribution of each party is not distinguished, each party shall jointly own with the same proportion of rights. The proportion could be decided based on the agreement of the party). The joint owners may obtain a patent right for the Result at the equal proportion of expenses. Further, it shall take necessary protections of i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commencing litigation against alleged or actual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joint owner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Result, except when it may impeditment the right of the other joint owner(s), may use the relevan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if he or she is the sole owner.

4.4 Each party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promptly after indentifying any Result that is deemed to be patentable with a copy of the Result.

공동연구를 통해 얻어진 연구결과의 소유, 활용, 이익 분배 등의 문제는 본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 중 하나이다.

단독으로 개발된 연구결과이거나 연구비의 출연 등의 사유로 당사자 간에 연구 '성과'를 단독으로 소유하도록 정할 수 있다. 그러한 단독 소유 연구결과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의 권리나 책임도 해당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공동으로 개발된 연구결과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성과' 획득에 기여한 '기여분'

에 따라 ‘성과’를 공동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여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균등한 비율로 공동소유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 외에, 특허 출원 등 법적 보호 조치를 취할 책임은 일단 공동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며, 비용도 지분에 따라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동일 지분으로 합의하였다면 비용도 동일하게 분담해야 할 것이다.

본 샘플에서는 단독으로 개발된 연구결과에 대해서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와 공동으로 개발된 연구결과에 대해서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나, 필요에 따라서는 양자를 결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4.5 各方当事人雇佣如学生或承包商等的第三人参加项目时，雇用这些第三方的当事人要保证该第三人对‘成果’不具有其他知识产权。各方当事人按照韩国《发明振兴法》或中国的相关法规要遵守给雇员支付职务发明报酬的义务，不能因此让对方受到损害。

4.5 각 당사자는 학생이나 하청업체와 같은 제3자를 고용하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우, 이러한 제3자를 고용한 당사자는 해당 제3자가 ‘성과’에 대하여 별도의 지식재산권을 가지지 않음을 보증한다. 각 당사자는 대한민국 발명진흥법 혹은 중화인민공화국 관련법령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직무발명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게 해서는 안 된다.

4.5 Where any third party such as a student or contractor is involved in the Project, the party engaging the third party shall ensure that the third party does not own an individu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 of the Result. Each Party shall comply with the duty to pay the compensation for the employment invention in accordance with the Invention Promotion Act of Republic of Korea or relevant laws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shall not cause any damages to the other party for this matter.

중국은 전리법 제6조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사용자 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 대신 전리법 실시세칙 제6장 등에서 종업원에 대한 직무발명 관련 보상 규정을 두고 있고, 중국 특허청(SIPO)에서도 직무발명 조례(안)을 발표하였고 조만간 심의를 거쳐 정식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은 별도 가이드라인의 ‘6. 직무발명’ 부분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4.6 所有对成果的知识产权的【 】, 将【授予】或【不授予】对方在与项目有关的地区为了使用‘成果’所包含的知识产权的【有】或【没有】许可费的【非】独占性使用权。 为了履行项目, 【(当事人)】【可以】或【不可以】分许可使用其‘成果’。

4.6 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소유하는 []은 상대방에게 프로젝트 해당 지역에서 ‘성과’에 포함된 지식재산권을 사용하기 위한 로열티가 [있는] 혹은 [없는], [비]독점적 라이선스를 [수여한다] 혹은 [수여하지 않는다]. []은 프로젝트 이행을 위해 ‘성과’를 사용하도록 서브 라이선스를 허용할 수 [있다] 혹은 [없다].

4.6 [Party] who owns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Result shall or [not] grant the other party a royalty-free or [royalty], non-exclusive or [exclusive] license to use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Result in the field of relevant Project. [] may or [not] grant a sub-license to use the Result in order to perform the Project.

어느 일방 당사자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공동연구결과도 다른 당사자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공동연구의 근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독으로 개발된 연구결과를 공동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만 단독으로 소유하도록 하였다면, 다른 당사자들이 이를 무제한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소유자에게 일방적으로 손해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단독 소유 연구결과는 다른 당사자들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비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비독점적, 양도불가, 재실시불가의 조건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조건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4.7 各方当事人和职员、承包商、学生等有合法权利利用项目‘成果’的，可以利用项目‘成果’创造超出‘成果’范围的新的‘改良’，对‘改良’的知识产权如果没有另外的协议就归‘改良’的设计人所有。

4.7 각 당사자 및 직원, 하청업체, 학생 등 프로젝트 ‘성과’를 이용할 적법한 권리가 있는 자는, ‘성과’를 이용하여 ‘성과’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개량’을 창조할 수 있으며, ‘개량’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개량’의 창작자에게 권리가 귀속된다.

4.7 Each Party, its employees, contractors, students or those who has a legitimate right to use the Result of Project may invent the new Improvement beyond the scope of the Result by using the Result. Except agreed otherwise,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Improvement shall remain with the inventor of the Improvement.

양국의 참여에 의한 공동연구 ‘성과’를 이용하여 ‘성과’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개량’을 창조하는 경우, 그 권리 귀속의 문제도 공동연구협약에 규정하여야 할 사항이다. 중국 계약법 제345조에서 ‘당사자는 상호이익의 원칙에 따라 기술양도 계약 중에 특허실시, 기술비밀 사용을 약정한 후 지속적으로 개량한 기술성과의 배당방법을 약정할 수 있다.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일방이 지속적으로 개량한 기술성과에 대해서 상대방이 배당받을 권한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별도 가이드라인 참고)

본 샘플에서는 개량기술에 대해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개량을 한 당사자에게 그 성과가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이와 달리 규정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4.8 本合同的中方当事人有需要时为韩国相关人员根据中国《专利法》、《合同法》、《专利实施许可合同备案办法》向中国国家知识产权局办理使用许可合同备案程序和【独占、排他或普通】许可权设定备案手续。韩方当事人也有需要设定、备案专利权等的【独占、排他或普通】许可权时，为中方当事人向韩国特许厅办理【独占、排他或普通】许可权设定、备案手续。双方当事人为对方的程序履行尽努力协助。

4.8 본 계약의 중국 측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한국 측 관련자를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및 “전리 실시허가계약 등록방법”에 따라 중국 국가 지식재산권국(SIPO)에 사용허가 계약 등록 절차 및 [전용 또는 통상] 실시권 설정등록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한다. 한국 측 당사자도 특허권 등의 [전용 또는 통상] 실시권 설정, 등록이 필요한 경우 중국 측 관련자를 위하여 대한민국 특허청(KIPO)에 [전용 또는 통상] 실시권 설정, 등록 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한다.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해 협조해야 한다.

4.8 The Party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if necessary, may take necessary procedures in order to record the approval of use agreement and [exclusive or non-exclusive] license agreement with the Stat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SIPO) in accordance with Paten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ontrac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Measures for the filing of Patent Exploitation License Contracts for the Party of Republic of Korea. The Party of Republic of Korea, if necessary, may take necessary procedures in order to record the [exclusive or non-exclusive] license agreement with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PO) for the Party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Each of the parties shall use all reasonable endeavors to carry out the procedures for the other party.

중국에서는 (보통실시허가에 대해서도) 실시허가 계약체결 후 계약 효력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식산권국(SIPO)에 등록(备案)을 하여야 계약이 효력을 발생한다는 점이 한국과 다소 차이가 있다.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별도의 가이드북 ‘4. 바. 전리 실시허가계약 등록방법’ 부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본 샘플에서는 국제공동연구의 성과물에 대해서 다른 당사자에게 실시권설정 기타 행정상 필요한 절차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각 국가의 관련 규제는 비교적 이해도가 높은 해당 국가 당사자가 절차 이행을 하고 상대방이 이를 협조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5. 학술적 사용과 간행물(学术利用和刊物)

- 5.1 向【 】通知发表的具体意图，但尚未收到5.2所规定的机密通知的，【 】的所有职员或学生（与参加项目与否无关）履行下列事项；
- 5.1.1 在大学研讨会、个别指导和课堂上讨论关于按项目的一部分而实施的研究；并
- 5.1.2 以学术目的发表公司的背景（除机密信息外）或所有成果及改良。
- 5.1 []에게 발표의 세부적 의도를 통지하고 5.2조에 따른 비밀 통지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 []의 모든 직원 혹은 학생은 (프로젝트로의 참여 여부에 관계 없이) 다음을 할 수 있다.
- 5.1.1 대학 세미나, 개별지도 그리고 강의에서 프로젝트의 일부로 이행된 연구에 대하여 논의한다; 그리고
- 5.1.2 회사의 배경 (회사의 비밀정보인 경우 제외) 혹은 모든 성과 및 개량을 학술적 목적으로 발표한다.
- 5.1 [] shall, provided details of the intention to publish have been given to [] and no Confidentiality Notice under clause 5.2 has been given:
- 5.1.1 discuss work undertaken as part of the Project in University seminars, tutorials and lectures; and
- 5.1.2 publish any Background of the Company (unless it is the Company's Confidential Information) or any of the Results.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는 당사자 중에서 학교나 연구원 등 비영리기관은 기술을 직접 실시하여 사업화하지 않기 때문에 제3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거나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출판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출판과 관련된 조항을 반드시 추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결과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논문 출판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편이다. 다만, 공동으로 개발된 연구결과이므로 공동 소유자의 영업비밀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특히로 출원한다 하여도 아직 출원 전이라서 논문 등으로

공개되어서는 안 될 필요성도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출판을 허용하되, 출판을 위해 원고를 외부에 공개하기 전에 다른 당사자에게 해당 원고를 미리 제공하여 우선 검토하도록 하고, 출판될 내용에 그 당사자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특허 출원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삭제하거나 출판을 위한 원고 제출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업비밀 공개나 특허 출원 전 공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러한 삭제나 연기 요청을 부당하게 악용하여 출판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삭제나 연기 요청에 무조건 응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그 이상 연기를 할 수는 없도록 하는 등의 단서를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5.2 希望以学术目的发表的，书面发表之日起至少在【30】或【60】天前向【 】提交其‘背景’及‘成果’有关的详细内容。【 】通过书面通知（机密通知）提出上述资料的当事人，要求他为了保护专利而做所需要的延迟、或者为保护机密信息而做所需要的对刊物的修正、或者对于针对保护的稳妥的意见，从机密通知日起【 】月内延迟发表。【 】从收到提议发表资料之日起【15】或【30】日以内进行机密通知。如在该时间内尚未收到机密通知，履行所提议的发表。【 】在该时间内未收到机密通知的，希望以学术目的发表的，可以进行所提议的发表。

5.2 학술적 목적의 발표를 원하는 자는 [] 에게 서면 발표를 위한 제출 일자로부터 최소 [30] 혹은 [60]일 전에 해당 “배경” 및 “성과”에 대한 상세내용을 제출한다. []는 상기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서면의 통지를 함으로써 (비밀 통지): 자신이 특허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연 혹은 비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간행물의 수정 혹은 보호에 대한 온당한 의견에 대하여 비밀통지로부터 [숫자 기입]개월 간 제안된 발표를 지연할 것을 요구한다. []는 발표가 제안된 자료의 수령으로부터 [15] 혹은 [30]일 이내에 비밀통지를 해야 한다. 비밀통지가 해당 기간 내에 수령되지 않은 경우, 제안된 발표가 이행된다. []가 이 기간 내에 비밀통지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학술적 목적의 발표를 원하는 자는 제안된 발표를 진행할 수 있다.

5.2 Those who wish to make an academic use and publication shall provide [] with details of any Results and any Background in writing at least [30] or [60] days before the date of the proposed submission for publication. [] may, by giving a written notice, require the other party to delay the proposed publication for a maximum of [insert number] month(s) after receipt of the Confidentiality Notice if the delay is necessary in order to seek patent or similar protection. [] must give that confidentiality notice within [15] or [30] days from a date of receiving details of the proposed Publication. The publication shall be proceed with a

confidentiality notice is not received within that period. [] does not receive a confidentiality notice within this period, those who wish to made the purpose of publication shall proceed the proposed publication.

본 샘플에서는 출판을 위한 원고 제출 30 혹은 60일 전에 (통상적인 기간) 원고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상대방은 이를 검토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비밀통지를 함으로써 출판이나 학술적 목적의 발표의 지연을 요구할 수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협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겠다.

6. 비밀 보호(保密)

6.1 双方当事人【在项目期间或项目结束后【3】或【5】或【7】或【10】年内】，不向第三人公开对方的机密信息，或为除了进行本项目以外的其他目的使用。

6.1 양 당사자는 [프로젝트 기간 중 혹은 프로젝트 기간 종료로부터 [3] 혹은 [5] 혹은 [7] 혹은 [10] 년간], 상대방의 “비밀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본 프로젝트 진행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6.1 A party shall not [either during the Project Period or for [3][5][7][10] years] after the end of the Project Period] disclose to any third party or use for any purpose except carrying out the Project, any of the other party's Confidential Information.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것이므로 양 당사자들의 중요한 기술자료나 기타 비밀정보가 각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계약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상대방에게 전달된 비밀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각 당사자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비밀정보가 상대방에게 전달된 이상, 영원히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 무한정의 기간 동안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경쟁업체와 협상 목적 외에는 무한정의 기간 동안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비밀유지계약(non-disclosure agreement)을 체결한 후, 협상 과정에서 고의로 자사의 주력 제품 관련 비밀정보를 일부 공개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 측 제품과 관련된 활동을 무한정의 기간 동안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그러한 위험은 협상 과정에서 우리 측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무한정의 기간 동안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양 당사자 모두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비밀정보의 중요성, 기술 발전 추세 등을 고려하여 비밀유지의무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통 3~10년 사이에서 양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샘플에 예시된 기간은,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다.

6.2 在下列情况下，不会看作有关当事人违反了保持对‘背景’或‘成果’或其他信息的机密而不向第三方公开的义务；

6.2.1 从对方领取信息之前获得，对对方不适用其他保密义务的；

6.2.2 不存对本合同或其他约定的违反而向大众公开；

6.2.3 在没有任何证据认为该公开违反了保密义务的情况下，从第三方获得；

6.2.4 公开人独立开发；

6.2.5 根据法律和规定公开并且在合法的范围内被要求公开的当事人从要求公开起在合适的期间内通知对方被要求的公开和作为公开对象的信息；
或者

6.2.6 对方有相关权限的代表书面承认了公开。

6.2.7 根据本规定把‘机密信息’告诉第三方时，也必须要提前通知对方。

6.2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당사자는 “배경”, “성과” 혹은 다른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고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6.2.1 상대방으로부터의 정보를 수령하기 전에 획득하였으며, 상대방에게 다른 비밀 유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6.2.2 본 계약 혹은 다른 규정에 위반 없이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6.2.3 공개가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어떠한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제3자로부터 획득하였다;

6.2.4 공개자가 독립적으로 개발하였다;

6.2.5 법률과 규정의 요건에 따라 공개되었으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공개를 요구 받은 당사자가 공개의 요구로부터 온당한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요구된 공개와 공개 대상인 정보를 통지하였다; 혹은

6.2.6 상대방의 권한을 가진 대표자에 의해 서면으로 공개가 승인되었다.

6.2.7. 본 규정에 따라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알리는 경우에도, 반드시 상대방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6.2 A party shall not be deemed to be in breach of any obligation to keep any Background, Results or other confidential information or disclose it to any other party if any of following:

- 6.2.1 is known to the party making the disclosure before its receipt from the other party, and not already subject to any obligation of confidentiality to the other party;
- 6.2.2 is or becomes publicly known without any breach of this Agreement;
- 6.2.3 has been obtained from a third party in circumstances where the party making the disclosure has no reason to believe that there has been a breach of an obligation of confidentiality owed to the other party;
- 6.2.4 has been independently developed by the party making the disclosure;
- 6.2.5 is disclosed pursuant to the requirement of any law or regulation and the party required to make that disclosure has informed the other,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being required to make the disclosure, of the requirement to make the disclosure and the information required to be disclosed;
- 6.2.6 is approved for release in writing by an authorised representative of the other party; or
- 6.2.7 must inform the other party even if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is disclosed to a third party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clause.

문언상으로는 비밀정보에 해당된다 하여도, 실제로는 비밀정보로 보기 어려운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정보들은 비밀유지의무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i) 비밀정보를 상대방으로부터 전달 받을 당시 이미 외부에 공개된 정보이거나, (ii)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제3자로부터 얻은 정보이거나, (iii) 상대방으로부터 전달 받을 당시 이미 그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iv) 상대방이 제공한 정보를 참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이거나, (v) 법원의 명령이나 정부 관계기관의 명령에 의해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는, 여기서 규정한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정보들을 추가할 수 있다.

6.3 【 】在未领取机密通知的情况下，按照5.2规定的程序和期限内发表不是机密的并由【 】所有或被许可的‘成果’、机密的或禁止为第三方公开的信息的，不构成对保密义务的违反。

6.3 []가 비밀정보가 아니며 []에 의해 소유되거나 라이선싱 된 ‘성과’, 혹은 비밀이거나 제3자에게 공개가 금지된 정보를 5.2조의 절차 준수와 해당 조항에 명시된 기한 내 비밀 통지 수령 없이 발표하는 것은 비밀 유지에 대한 의무 위반을 구성하지 않는다.

6.3 The publication of which [] is not confidential information but owned or licensed Result owned by [], or confidential information or information prohibited to disclose to a third party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in clause 5.2 shall not mount to the breach of confidential obligation.

앞서 살펴본 ‘제5조 학술적 사용과 간행물’ 부분과 ‘제6조 비밀보호’ 부분의 균형을 고려해서 삽입된 조항이다.

- 6.4 双方当事人在处理通过本项目取得的个人信息时，要注意以下事项；
- 6.4.1 各方当事人成为相关个人信息的数据管理人员；
 - 6.4.2 各方当事人根据本合同，只为了大学之间书面协议的目的和进行项目处理个人信息；
 - 6.4.3 各方当事人准备为应对未许可的或非法的个人信息处理、偶发的个人信息的损失或销毁或损害的所有适当并条理的对策；
 - 6.4.4 各方当事人保证接近或参加这些个人信息处理的自己的职员、承包商、负责人和代理人的可靠性；
 - 6.4.5 各方当事人知道存在对个人信息未许可的或非法的个人信息处理、偶发的个人信息的损失或销毁或损害、违反与该个人信息有关的数据保护法时，立即通知对方；
- 6.4 양당사자는 본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6.4.1 각 당사자는 해당 개인 정보에 대한 데이터 관리자가 된다;
 - 6.4.2 각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라, 서면으로 협의된 목적만을 위해 그리고 프로젝트 진행만을 위해 개인정보를 취급한다;
 - 6.4.3 각 당사자는 허가되지 않은 혹은 불법적 개인정보 취급 그리고 우발적 개인정보의 손실, 파기 혹은 손해에 대비한 모든 적절한 기술적 그리고 체계적 대책을 마련한다;
 - 6.4.4 각 당사자는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접근 혹은 참여하는 자신의 직원, 하청업자, 담당자 그리고 에이전트의 신뢰성을 보장한다;
 - 6.4.5 각 당사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허용되지 않은 혹은 불법적 취급 혹은 우발적 손실이나 파기 혹은 손해 혹은 해당 개인정보와 관련된 데이터보호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한다;
- 6.4 Both Parties shall follow the below when processing any personal information obtained in the process of Project:
- 6.4.1 Each Party shall be the data controller of relevant personal information;
 - 6.4.2 Each Party shall process the personal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and in only accordance with the specific written instructions;

- 6.4.3 Each Party shall take all appropriate technical and organizational measures against unauthorized or unlawful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and against accidental loss or destruction of, or damage to, personal information;
- 6.4.4 Each Party shall ensure the reliability of its employees, contractors, officers and agents who may have access to, or be involved in,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 6.4.5 Each Party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other party if there has been any unauthorized or unlawful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or any accidental loss or destruction of, or damage to, personal information or any breach of the Data Protection Act in relation to personal information.

한국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고 관련 제도가 크게 강화되었으나, 중국은 아직 그렇지 못하다. 중국에서 개인정보 취급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된 내용이다. 그러나 별도로 개인정보보호가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그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이를 삭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6.5 【 】或【 】保证其职员、学生、承包商等与项目有关的人员保守对‘机密信息’的秘密，制定如附录3的保密规约，要求相关人员提交如附录4的保密誓约书等为保密需要的文件。

6.6 一方当事人因违反本条款泄漏保密信息而给对方造成损失的，应承担赔偿责任。

6.5 [] 혹은 []는 자신의 직원, 학생, 하청업체 등 프로젝트 관련자들이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것임을 보증하며, 부록 3과 같이 비밀 관리 규약을 제정하고, 관련자들로부터 부록 4와 같이 비밀보호 서약서 등 비밀보호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받는다.

6.6 일방 당사자가 본 조항을 위반하여 비밀보호에 실패한 경우, 이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6.5 [] or [] shall ensure the confidentiality obligation by its employees, students or subcontractors involved in the Project and set out the rules managing confidentiality prescribed in Appendix 3 and obtain the documents required for the protection of confidentiality including the pledge of confidentiality prescribed in Appendix 4.

6.6 If the protection of confidentiality is filed by the breach of this clause by one Party, the damages experienced by the other Party shall be compensated.

공동연구 협약의 양 당사자가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하더라도 실제로 비밀을 취급하는 것은 협약 당사자가 고용한 직원, 학생, 하청업체 등 제3자일 가능성이 상당하다. 따라서, 당사자 내부에도 비밀관리 규약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공동연구 관련자들에게도 ‘비밀보호 서약서’ 등을 징수하여 실질적인 비밀유지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별도의 가이드북 ‘5. 비밀보호’ 부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7. 기술의 수출입(技术进出口)

本合同的中方当事人有需要时，要按照《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及《中华人民共和国技术进出口管理条例》等相关法规为对方当事人履行其他技术进出口许可程序以及技术进出口合同的登记程序。如果韩国的《关于防止和保护产业技术泄漏的法律》等法规有限制技术进出口的规定，韩方当事人也应为对方履行相关程序。

본 계약의 중국 측 당사자는 상대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기술수출입 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른 기술수출입 허가 절차 및 기술 수출입 계약의 등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한국 측 당사자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기술의 수출입 제한이 있으면 상대방을 위하여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The Party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of this Agreement, if necessary shall take all the necessary procedures for the approval of technology export and import and the recordation of technology export and import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Foreign Trad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Regulation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Administration of Import and Export of Technologies for the other Party. The Party of Republic of Korea shall take necessary procedures if any restrictions on the technology export and import under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of Republic of Korea.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주요 기술에 대한 국외 유출에 매우 민감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해외로 이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데, 중국은 주요 기술의 수출뿐만 아니라 기술의 수입에 대해서도 자유/제한/금지의 세 단계로 구분하며 품목별로 규제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만 표시하였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률을 추가로 기재할 필요가 있다.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별도의 가이드북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제공동연구개발을 하고자 한다면, 각 국가가 엄격하게 통제하는 기술의 이전이 필요한 분야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드시 국제공동연구가 필요하다면, 각 국가로부터 그에 필요한 사전 허가를 받거나 사전 신고를 해야 하고, 그 절차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허가를 받는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그러한 위험을 모두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본 샘플에서는 각 국가의 관련 규제는 비교적 이해도가 높은 해당 국가 당사자가 절차 이행을 하고 상대방이 이를 협조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8. 책임의 한도

8.1 双方当事人给对方当事人陈述或【保证】或【不保证】自己或参加项目的自己的职员【或学生等】提供的与项目有关的咨询、信息等将不构成或导致对第三方权利的侵害。

8.2 双方当事人如果由自己或自己的职员的归责事由给对方造成损害的，要赔偿。但是，该当事人提前告知对方并为损失的最小化采取妥当的措施的除外。

8.3 违反或懈怠本合同、履行本合同的内容、与项目和‘成果’相关而发生的一方对另一方的损害赔偿 responsibility 不超过【 韩元】或【按照本合同实际支付的金额】。

8.1 양 당사자는 자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자신의 직원 [혹은 학생 등]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제공된 자문이나 정보 등이 제3자 권리의 침해를 구성하거나 유발하지 않음을 다른 당사자들에게 진술하거나 보장[한다] 혹은 [하지 않는다].

8.2 양 당사자는 자신과 자신의 고용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당사자가 사전에 상대방에 고지하여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3 본 계약 위반, 태만 혹은 본 계약의 내용 이행, 프로젝트 그리고 ‘성과’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금 원] 혹은 [본 계약에 따라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넘지 않는다.

8.1 Each of the parties shall [or not] warrant to the other that the party, its employees [or students, etc] who work on the Project or works or information provided in connection with the Project shall not constitute or result in any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third party.

8.2 Each of the parties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losses of the other parties caused by the Party of its employees. It may not be so if the Party takes all the reasonable actions to minimize the damages by providing a prior notice to the other Party.

8.3 The aggregate liability of each party to the other for all and any

breaches of this Agreement, any negligence or arising in any other way out of the subject matter of this Agreement, the Project and the Results, will not exceed in total [the monies actually paid by the Company under this Agreement].

공동연구의 성격 상 연구결과에 대하여 어느 당사자도 보장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연구결과가 계획대로 얻어질 지부터 시작하여, 연구결과와 성공, 성능, 사업화 가능성, 정확성, 특허 받을 가능성, 제3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을 가능성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보장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러한 보장을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도 부당하고 불합리하다.

그렇지만 연구비 부담 여부, 연구 진척도의 우위, 협상력, 기타 여러 요소로 인하여 보장조항을 둘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다. 만약,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삽입하는 경우,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손해배상 예정액을 계약서 자체에 삽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본 샘플에서는 연구결과에 대한 보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손해배상액을 일정 금액 또는 실지금액 한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9. 불가항력(不可抗力)

- 9.1 如果发生不可抗力事件，影响一方履行其在本协议项下的义务，则在不可抗力造成的延误期内中止履行，而不视为违约。
- 9.2 宣称发生不可抗力的一方应迅速书面通知其他各方，并在其后的十五15天内提供证明不可抗力发生及其持续时间的足够证据。
- 9.3 如果发生不可抗力事件，各方应立即互相协商，以找到公平的解决办法，并且应尽一切合理努力将不可抗力的影响减少到最低限度。如延迟履行义务超过【3】或【6】个月的，对方可以通过书面通知立即终止本合同。

- 9.1 불가항력의 상황이 발생하고, 일방의 본 계약상 의무이행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이는 본 계약의 위반을 구성하지 않는다.
- 9.2 불가항력의 상황이 발생하면,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신속하게 서면 통지해야 하고,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불가항력의 상황이 발생하고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 9.3 불가항력의 상황이 발생하면, 각 당사자는 즉시 상대방과 상호 협의를 통해 공평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하고 불가항력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의무 이행의 지연이 [3] 혹은 [6] 개월을 초과할 경우,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로 즉시 본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 9.1 If the force majeure occurs and the performance by a party of it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it shall not cause the breach of this Agreement.
- 9.2 If the force majeure occurs, a party shall promptly provide a written notice to the other and shall prove that such force majeure has occurred and be continued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of notice.
- 9.3 If the force majeure occurs, both parties shall immediately find the fair resolving solution by mutual agreement and endeavor its best to minimize the effect of the force majeure. However, if the delay in performance is more than [3] or [6] months, the o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with immediate effect by giving a written notice.

계약불이행은 계약의 해지나 손해배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불가항력에 의한 계약불이행 또는 이행지체의 경우는 예외로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홍수, 화재, 사고, 지진, 폭동, 전쟁, 정부 활동, 전염병, 테러, 생산 시설의 파괴 등 어느 일방 당사자가 예방을 위해 노력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의한 이행지체나 계약불이행은 면책된다.

이러한 불가항력 사태가 발생하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즉시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이러한 통지가 전달된 이후에는 그 불가항력 사태가 지속되는 동안 본 계약상의 모든 의무가 잠시 중단된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조항에 의한 계약이행 의무 중단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계약불이행이나 이행지체의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10. 종료(终止)

10.1 发生下列情形之一的，通过向对方书面通知，各方当事人可以立即终止本合同。

10.1.1 【按照10.2，】对方违反了本合同（并有能力履行救济措施），而收到标明违反事项并要求救济措施的书面通知之日起【30】或者【60】天内对违反事项仍未采取纠正措施。

或者

10.1.2 若对方破产或被解散或对此的决议案被通过时，或者对对方资产的全部或部分任命破产接管人或财产管理人时，对方将对自己的债权人履行债务偿还合同。

10.1 다음과 같은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을 즉시 종료할 수 있다:

10.1.1 [10.2조에 따라,]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으며 (구제책을 이행할 능력이 있는 경우) 위반사항을 명시하고 구제조치를 요구하는 서면 통지의 수령으로부터 [30] 혹은 [60] 혹은 [90]일 이내에 위반사항을 구제하지 않는다; 혹은

10.1.2 상대방이 파산하거나, 해산이 명령되거나 그에 대한 결의안이 통과되거나 (자발적인 부채에 의한 합병 혹은 재편 제외), 혹은 상대방의 자산 전체 혹은 일부에 대하여 관재인 혹은 재산관리인이 임명되거나, 상대방이 자신의 채권자와 채무변제계약을 이행한다.

10.1 Either party shall terminate this Agreement with immediate effect by giving notice to the other party if:

10.1.1 [subject to clause 10.2,] the other party is in breach of any provision of this Agreement and (if it is capable of remedy) the breach has not been remedied within [30]OR[60]OR[90] days after receipt of written notice specifying the breach and requiring its remedy; or

10.1.2 the other party becomes insolvent, or if an order is made or a resolution is passed for its winding up (except voluntarily for the purpose of solvent amalgamation or reconstruction), or if an administrator, administrative receiver or receiver is appointed over the whole or any part of the other party's assets, or if the other party makes any arrangement with its creditors.

본 샘플에서는 상대방의 계약불이행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 통지로 시정을 요구한 후 [30, 60, 90] 일 이내에 시정이 되지 않으면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이 되지 않으면 그 상대방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는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이므로, 상대방에게 상대방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협약 당사자가 파산, 해산 하는 등 심각한 귀책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더 이상 본 계약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한 시정 요구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0.2 即使本合同终止, 第5、6、7、8、10.2、10.3、11以及13条在项目到期或本合同的终止之后也维持完全的效力。

10.2 본 계약이 종료하더라도, 5, 6, 7, 8, 10.2, 10.3, 11 그리고 13조는 프로젝트 기간의 만료 혹은 본 계약의 종료 후에도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

10.2 After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the clauses, 5, 6, 7, 8, 10.2, 10.3, 11 and 13 shall survive the expiry of the Project Period of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in full force and effect.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더라도 일부 조항들은 계속 적용될 필요가 있는데, 비밀유지나 분쟁해결과 같은 조항이 그러하다.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되더라도 비밀정보는 계속 유지되어야 하고, 계약 해지 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이나 지침이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되어 효력을 상실해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정해놓거나 또는 그 성질상 당연히 효력이 유지되는 조항들로써, (제5조) 학술적 사용과 간행물, (제6조) 비밀보호, (제7조) 기술의 수출입, (제8조) 책임의 한도, (10.2, 10.3) 계약의 종료, (제11조) 법률 준수, (제13조) 분쟁 해결이 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양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 10.3 本合同终止时，双方当事人应当支付在终止之前履行的所有研究的报酬。
【 】已支付了所有财政捐款，项目或本合同终止当时【 】为了所企图的目的没有用尽全部捐款的，【 】将没有使用的捐款返还。
- 10.3 본 계약의 종료 시,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종료 이전이 이행된 모든 연구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가 모든 재정 기여금을 지급하였고 프로젝트 혹은 본 계약의 종료 당시, []가 의도된 목적을 위해 해당 기여금 전체를 소진하지 않은 경우, []은 사용되지 않은 기여금을 상환한다.
- 10.3 On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both Parties shall make the full payment for all the researches performed prior to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If the Financial Contribution has been made by [] and the whole of that contribution has not, by the end of the Project Period or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been used for the purposes for which that Financial Contribution was provided, [] shall return the unused portion of that contribution.

국제공동연구 협약의 종료에 앞서서 회계의 정산이 필요하다. 미지급된 연구에 대한 보수가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협약의 종료로 더 이상 사용처가 없는 재정 기여금은 출연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이다.

11. 법률 준수(法律遵守)

双方当事人遵守韩国和中华人民共和国以及有关地区的所有法律、规则和
各种规定，为科技合作，合法地相互协力。如果，受到与本合同相关的任何不
当的财政上或有关其他利益的请求或要求，应当立即告知对方。

양 당사자는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및 해당지역의 모든 법률, 규칙 및
각종 규정을 준수하며, 적법하게 과학기술의 공동연구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만약,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부당한 재정적 혹은 기타 이익에 대한 요
청 혹은 요구를 받는다면 이를 즉시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Each of the parties shall comply with all applicable laws, regulations
and codes of Republic of Korea,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all
other relevant territory and cooperate for the legitimate research
collabo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parties shall promptly report
to the other party any request or demand for undue financial or other
advantage of any kind received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한 · 중 양국의 주체가 참여하여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양국의 법제
도 및 규칙을 준수하고 상호 존중하는 것은 기본 전제가 된다. 본 조항은 이를
확인하는 주의규정에 해당한다.

12. 통지(通知)

根据本合同的所有通知，按照【韩文】或【中文】或【英文】书面制作，通过下边左侧标示的方式，传送到对方或双方当事人，看作在右侧标示的日子收到。

| 传送方式 | 所看作的领取日期 |
|---------|------------------|
| 直接传递或快递 | 对方在回执上签字 |
| 邮编 | 对方在回执上签字 |
| 电子邮箱 | 该通知进入该邮箱系统视为通知到达 |

收到所有通知的当事人的联系方式如下：

| 【甲】： | 【乙】： |
|-------|-------|
| 姓名： | 姓名： |
| 地址： | 地址： |
| 电子邮箱： | 电子邮箱： |

본 계약에 따른 모든 통지는 [한국어] 혹은 [중국어] 혹은 [영어]로 서면 작성되며, 아래 좌측열에 명시된 방식을 통해 상대방 혹은 양당사자에게 인도되며, 우측열에 명시된 일자에 수령된 것으로 간주된다.

| 인도방식 | 간주된 수령일자 |
|-------------|---------------|
| 직접 전달 혹은 택배 | 수령증에 서명한 때 |
| 우편 | 수령증에 서명한 때 |
| 이메일 | 이메일 수신확인이 된 때 |

모든 통지를 받게 되는 당사자의 주된 연락 담당자는 아래와 같다.

| [갑]: | [을]: |
|---------|---------|
| 성명: | 성명: |
| 주소: | 주소: |
| 이메일 주소: | 이메일 주소: |

Any notice to be given under this Agreement must be in [Korean] or [Chinese] or [English] and in writing, may be delivered to the other party or parties by any of the methods set out in the left hand column below, and will be deemed to be received on the corresponding day set out in the right hand column:

| Method of service | Deemed day of receipt |
|--------------------------|--|
| By hand or courier | When sign the receipt |
| By mail | When sign the receipt |
| By email | When the receipt of email is confirmed |

The parties for the receipt of notices are as follows:

| [A] | [B] |
|----------------|----------------|
| Name: | Name: |
| Address: | Address: |
| Email address: | Email address: |

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아니라, 본 계약상의 통지, 요청, 요구, 결정 등은 본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때 서면은 직접 인편으로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거나, 추적 서비스가 제공되는 국제 특송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 밖에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의사소통수단(예를 들면, 수신 확인 가능한 팩스, 수신 확인 가능한 이메일 등)으로도 보낼 수 있다.

만일 계약에서 의사의 통지 방법을 특정하고 있고, 일방 당사자가 계약에서 정해진 방법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한 경우에는 계약에 따른 통지를 실시하지 아

니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각 당사자의 연락처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상대방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만일 그러한 의무를 게을리 하여 상대방이 중요한 통지를 적시에 하지 못하거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러한 의무를 게을리 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묻어서는 안 될 것이다.

13. 분쟁의 해결(解决纠纷)

13.1 适用法律：与本合同或‘成果’有关的所有纠纷或诉讼（包括非合同纠纷或者诉讼）根据【中国】或【韩国】的法律履行、解决。

13.1 준거법: 본 계약 혹은 ‘성과’와 관련된 모든 분쟁 혹은 소송 (비계약적 분쟁 혹은 소송 포함)은 [중화인민공화국] 혹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이행되고 해결된다.

13.1 Governing law: This Agreement or any dispute or claim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Result (including non-contractual disputes or claims) are governed by, and are to be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People’s Republic of China]OR[the Republic of Korea].

준거법은 본 계약의 적용이나 해석의 기준이 되는 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준거법이 한국법이라고 하면, 본 계약의 특정 조항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는 한국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계약의 경우에는 준거법을 어느 나라의 법으로 할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계약의 당사자들은 당연히 자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충돌하게 된다.

하지만 이와 같이 준거법을 어느 일방 당사자의 자국법으로 정하면, 해당 법제도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그 상대방은 계약의 적용 및 해석에 있어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도 직접 대응이 불가능하므로 어쩔 수 없이 현지 대리인이나 국내의 외국변호사를 고용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비용도 더 지불할 수밖에 없는 반면, 자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당사자는 자국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므로 직접 대응이 가능하고 그만큼 분쟁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분쟁 발생 시 대응 전략이나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이른바 ‘홈그라운드 어드밴티지(home ground advantage)’를 적극 활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공정한 국제계약이 되도록 준거법은 어느 일방 당사자의 자국법보다는 제3국의 법으로 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준거법은 분쟁해결의 장소와 연관이 되는데, 만일 준거법을 양보했다면 분쟁해결의 장소를 양보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13.2 管辖权：除了一方在特定管辖区内提起与自己的知识产权或机密信息保护有关的诉讼以外，【韩国】或【中国】的法院对有关本合同、合同的内容和构成有解决诉讼（包括非合同纠纷或者诉讼）的【非】独占性管辖权。

或者

13.2 因本协议发生的，或与本协议相关的纠纷按照双方的友好协商解决。协商未成功的，任何一方可以向【香港国际仲裁中心】或者【中国贸易仲裁委员会】或者【大韩商事仲裁院】申请仲裁。仲裁应根据申请仲裁时该仲裁委届时有效的仲裁规则进行。仲裁地为【香港】或【中国北京】或【韩国首尔】，仲裁语言为【英文】或者【中文】或【韩文】。

13.2 관할권: 일방이 특정 관할권에서 자신의 지식재산권 혹은 비밀 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혹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원은 본 계약, 그의 내용 그리고 구성에 관한 분쟁과 소송을 (비계약적 분쟁 혹은 소송 포함) 해결할 [비]독점적 관할권을 가진다.

혹은

13.2 본 협의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혹은 본 협의와 관련된 분쟁은 쌍방의 우호적인 협상으로 해결한다. 협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어느 일방이든 [홍콩 국제중재센터] 혹은 [중국 무역중재위원회] 혹은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는 중재 신청 시의 유효한 중재규칙에 의하여 진행된다. 중재지는 [홍콩] 혹은 [중국 북경] 혹은 [대한민국 서울]이고, 중재 언어는 [영어] 혹은 [중국어] 혹은 [한국어].

13.2 Jurisdiction: except that either party may bring proceedings in relation to the protection of i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Confidential Information, [Republic of Korea] or [People's Republic of China] shall have [non]exclusive jurisdiction to settle any dispute or claim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or its subject matter or formation (including non-contractual disputes or claims).

OR

13.2 Both Parties shall amicably discuss any dispute or claim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Agreement. If the negotiation cannot be achieved, any of party may seek an arbitration at [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or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or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The arbitration shall be carried out by the valid arbitration rules at the time of seeking arbitration. The venues shall be [Hong Kong] or [Beijing] or [Seoul]. The language of arbitration shall be [English] or [Chinese] or [Korean].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크게 2가지 단계로 해결을 모색할 수 있다. 우선 계약당사자의 고위 임원들이 직접 협상을 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그러한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소송 혹은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단계로 나아간다.

법원에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비독점적 관할의 합의’를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독점적 관할의 합의가 있는 경우 합의된 관할 법원 외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비독점적 관할의 합의’를 하는 경우 합의된 법원 외에 (국제사법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법원이 아닌 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 다만, 이때 유의해야 할 것은 중재원의 중재판정이 내려지면 중재과정에서 불복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중재판정은 최종적이면서도 양 당사자들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1회의 판정이므로, 법원에서 다시 판단 받을 수 없으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중재합의에 의한 구속력 때문에 부적법 각하 판결을 받게 된다.

다만, 중재결정이 있기 전까지 특정 행위 금지, 재산 처분 금지나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은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중재결정에 따른 집행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중재신청 전에 법원에 상대방에 대한 특정 행위 금지나 재산 처분 금지 등의 보전처분을 신청한 후, 중재결정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른 집행을 법원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게 된다.

중재는 각국의 중재원 중 한 곳을 양 당사자들이 지정하면 그 중재원에서 법원의 재판과 유사한 형식의 중재를 실시한다. 중재자들은 현직 법관이 아니라 퇴직한 법관이나 법률전문가들로서, 법원의 재판과 유사한 형식으로 사건을 심리한 후 판단을 내리게 되며, 중재원의 결정은 양 당사자들의 중재합의에 따라 구속력을 가지게 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협상이 실패하면 소송보다는 중재를 진행하는데, 이는 중재가 양 당사자들에게 대한 구속력이 있고, 법원의 재판과 유사한 형식으로 진행되며, 법률전문가가 중재를 하고, 1심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분쟁해결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중재규정에 따르면 전세계 어디에서도 동일한 규정에 따라 진행할 수 있고, 언어도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현지 대리인이 아니라 국내 중재전문가를 선임하여 대리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반면 소송은 일방 당사자의 국가에서 하는 경우 그 나라 법에 따라 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며, 제3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생소한 국가의 법원에서 그 나라의 법과 언어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현지 법률대리인도 고용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다.

주요 도시에는 각국의 중재원이 있는데, 양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이들 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다. 서울에도 중재원이 있으나, 양 당사자에게 대한 유불리 정도가 비슷한 제3국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나 홍콩이 주요 중재 장소로 선택된다. 중재는 국제 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중재규정에 기초하기 때문에 중재 장소에 관계없이 어느 정도의 일관성을 보장 받을 수도 있다. 어느 일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중재에서는 보통 영어를 사용한다. 중재인은 1명 또는 3명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중재인이 많으면 보다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할 수 있으나, 중재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나므로 이를 감안하여 중재인 수를 정할 필요가 있다.

중재 과정에서의 발언이나 논의사항은 모두 비밀로 유지되며, 관련 법률이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지 않는 한, 중재자는 중재의 존재 여부, 중재 내용, 중재 결과를 발설하여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쟁해결의 방법을 법원의 판결에 의할 것인지 중재소의 중재판정에 의할 것인지를 선택하여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13.3 与知识产权或机密信息有关的法律手续：本合同的任何内容都不禁止当事人为了保护、行使与知识产权或机密信息有关的自己的权利而在特定的管辖区内提起诉讼。

13.3 지식재산권 혹은 비밀보호와 관련된 법적 절차: 본 계약의 어떠한 내용도 당사자가 지식재산권 혹은 비밀보호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사하기 위해 특정 관할권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13.3 Proceedings relating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Confidential Information: Nothing in this Agreement will prevent either party from bringing an action in any jurisdiction in order to protect or enforce i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its rights in respect of Confidential Information.

양 당사자 간에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특정 법원에 대한 전속적 관할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해서는 관할합의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침해지 등 합의된 곳 이외에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14. 기타 사항(其他事項)

14.1 转让：当事人在没有对方的事前书面承认，不能转让本合同上的义务、全部权限或其一部分。承认应当通过正当的方式获得并不能延迟。

14.1 양도: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본 계약상의 의무나 권한 전체 혹은 그 일부로서 본 계약을 양도할 수 없다. 승인은 정당하게 획득되어야 한다.

14.1 Assignment: Neither party may assign or transfer this Agreement as a whole, or any of its rights or obligations under it, without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other party. The consent should be reasonably obtained.

본 샘플은 어느 일방 당사자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할 수 없도록 하였다.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해당 당사자들이 공동연구에 반드시 필요하여 애초에 그러한 공동연구가 논의되어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제3자가 대신 참여하는 것은 그러한 공동연구의 의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제공동연구개발계약에서는 권리의무의 양도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연구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도 금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어느 일방 당사자가 제3자에게 인수합병 되거나, 법률이나 법원에 의한 계약의 양도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가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본 조항에 따라 상대방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그러한 사전 동의가 없이 계약이 양도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러한 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14.2 放弃权利：一方不强制对方的义务，或延迟强制，或不行使本合同上的权利，或延迟其行使的，这些不会被看作放弃了强制该义务的权利或其他权利。在特别明示的情况以外，放弃本合同特定条款的权利不构成放弃以后的对该条款的权利。

14.2 권리 포기: 일방이 상대방의 의무를 강제하지 않거나 강제가 지연되며, 본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그의 행사가 지연되는 경우, 이는 해당 의무 강제에 대한 권리 혹은 기타 권리의 포기로 간주되지 않는다.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의 특정 조항에 대한 권리 포기는 향후의 해당 조항에 대한 권리 포기를 구성하지 않는다.

14.2 Waiver of rights: If a party fails to enforce, or delays in enforcing, an obligation of the other party, or fails to exercise, or delays in exercising, a right under this Agreement, that failure or delay will not affect its right to enforce that obligation or constitute a waiver of that right. Any waiver of any provision of this Agreement will not, unless expressly stated to the contrary, constitute a waiver of that provision on a future occasion.

어느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상의 권리나 권한을 행사하지 않거나 행사를 지체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권리나 권한을 포기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본 계약의 어떤 약정을 유예하였거나 면제하였다고 하여 그 약정이나 다른 약정을 재차 위반하는 경우에도 이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것이라고 해석되어서도 안 된다. 따라서 본 계약의 각 규정에 의한 권리나 권한은 그 당시의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에 반복되어 발생한 같은 사안에 대하여 언제나 상대방에게 다시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14.3 禁止代理关系：本合同的任何内容不构成双方当事人的伙伴关系、合作公司或者发包商和承包商的关系。一方不能代理对方进行保证或约定，也不能给对方产生责任。

14.3 에이전시 관계 금지: 본 계약상의 어떤 내용도 양당사자 간의 파트너십이나 합작회사 혹은 원청인과 하청인 관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일방은 상대방을 대리하여 보증 혹은 약속을 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발생시킬 수 없다.

14.3 No agency: Nothing in this Agreement creates any partnership or joint venture between the parties, 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of principal and agent. Neither party has any authority to make any representation or commitment, or to incur any liability, on behalf of the other

국제공동연구 협약의 당사자는 공동으로 R&D 개발을 수행할 목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것인바,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에이전시, 합작회사 혹은 하청관계를 구성하지 않으며, 어느 일방이 보증 책임 등 상대방의 법적 책임을 대신 부담할 이유가 없다.

14.4 完全의协议：本合同对本文的内容构成完全的协议。各方当事人确认，不会对本合同没有明示的任何保证、陈述不签订合同或按照协定的合同。

14.4 완전한 합의: 본 계약은 본문의 내용에 대한 양당사자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한다. 각 당사자는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어떠한 보증, 진술, 계약 혹은 협약에 따른 계약도 체결하지 않음을 인지한다.

14.4 Entire agreement: This Agreement constitutes the entir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relating to its subject matter. Each party acknowledges that it has not entered into this Agreement on the basis of any warranty, representation, statement, agreement or undertaking except those expressly set out in this Agreement.

본 계약이 체결되기까지 양 당사자들 간에 협상을 계속 진행하여 왔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많은 합의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본 계약은 그러한 협상 과정에 의하여 합의된 최종적인 결과물이므로, 이전에 합의된 구두나 서면상의 약정에 우선하고 그러한 약정을 대신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본 계약과 이전의 약정이 모두 유효하게 되어 만일 서로 상충되는 경우 어느 것을 따라야 하는지 불분명하게 된다.

따라서 이전의 약정이 본 계약과 상충된다거나 본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전혀 의미가 없으며, 본 계약에서 합의되어 명시된 내용만이 양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이 있다.

14.5 语言：本合同用【韩文】或【中文】或【英文】制作。合同翻译成其他语言的，优先适用【韩文】或【中文】或【英文】版。如有需要，可以制作本合同和其他文件的翻译本。

14.5 언어: 본 계약은 [한국어], 혹은 [중국어], 혹은 [영어]로 작성된다. 본 계약이 다른 언어로 번역될 경우, [한국어] 혹은 [중국어] 혹은 [영어본]이 우선 적용된다. 필요한 경우 본 계약 및 기타 서류의 번역본을 작성할 수 있다.

14.5 Language: This Agreement shall be prepared in [Korean] or [Chinese] or [English]. If this Agreement is translated into any other language, [Korean] or [Chinese] or [English] shall prevail. If necessary, translation of this Agreement and other documents can be prepared.

국제공동연구 협약서의 작성 기준이 되는 언어를 무엇으로 정할 것인지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한국과 중국 간에 체결되는 협약은 한국어와 중국어로 작성되는 경우도 있지만, 양국 담당자가 다 이해 할 수 있으며 어느 국가 당사자에게도 치우치지 않도록 ‘영어’를 기준언어로 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대해서는 협약 체결할 당시 당사자들의 편의에 의하여 선택하고 협약서를 완성하면 될 것이다. 다만, 주의할 점은 한국어, 중국어, 영어 등 여러 개의 언어에 의한 계약서가 작성되는 경우, 계약서 상호간에 모순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어느 언어에 의한 계약서가 우선할 것인지에 대한 당사자 합의가 명확히 정리되어야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14.6 本合同一式【两】或【三】份，‘甲’各执一份，‘乙’各执一份，‘丙’各执一份，具有同等的法律效率。

【甲】代表 签署

姓名
职位
签名

【乙】代表签署

姓名
职位
签名

【 】已确认并理解

【 】已确认并理解

签名

签名

日期

日期

14.6 본 계약은 같은 양식 [2] 혹은 [3]부를 ‘갑’이 1부, ‘을’이 1부, ‘병’이 1부를 가지며, 모두 동등한 법률 효력이 있다.

[갑] 대표자 서명

성명
직함
서명

[을] 대표자 서명:

성명
직함
서명

[]가 이를 확인하고 인지함

[]가 이를 확인하고 인지함

서명

서명

일자

일자

14.5 This Agreement shall be executed in [2] or [3] counterparts and each copy shall have the same legal effect and be kept by [] [] [].

Signature

Signature

Title

Title

Name

Name

Date

Date

양 당사자들의 권한 있는 대표자들이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받아들이고 동의한다는 표현으로 계약을 마무리한다. 양 당사자들의 대표자들이 각자 서명한 일시, 본인의 성명과 직위를 기재하고, 마지막으로 이 계약에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완성된다.

Ⅲ. 국제공동연구 계약서

〈중문판〉

跨国科技合作合同书

【甲】

【乙】

【丙】

签订日：20【】年【】月【】日

本合同范本为了谋求韩国与中华人民共和国的大学、研究所及企业等科学技术研究主体之间签订协约的便利、增进两国的友好关系、强化科学技术领域的协作而制定。

本合同范本并不是为了特定的项目制定的，可能不适合于签订特定的跨国科技合作协约。

※ 对于以下划黄线的部分，当事人可以通过选择或填空的方式，把合同范本完成为个别的合同。

※ 用红色标记的部分是考虑到多数当事人签订合同的情况的，双方当事人签订合同时把红色标记删除即可。

跨国科技合作合同书

本合同在共同进行的研究项目上，为了谋求以下当事人之间的友好合作、共同发展，规定权利归属和分配等的重要事项而制定。

【甲】是根据【】的法律合法成立的，位于【（地址）】。

【乙】是根据【】的法律合法成立的，位于【（地址）】。

【丙】是根据【】的法律合法成立的，位于【（地址）】。

1、定义

1.1 本合同使用的词语，其定义如下：

| | |
|-------------|--|
| 本合同书 | 包括本跨国科技合作合同书、附录在内的根据当事人之间的协议修改、变更的合同书 |
| 项目 | 附录1说明的研究项目，可以随时修改 |
| 背景 | 为了利用于本项目，一方当事人在合同前后向另一方当事人提供的信息、技术、诀窍、软件以及资料（与公开或存储的方式或媒介无关）等一切 |
| 成果 | 通过本项目（与背景的使用与否无关）确认的、实施的、获得的所有信息、诀窍、结果、发明创造、软件以及其他知识产权一切 |
| 改良 | 利用了本项目的成果，但超出所形成的成果范围的所有发明创造、信息、诀窍、结果、软件以及其他知识产权 |
| 知识产权 | 专利权、实用新型权、外观设计权、商标权（包括服务商标）、著作权（包括对数据库和软件的权利）、机密信息、诀窍等一切无形财产权 |
| 诀窍 | 没有向大众公开的非专利技术信息（包括发明创造、发现、构想、方法、模型、研究开发和试验程序、实验、试验结果、制造工程、技巧和设计结构、品质管理数据、分析、报告和结果） |
| 机密信息 | 为了在本项目上使用而一方当事人向对方公开的背景、成 |

果、改良等的知识产权以及其他不能向对外公开的信息

有关保密的法规 韩国的《关于不正当竞争防止和营业秘密保护等的法律》和中国的《反不正当竞争法》等所有有关保密的法律指南或规定以及它们的修订案、修正案或可以替代的法律

财政贡献 按照附录2明示的公司提供的财政贡献

外部捐助 第三方提供并在本项目上一方当事人使用的基金或补助金

1.2 本合同当中的‘书面’，包括电子邮件。

1.3 本合同上的‘包含’、‘特别’或与此类似的表达是为了明确其意思而使用的，并不限制该表达的说明、定义、语句或表达。

1.4 本合同上写明的时间、日期或期限【是】【并不是】都要必须被遵守的。

2、项目

2.1 本项目从【20】年【】月【】日到【20】年【】月【】日，在【责任研究员】或【公司监督人】的指示和监督下在【（场所）】进行。本项目的详细课题内容在附录1规定。【项目开始以后签订本合同的，溯及适用于实行日当时或以后进行的与项目相关的研究。】

2.2 本合同当事人履行按照附录1分配的课题，并提供附录2规定负责的人力、资料、设施和装备。

2.3 各方当事人为了获得要履行按照附录1分配的课题所需要的所有规定的资格和伦理资格、承认和认可，尽妥当的努力。

2.4 各方当事人保证参加项目的职员和学生具有合适的资格、按照项目履行所有研究开发时遵守规定、履行项目的过程当中制作完整并准确的记录、遵守附录3的秘密管理规约。

- 2.5 各方当事人按照附录1，为履行项目尽妥当的努力，但任何当事人都不保证研究或项目会导出特定结果或者杰出的结果。
- 2.6 【】向【】提交简要项目进行情况的【每月】或【各季度】或【年度】报告、所有成果的副本。
- 2.7 各方当事人保证根据自己的章程对对方具有完全的权力和权限，并已取得了为了签订本合同、履行本合同上的义务所需要的、自己的章程或法律要求的所有认可、许可、承认和执照。
- 2.8 各方当事人保证，自己或自己的职员访问由对方当事人所有或控制或使用的场所、或在该场所进行研究时，遵守所有、控制、使用该场所的或提供设备的当事人通知的环境保护政策、保安和安全保障政策以及规定和程序。各当事人尽快通知对方所理解的有关健康和安全的危险性。各当事人立即通知对方履行本合同时发生的受伤、可能导致财产损失或受伤或事故。

3、财政贡献、外部捐款以及结算计划

- 3.1 【甲】从收到付款通知之日起【30】或【60】日以内按照附录2给【乙】支付对项目的财政贡献金。【乙】应当管理、制作与项目支出有关的完整并准确的账户和账簿。
- 3.2 按照本合同应当支付的所有金额按照【韩元】或【人民币】支付，所有金额【包含】或【不包含】按各国法律规定支付的税金。
- 3.3 【甲】没有在期限内结算的，【乙】可以对未支付的金额每日请求年【】%的利息。
- 3.4 【除了附录2规定的情况以外】各当事人所有利用财政贡献或外部捐款由其或为其购买或制造的全部装备。
- 3.5 项目有外部捐款的，当事人要遵守外部捐款条件。尤其，各方当事人为对方的外部捐款赞助人要求提供的项目报告，提供适当的支援。

4、知识产权的使用与利用

4.1 本合同对‘背景’的知识产权或不是‘成果’的其他技术、设计、研究、发明创造、软件、数据、技巧、专有技术或对资料的知识产权所有权，都不会起到任何的影响。给项目贡献的‘背景’的知识产权，属于做出该贡献的当事人（或许可人）的财产。除了通过本合同明确的授予知识产权的情况以外，本合同的内容不构成对使用知识产权的许可授权或默认授权。

4.2 各方当事人给对方授予不是为了其他目的而是只为了履行项目的、为使用‘背景’的无使用费的非独占性许可。不能授予让本合同以外的第三人使用对方‘背景’的分许可。

4.3 对成果的知识产权归做出其‘成果’的【】所有，按照自己的判断，利用自己的费用，通过专利申请等可以获得对‘成果’的权利。还有，可以采取起诉在内的对该知识产权的保护措施。

或者

4.3 【】、【】、【】共同做出‘成果’的，并可以区分对其‘成果’形成的知识产权的贡献度的，对其‘成果’的知识产权按照各当事人贡献的比例归各方当事人共同所有（不能区分其贡献程度的，按照同等的比例归共同所有。当事人之间可以协商确定共同所有的份额）。所有权利人可以按照同等的比例、同样的费用，通过专利申请等的方式获得权利。还有，可以采取起诉在内的对该知识产权的保护措施。

对成果的所有知识产权共同所有人，除了阻碍其他共同所有人行使其权利的以外，可以像独占所有权人一样使用该知识产权。

4.4 各方当事人确认产生了可以申请专利的‘成果’之后立即通知对方，并提交相关‘成果’的副本。

4.5 各方当事人雇佣如学生或承包商等的第三人参加项目时，雇用这些第三方的当事人要保证该第三人对‘成果’不具有其他知识产权。各方当事人按照韩国《发明振兴法》或中国的相关法规要遵守给雇员支付职务发明报酬的义务，不能因此让对方受到损害。

4.6 所有对成果的知识产权的【 】,将【授予】或【不授予】对方在与项目有关的地区为了使用‘成果’所包含的知识产权的【有】或【没有】许可费的【非】独占性使用权。为了履行项目,【(当事人)】【可以】或【不可以】分许可使用其‘成果’。

4.7 各方当事人和职员、承包商、学生等有合法权利利用项目‘成果’的,可以利用项目‘成果’创造超出‘成果’范围的新的‘改良’,对‘改良’的知识产权如果没有另外的协议就归‘改良’的设计人所有。

4.8 本合同的中方当事人有需要时为韩国相关人员根据中国《专利法》、《合同法》、《专利实施许可合同备案办法》向中国国家知识产权局办理使用许可合同备案程序和【独占、排他或普通】许可权设定备案手续。韩方当事人也需要设定、备案专利权等的【独占、排他或普通】许可权时,为中方当事人向韩国特许厅办理【独占、排他或普通】许可权设定、备案手续。双方当事人为对方的程序履行尽努力协助。

5、 学术利用和刊物

5.1 向【 】,通知发表的具体意图,但尚未收到5.2所规定的机密通知的,【 】,的所有职员或学生(与参加项目与否无关)履行下列事项;

5.1.1 在大学研讨会、个别指导和课堂上讨论关于按项目的一部分而实施的研究;并

5.1.2 以学术目的发表公司的背景(除机密信息外)或所有成果及改良。

5.2 希望以学术目的发表的,书面发表之日起至少在【30】或【60】天前向【 】,提交其‘背景’及‘成果’有关的详细内容。【 】,通过书面通知(机密通知)提出上述资料的当事人,要求他为了保护专利而做所需要的延迟、或者为保护机密信息而做所需要的对刊物的修正、或者对于针对保护的稳妥的意见,从机密通知日起【 】,月内延迟发表。【 】,从收到提议发表资料之日起【15】或【30】日以内进行机密通知。如在该时间内尚未收到机密通知,履行所提议的发表。【 】,在该时间内未收到机密通知的,希望以学术目的发表的,可以进行所提议的发表。

6、 保密

- 6.1 双方当事人【在项目期间或项目结束后【3】或【5】或【7】或【10】年内】，不向第三人公开对方的机密信息，或为除了进行本项目以外的其他目的的使用。
- 6.2 在下列情况下，不会看作有关当事人违反了保持对‘背景’或‘成果’或其他信息的机密而不向第三方公开的义务；
- 6.2.1 从对方领取信息之前获得，对方不适用其他保密义务的；
- 6.2.2 不存对本合同或其他约定的违反而向大众公开；
- 6.2.3 在没有任何证据认为该公开违反了保密义务的情况下，从第三方获得；
- 6.2.4 公开人独立开发；
- 6.2.5 根据法律和规定公开并且在合法的范围内被要求公开的当事人从要求公开起在合适的期间内通知对方被要求的公开和作为公开对象的信息；或者
- 6.2.6 对方有相关权限的代表书面承认了公开。
- 6.2.7 根据本规定把‘机密信息’告诉第三方时，也必须要提前通知对方。
- 6.3 【】在未领取机密通知的情况下，按照5.2规定的程序和期限内发表不是机密的并由【】所有或被许可的‘成果’、机密的或禁止为第三方公开的信息的，不构成对保密义务的违反。
- 6.4 双方当事人在处理通过本项目取得的个人信息时，要注意以下事项；
- 6.4.1 各方当事人成为相关个人信息的数据管理人员；
- 6.4.2 各方当事人根据本合同，只为了大学之间书面协议的目的和进行项目处理个人信息；

6.4.3 各方当事人准备为应对未许可的或非法的个人信息处理、偶发的个人信息的损失或销毁或损害的所有适当并条理的对策；

6.4.4 各方当事人保证接近或参加这些个人信息处理的自己的职员、承包商、负责人和代理人的可靠性；

6.4.5 各方当事人知道存在对个人信息未许可的或非法的个人信息处理、偶发的个人信息的损失或销毁或损害、违反与该个人信息有关的数据保护法时，立即通知对方；

6.5 【 】或【 】保证其职员、学生、承包商等与项目有关的人员保守对‘机密信息’的秘密，制定如附录3的保密规约，要求相关人员提交如附录4的保密誓约书等为保密需要的文件。

6.6 一方当事人因违反本条款泄漏保密信息而给对方造成损失的，应承担赔偿责任。

7、技术进出口

本合同的中方当事人有需要时，要按照《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及《中华人民共和国技术进出口管理条例》等相关法规为对方当事人履行其他技术进出口许可程序以及技术进出口合同的登记程序。如果韩国的《关于防止和保护产业技术泄漏的法律》等法规有限制技术进出口的规定，韩方当事人也应为对方履行相关程序。

8、责任的限度

8.1 双方当事人给对方当事人陈述或【保证】或【不保证】自己或参加项目的自己的职员【或学生等】提供的与项目有关的咨询、信息等将不构成或导致对第三方权利的伤害。

8.2 双方当事人如果由自己或自己的职员的归责事由给对方造成损害的，要赔偿。但是，该当事人提前告知对方并为损失的最小化采取妥当的措施的除外。

8.3 违反或懈怠本合同、履行本合同的内容、与项目和‘成果’相关而发生的一方对另一方的损害赔偿责任不超过【 韩元】或【按照本合同实际支付的金额】。

9、 不可抗力

9.1 如果发生不可抗力事件，影响一方履行其在本协议项下的义务，则在不可抗力造成的延误期内中止履行，而不视为违约。

9.2 宣称发生不可抗力的一方应迅速书面通知其他各方，并在其后的十五15天内提供证明不可抗力发生及其持续时间的足够证据。

9.3 如果发生不可抗力事件，各方应立即互相协商，以找到公平的解决办法，并且应尽一切合理努力将不可抗力的影响减少到最低限度。如迟延履行义务超过【3】或【6】个月的，对方可以通过书面通知立即终止本合同。

10、 终止

10.1 发生下列情形之一的，通过向对方书面通知，各方当事人可以立即终止本合同。

10.1.1 【按照10.2，】对方违反了本合同（并有能力履行救济措施），而收到标明违反事项并要求救济措施的书面通知之日起【30】或者【60】天内对违反事项仍未采取纠正措施。

或者

10.1.2 若对方破产或被解散或对此的决议案被通过时，或者对对方资产的全部或部分任命破产接管人或财产管理人时，对方将对自己的债权人履行债务偿还合同。

10.2 即使本合同终止，第5、6、7、8、10.2、10.3、11以及12条在项目到期或本合同的终止之后也维持完全的效力。

10.3 本合同终止时，双方当事人应当支付在终止之前履行的所有研究的报酬。【
】已支付了所有财政捐款，项目或本合同终止当时【
】为了所企图的目的
没有用尽全部捐款的，【
】将没有使用的捐款返还给公司。

11、 法律遵守

双方当事人遵守韩国和中华人民共和国以及有关地区的所有法律、规则和各种规定，为科技合作，合法地相互协力。如果，受到与本合同相关的任何不当的财政上或有关其他利益的请求或要求，应当立即告知对方。

12、 通知

根据本合同的所有通知，按照【韩文】或【中文】或【英文】书面制作，通过下
边左侧标示的方式，传送到对方或双方当事人，看作在右侧标示的日子收到。

| 传送方式 | 所看作的领取日期 |
|---------|----------------------|
| 直接传递或快递 | 对方在回执上签字 |
| 邮编 | 对方在回执上签字 |
| 电子邮箱 | 该通知进入该邮箱系统视为通知 到达 |

收到所有通知的当事人的联系方式如下：

【甲】：

姓名：

地址：

电子邮箱：

【乙】：

姓名：

地址：

电子邮箱：

13、解决纠纷

13.1 适用法律：与本合同或‘成果’有关的所有纠纷或诉讼（包括非合同纠纷或者诉讼）根据【中国】或【韩国】的法律履行、解决。

13.2 管辖权：除了一方在特定管辖区内提起与自己的知识产权或机密信息保护有关的诉讼以外，【韩国】或【中国】的法院对有关本合同、合同的内容和构成有解决诉讼（包括非合同纠纷或者诉讼）的【非】独占性管辖权。

或者

13.2 因本协议发生的，或与本协议相关的纠纷按照双方的友好协商解决。协商未成功的，任何一方可以向【香港国际仲裁中心】或者【中国贸易仲裁委员会】或者【大韩商事仲裁院】申请仲裁。仲裁应根据申请仲裁时该仲裁委届时有效的仲裁规则进行。仲裁地为【香港】或【中国北京】或【韩国首尔】，仲裁语言为【英文】或者【中文】或【韩文】。

13.3 与知识产权或机密信息有关的法律手续：本合同的任何内容都不禁止当事人为了保护、行使与知识产权或机密信息有关的自己的权利而在特定的管辖区内提起诉讼。

14、其他事项

14.1 转让：当事人在没有对方的事前书面承认，不能转让本合同上的义务、全部权限或其一部分。承认应当通过正当的方式获得并不能延迟。

14.2 放弃权利：一方不强制对方的义务，或延迟强制，或不行使本合同上的权利，或延迟其行使的，这些不会被看作放弃了强制该义务的权利或其他权利。在特别明示的情况以外，放弃本合同特定条款的权利不构成放弃以后的对该条款的权利。

14.3 禁止代理关系：本合同的任何内容不构成双方当事人的伙伴关系、合作公司或者发包商和承包商的关系。一方不能代理对方进行保证或约定，也不能给对方产生责任。

14.4 完全的协议：本合同对本文的内容构成完全的协议。各方当事人确认，不会对本合同没有明示的任何保证、陈述不签订合同或按照协定的合同。

14.5 语言：本合同用【韩文】或【中文】或【英文】制作。合同翻译成其他语言的，优先适用【韩文】或【中文】或【英文】版。如有需要，可以制作本合同和其他文件的翻译本。

14.6 本合同一式【两】或【三】份，‘甲’各执一份，‘乙’各执一份，‘丙’各执一份，具有同等的法律效率。

【甲】代表 签署

【乙】代表签署

姓名

姓名

职位

职位

签名

签名

【 】已确认并理解

【 】已确认并理解

签名

签名


日期 日期


附录1

项目

项目的范围

项目的目的

【】提供的所有主要人力（包括责任研究员）

【】提供的所有主要人力（包括公司监督人）

各方当事人提供的正式员工或临时员工人数

参加本项目的学生

项目管理

做项目经理的人

项目经理的责任

项目会议（频率、场所以及各当事人的代表）


提交关于提供外部捐助的团体的情报和报告


请求外部捐款

由各方当事人提供的设备

由各方当事人提供的设备（为对方的使用提供的，该装备为对方捐赠或租赁到本项目结束时）

履行项目的场所

【】要提供的所有‘背景’（包括文件）

【】要提供的所有‘背景’（包括文件）

一方要由第三方获得的所有‘背景’（包括文件）

预想的结果或‘成果’

应由各方当事人履行的课题（包括对主要阶段的期限）

附录2

财政捐款

【】向【】要之粗的财政捐款的种类、金额、各时期支付额等的具体事项如下。

| | 第一年 | 第二年 |
|-----------|------------|------------|
| 工资 | RMB | RMB |
| 间接费 | RMB | RMB |
| 消耗品 | RMB | RMB |
| 装备（按项目） | RMB | RMB |
| 合计 | RMB | RMB |

附录3

秘密管理规约

1. 任命秘密管理负责人
2. 秘密管理规定
3. 个人信息管理规定

附录4

秘密保护誓约书

誓约人

姓名：

国籍：

身份证号：

住所：

所属单位：

职位：

本人誓约；本人会遵守韩国或中华人民共和国的有关本项目的有关法律；诚实地履行本项目当中担任的任务；把通过本项目取得的各种机密信息只为本项目使用；不会超出允许的用途公开机密信息。

本人明确理解，如果本人通过任意使用、泄漏、无故转让、公开等的秘密泄露行为给本项目双方当事人及相关人员造成损害时承担民事、刑事上的法律责任。

【该誓约人确认并签名】

.....

签名.....

.....

日期.....

국제공동연구 계약서

[갑]

[을]

[병]

계약체결일: 20[]년 []월 []일

본 표준계약은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대학, 연구소 및 기업 등 과학 기술 연구 주체 간의 국제공동연구 관련 협약 체결의 편의를 도모하고, 양국의 우호 증진과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본 표준계약은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제작되지 않았으며, 특정 국제공동연구 협약 체결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하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에는 당사자가 직접 입력함으로써 표준계약서를 개별계약으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 이하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복수의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경우를 고려한 내용이므로, 양 당사자 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붉은색 부분을 삭제하고 사용하면 됩니다.

국제공동연구 계약서

본 계약은 공동으로 진행하는 연구 프로젝트에 있어서 아래 당사자 간의 우호 협력과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고 권리 귀속과 배분 등 중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갑]는 []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으며, []에 주소지를 둔다.

[을]는 []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으며, []에 주소지를 둔다.

[병]는 []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으며, []에 주소지를 둔다.

1. 정 의

1.1 본 계약서상 아래의 용어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
|-------|--|
| 본 계약서 | 본 국제 공동연구 협력 계약서 및 부록을 포함하여 당사자간의 협의로 수정, 변경되는 계약서를 포함한다. |
| 프로젝트 | 부록 1에 설명된 연구 프로그램이며, 수시로 개정될 수 있음 |
| 배 경 | 본 프로젝트에서의 활용을 위해 일방 당사자가 타방에게 본 계약의 전후로 제공한 정보, 기술, 노하우, 소프트웨어 그리고 자료 (공개 혹은 저장된 양식 혹은 매체에 관계 없이) 등 일체 |
| 성 과 | 본 프로젝트를 통해 (배경의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확인되거나, 실행되거나, 얻어진 모든 정보, 노하우, 결과, 발명, 소프트웨어 그리고 기타 지식재산권 일체 |
| 개 량 | 본 프로젝트의 성과를 활용하였으나 생성된 성과의 범위를 벗어나는 모든 발명, 정보, 노하우, 결과, 소프트웨어 그리고 기타 지식재산권 |
| 지식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서비스표권 포함), 저작권(데이터베이스 및 소프트웨어에 관한 권리 포함), 비밀정보, 노하우 등 일체의 무형적 재산권 |
| 노 하 우 |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비특허 기술정보 (발명, 발견, 구상, 방법, 모델, 연구개발 및 테스트 절차, 실험, 테스트 결과, 제조공정, 기법 및 사양, 품질관리 데이터, 분석, 보고서 및 제출물 포함) |

| | |
|--------|--|
| 비밀 정보 | 본 프로젝트에 사용하기 위해 일방 당사자가 타방에 공개한 배경, 성과 및 개량 등 지식재산권과 기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되는 정보 |
| 비밀보호법규 | 대한민국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중화인민공화국의 '반부정당경쟁법' 등 모든 비밀보호 관련 법률 지침 혹은 규정 및 이들의 개정안, 수정안 혹은 이를 대체하는 법률 |
| 재정적 기여 | 부록 2 에 명시된 회사에 의해 제공되는 재정적 기여 |
| 외부 출연 | 제3자가 제공하여 본 프로젝트에서 어느 당사자가 사용하게 되는 기금 혹은 보조금 |

- 1.1 본 계약에서 '서면'이라고 언급된 것에는 이메일이 포함된다.
- 1.2 본 계약상의 '포함', '포함한다', '특히' 혹은 이와 유사한 단어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며, 해당 표현의 설명, 정의, 구절 혹은 표현을 제한하지 않는다.
- 1.3 본 계약서 상에 명시된 시간, 일자 그리고 기간이 모두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기한[이다]. 혹은 [아니다]

2. 프로젝트

- 2.1 [본 프로젝트]는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장소]에서 [책임연구원] 혹은 [회사 감독자]의 지시와 감독하에 진행된다. 본 프로젝트의 상세한 과제 내용은 부록 1에 규정한다. [프로젝트 시작 이후에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시작일 당시 혹은 이후의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진행된 연구에 소급적으로 적용된다.]
- 2.1 본 계약의 당사자는 부록 1에 따라 할당된 과제를 이행하며 부록 2에서 책임으로 지정된 인력, 자료, 시설 그리고 장비를 제공한다.
- 2.2 각 당사자는 부록 1의 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규정적 그리고 윤리적 자격, 승인 그리고 인가를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한다.
- 2.3 각 당사자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직원과 학생 등이 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이행되는 모든 연구, 개발에 규칙을 준수하며, 프로젝트의 수행 과정에서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을 작성하며, 부록 3의 비밀관리 규약을 준수한다.

- 2.4 각 당사자는 부록 1에 따라서 프로젝트 이행을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이지만, 어느 당사자도 연구가 특정 결과로 이어지거나,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 2.5 []는 []에게 프로젝트의 진행상황을 요약한 [월별] 혹은 [분기별] 혹은 [연례] 보고서와 모든 성과의 사본을 제공한다.
- 2.6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정관에 따른 완전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본 계약 체결과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관 혹은 법률에 의해 요구된 모든 인가, 허가, 승인 그리고 면허를 획득하였음을 보장한다.
- 2.7 각 당사자는 직접 혹은 자신의 직원이 상대 당사자들에 의해 소유, 통제 혹은 사용되는 장소에서 연구를 하거나 방문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소유, 통제 혹은 사용하거나 시설을 제공하는 당사자가 통제한 환경보호 정책, 보안과 안전보건 정책, 규정 그리고 절차를 준수함을 보장한다. 각 당사자는 인지한 보건안전관련 위험성을 최대한 신속히 다른 당사자들에게 통지한다.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 중 부상 혹은 재산상의 손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상 혹은 사고를 즉시 다른 당사자들에게 통지한다.
3. 재정적 기여, 외부 출연 및 결제
- 3.1 [갑]은 인보이스 수령일로부터 [30] 혹은 [60]일 이내에 부록 2에 따라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적 기여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을]은 프로젝트 지출에 관한 완전하고도 정확한 계정을 관리하고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 3.1 본 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모든 금액은 [KRW] 혹은 [RMB]로 지급되며 모든 금액에는 해당 국가의 법에 의하여 지급하게 되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 혹은 [있지 않다].
- 3.2 [갑]이 기한 내에 결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을]은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연 [이자율 입력]%의 일일 단위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 3.3 [부록 2에 정해진 사항을 제외하고] 각 당사자는 재정 기여금 혹은 외부 출연금을 사용하여 자신이 혹은 자신을 위해 구매되거나 제작된 모든 장비를 소유한다.
- 3.4 프로젝트에 외부 출연이 제공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외부 출연 조건을 준수한다. 특히,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외부 출연 후원자에 의해 요구된 프로젝트 보고서 제공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4. 지식재산권의 사용과 활용

- 4.1 본 계약은 '배경'에 대한 지식재산권 혹은 '성과가 아닌' 기타 기술, 설계, 연구, 발명, 소프트웨어, 데이터, 기법, 노하우, 혹은 자료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프로젝트에 기여된 '배경'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이를 프로젝트에 제공한 당사자(혹은 라이선서)의 재산으로 유지된다. 본 계약을 통해 명확히 지식재산권이 수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서의 내용은 지식재산권의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수여를 구성하지 않는다.
- 4.2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다른 목적이 아닌 프로젝트 이행만을 위해 '배경'을 사용하기 위한 로열티가 없는 비독점적 라이선스를 수여한다. 상대방의 '배경'을 본 계약 외 제3자가 사용하도록 하는 서브 라이선스를 줄 수는 없다.
- 4.3 성과를 낸 []는 해당 '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가지며 독자적 판단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성과'에 대한 특허출원 등을 하여 권리를 획득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의심된 혹은 실질적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혹은

- 4.3 [], [], [] 공동으로 '성과'를 냈으며, 해당 '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 형성에 대한 각 기여분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각 당사자들이 기여한 비율에 따라 공동소유 한다(기여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균등한 비율로 공동소유 한다.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해 공동소유 지분을 정할 수 있다). 소유자들은 균등한 비율의 공동 비용 부담으로 '성과'에 대한 특허출원 등을 하여 권리를 획득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의심된 혹은 실질적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성과에 대한 모든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자들은, 다른 공동 소유자의 권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이 독점적 소유자인 것과 같이 해당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다.

- 4.4 각 당사자는 특허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성과'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즉시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며, 해당 '성과'의 사본을 제출한다.

4.5 각 당사자는 학생이나 하청업체와 같은 제3자를 고용하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우, 이러한 제3자를 고용한 당사자는 해당 제3자가 ‘성과’에 대하여 별도의 지식재산권을 가지지 않음을 보증한다. 각 당사자는 대한민국 발명진흥법 혹은 중화인민공화국 관련법령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게 해서는 안 된다.

4.6 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소유하는 []은 상대방에게 프로젝트 해당 지역에서 ‘성과’에 포함된 지식재산권을 사용하기 위한 로열티가 [있는] 혹은 [없는], [비]독점적 라이선스를 [수여한다] 혹은 [수여하지 않는다]. []은 프로젝트 이행을 위해 ‘성과’를 사용하도록 서브 라이선스를 허용할 수 [있다] 혹은 [없다].

4.7 각 당사자 및 직원, 하청업체, 학생 등 프로젝트 ‘성과’를 이용할 적법한 권리가 있는 자는, ‘성과’를 이용하여 ‘성과’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개량’을 창조할 수 있으며, ‘개량’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개량’의 창작자에게 권리가 귀속된다.

4.8 본 계약의 중국 측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한국 측 관련자를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및 “전리 실시허가계약 등록방법”에 따라 중국 국가 지식재산권국(SIPO)에 사용허가 계약 등록절차 및 [전용 또는 통상] 실시권 설정등록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한다. 한국 측 당사자도 특허권 등의 [전용 또는 통상] 실시권 설정, 등록이 필요한 경우 중국 측 관련자를 위하여 대한민국 특허청(KIPO)에 [전용 또는 통상] 실시권 설정, 등록 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한다.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해 협조해야 한다.

5. 학술적 사용과 간행물

5.1 []에게 발표의 세부적 의도를 통지하고 5.2조에 따른 비밀 통지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 []의 모든 직원 혹은 학생은 (프로젝트로의 참여 여부에 관계 없이) 다음을 할 수 있다.

5.1.1 대학 세미나, 개별지도 그리고 강의에서 프로젝트의 일부로 이행된 연구에 대하여 논의한다; 그리고

5.1.2 회사의 배경 (회사의 비밀정보인 경우 제외) 혹은 모든 성과 및 개량을 학술적 목적으로 발표한다.

5.2 학술적 목적의 발표를 원하는 자는 []에게 서면 발표를 위한 제출 일자로부터 최소 [30] 혹은 [60]일 전에 해당 “배경” 및 “성과”에 대한 상세내용을 제출한다. []는 상기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서면의 통지를 함으로써 (비밀 통지): 자신이 특허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연 혹은 비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간행물의 수정 혹은 보호에 대한 온당한 의견에 대하여 비밀통지로부터 [숫자 기입] 개월 간 제안된 발표를 지연할 것을 요구한다. []는 발표가 제안된 자료의 수령으로부터 [15] 혹은 [30] 일 이내에 비밀통지를 해야 한다. 비밀통지가 해당 기간 내에 수령되지 않은 경우, 제안된 발표가 이행된다. []가 이 기간 내에 비밀통지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학술적 목적의 발표를 원하는 자는 제안된 발표를 진행할 수 있다.

6. 비밀 보호

6.1 양 당사자는 [프로젝트 기간 중 혹은 프로젝트 기간 종료로부터 [3] 혹은 [5] 혹은 [7] 혹은 [10] 년간], 상대방의 “비밀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본 프로젝트 진행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6.2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당사자는 “배경”, “성과” 혹은 다른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고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6.2.1 상대방으로부터의 정보를 수령하기 전에 획득하였으며, 상대방에게 다른 비밀 유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6.2.2 본 계약 혹은 다른 규정에 위반 없이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6.2.3 공개가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어떠한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제3자로부터 획득하였다;

6.2.4 공개자가 독립적으로 개발하였다;

6.2.5 법률과 규정의 요건에 따라 공개되었으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공개를 요구 받은 당사자가 공개의 요구로부터 온당한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요구된 공개와 공개 대상인 정보를 통지하였다; 혹은

6.2.6 상대방의 권한을 가진 대표자에 의해 서면으로 공개가 승인되었다.

6.2.7. 본 규정에 따라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알리는 경우에도, 반드시 상대방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6.3 []가 비밀정보가 아니며 []에 의해 소유되거나 라이선싱 된 ‘성과’, 혹은 비밀이거나 제3자에게 공개가 금지된 정보를 5.2조의 절차 준수와 해당 조항에 명시된 기한 내 비밀 통지 수령 없이 발표하는 것은 비밀 유지에 대한 의무 위반을 구성하지 않는다.

6.4 양당사자는 본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6.4.1 각 당사자는 해당 개인 정보에 대한 데이터 관리자가 된다;

6.4.2 각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라, 대학들에 의해 서면으로 협의된 목적만을 위해 그리고 프로젝트 진행만을 위해 개인정보를 취급한다;

6.4.3 각 당사자는 허가되지 않은 혹은 불법적 개인정보 취급 그리고 우발적 개인정보의 손실, 파기 혹은 손해에 대비한 모든 적절한 기술적 그리고 체계적 대책을 마련한다;

6.4.4 각 당사자는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접근 혹은 참여하는 자신의 직원, 하청업자, 담당자 그리고 에이전트의 신뢰성을 보장한다;

6.4.5 각 당사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허용되지 않은 혹은 불법적 취급 혹은 우발적 손실이나 파기 혹은 손해 혹은 해당 개인정보와 관련된 데이터보호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한다;

6.5 [] 혹은 []는 자신의 직원, 학생, 하청업체 등 프로젝트 관련자들이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것임을 보증하며, 부록 3과 같이 비밀관리 규약을 제정하고, 관련자들로부터 부록 4와 같이 비밀보호 서약서 등 비밀보호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받는다.

6.6 일방 당사자가 본 조항을 위반하여 비밀보호에 실패한 경우, 이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7. 기술의 수출입

본 계약의 중국 측 당사자는 상대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기술수출입 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른 기술수출입 허가 절차 및 기술 수출입 계약의 등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한국 측 당사자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의 수출입 제한이 있으면 상대방을 위하여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8. 책임의 한도

8.1 양 당사자는 자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자신의 직원 [혹은 학생 등]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제공된 자문이나 정보 등이 제3자 권리의 침해를 구성하거나 유발하지 않음을 다른 당사자들에게 진술하거나 보장[한다] 혹은 [하지 않는다].

8.2 양 당사자는 자신과 자신의 고용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당사자가 사전에 상대방에 고지하여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3 본 계약 위반, 태만 혹은 본 계약의 내용 이행, 프로젝트 그리고 '성과'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금 원] 혹은 [본 계약에 따라 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넘지 않는다.

9. 불가항력

9.1 불가항력의 상황이 발생하고, 일방의 본 계약상 의무이행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이는 본 계약의 위반을 구성하지 않는다.

9.2 불가항력의 상황이 발생하면,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신속하게 서면 통지해야 하고,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불가항력의 상황이 발행하고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9.3 불가항력의 상황이 발생하면, 각 당사자는 즉시 상대방과 상호 협의를 통해 공평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하고 불가항력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의무 이행의 지연이 [3] 혹은 [6] 개월을 초과할 경우,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로 즉시 본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10. 종료

10.1 다음과 같은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을 즉시 종료할 수 있다:

10.1.1 [10.2조에 따라,]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으며 (구제책을 이행할 능력이 있는 경우) 위반사항을 명시하고 구제조치를 요구하는 서면 통지의 수령으로부터 [30] 혹은 [60] 혹은 [90]일 이내에 위반사항을 구제하지 않는다; 혹은

10.1.2 상대방이 파산하거나, 해산이 명령되거나 그에 대한 결의안이 통과되거나 (자발적인 부채에 의한 합병 혹은 재편 제외), 혹은 상대방의 자산 전체 혹은 일부에 대하여 관재인 혹은 재산관리인이 임명되거나, 상대방이 자신의 채권자와 채무변제계약을 이행한다.

10.2 본 계약이 종료하더라도, 5, 6, 7, 8, 10.2, 10.3, 11 그리고 13조는 프로젝트 기간의 만료 혹은 본 계약의 종료 후에도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

10.3 본 계약의 종료 시,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종료 이전에 이행된 모든 연구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가 모든 재정 기여금을 지급하였고 프로젝트 혹은 본 계약의 종료 당시, []가 의도된 목적을 위해 해당 기여금 전체를 소진하지 않은 경우, []은 사용되지 않은 기여금을 상환한다.

11. 법률 준수

양 당사자는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및 해당지역의 모든 법률, 규칙 및 각종 규정을 준수하며, 적법하게 과학기술의 공동연구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만약,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부당한 재정적 혹은 기타 이익에 대한 요청 혹은 요구를 받는다면 이를 즉시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12. 통지

본 계약에 따른 모든 통지는 [한국어] 혹은 [중국어] 혹은 [영어]로 서면 작성되며, 아래 좌측열에 명시된 방식을 통해 상대방 혹은 양당사자에게 인도되며, 우측열에 명시된 일자에 수령된 것으로 간주된다.

인도방식

직접 전달 혹은 택배
우편
이메일

간주된 수령일자

수령증에 서명한 때
수령증에 서명한 때
이메일 수신확인이 된 때

모든 통지를 받게 되는 당사자의 주된 연락 담당자는 아래와 같다.

[갑]:

성명:

주소:

이메일 주소:

[을]:

성명:

주소:

이메일 주소:

13. 분쟁의 해결

13.1 준거법: 본 계약 혹은 '성과'와 관련된 모든 분쟁 혹은 소송 (비계약적 분쟁 혹은 소송 포함)은 [중화인민공화국] 혹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이행되고 해결된다.

13.2 관할권: 일방이 특정 관할권에서 자신의 지식재산권 혹은 비밀 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혹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원은 본 계약, 그의 내용 그리고 구성에 관한 분쟁과 소송을 (비계약적 분쟁 혹은 소송 포함) 해결할 [비]독점적 관할권을 가진다.

혹은

13.2 본 협의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혹은 본 협의와 관련된 분쟁은 쌍방의 우호적인 협상으로 해결한다. 협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어느 일방이든 [홍콩 국제중재센터] 혹은 [중국 무역중재위원회] 혹은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는 중재 신청시의 유효한 중재규칙에 의하여 진행된다. 중재지는 [홍콩] 혹은 [중국 북경] 혹은 [대한민국 서울]이고, 중재 언어는 [영어] 혹은 [중국어] 혹은 [한국어]이다⁷⁾.

13.3 지식재산권 혹은 비밀보호와 관련된 법적 절차: 본 계약의 어떠한 내용도 당사자가 지식재산권 혹은 비밀보호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사하기 위해 특정 관할권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14. 기타 사항

14.1 양도: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본 계약상의 의무나 권한 전체 혹은 그 일부로서 본 계약을 양도할 수 없다. 승인은 정당하게 획득되어야 한다.

14.2 권리 포기: 일방이 상대방의 의무를 강제하지 않거나 강제가 지연되며, 본 계약 상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그의 행사가 지연되는 경우, 이는 해당 의무 강제에 대한 권리 혹은 기타 권리의 포기로 간주되지 않는다.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의 특정 조항에 대한 권리 포기는 향후의 해당 조항에 대한 권리 포기를 구성하지 않는다.

14.3 에이전시 관계 금지: 본 계약 상의 어떤 내용도 양당사자 간의 파트너십이나 합작회사 혹은 원청인과 하청인 관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일방은 상대방을 대리하여 보증 혹은 약속을 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발생시킬 수 없다.

14.4 완전한 합의: 본 계약은 본문의 내용에 대한 양당사자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한다. 각 당사자는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어떠한 보증, 진술, 계약 혹은 협약에 따른 계약도 체결하지 않음을 인지한다.

14.5 언어: 본 계약은 [한국어], 혹은 [중국어], 혹은 [영어]로 작성된다. 본 계약이 다른 언어로 번역될 경우, [한국어] 혹은 [중국어] 혹은 [영어본]이 우선 적용된

7) 이와 같은 중재조항을 두게 된다면, 추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해결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다. 필요한 경우 본 계약 및 기타 서류의 번역본을 작성할 수 있다.

14.6 본 계약은 같은 양식 [2]혹은[3]부를 ‘갑’이 1부, ‘을’이 1부, ‘병’이 1부를 가지며, 모두 동등한 법률 효력이 있다.

[갑] 대표자 서명

성명
직함
서명

[을] 대표자 서명:

성명
직함
서명

[가 이를 확인하고 인지함

가 이를 확인하고 인지함

.....

.....

서명

서명

.....

.....

일자 일자

부 록 1

프로젝트

프로젝트의 범위

프로젝트의 목적

[]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주요 인력 (책임연구원 포함)

[]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주요 인력 (회사감독자 포함)

각 당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정규직 혹은 임시직 직원의 수

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학생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매니저로 활동하는 자

프로젝트 매니저의 책임

프로젝트 회의 (빈도, 장소 그리고 각 당사자의 대표)

외부 출연을 제공하는 단체에 대한 정보와 보고서 제출.

외부 출연 요청

각 당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설비

각 당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장비 (그리고 상대방의 사용을 위해 제공되는 경우, 해당 장비는 상대방에게 기증되거나 본 프로젝트 종료까지 임대된다).

프로젝트가 이행되는 장소

[]가 제공해야 할 모든 “배경” (서류 포함)

[]가 제공해야 할 모든 “배경” (서류 포함)

일방이 제3자로부터 획득해야 할 모든 “배경” (서류 포함)

예상 결과 혹은 “성과”

각 당사자에 의해 이행되어야 할 과제 (주요 단계에 대한 기한 포함)

부 록 2

재정 기여금

[]가 []에게 지급해야 할 재정 기여금의 종류, 금액, 시기별 지급액 등의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종류 | 1년차 | 2년차 |
|-----------|------------|------------|
| 임금 | KRW | KRW |
| 간접비 | KRW | KRW |
| 소모품 | KRW | KRW |
| 장비 [항목별] | KRW | KRW |
| 합계 | KRW | KRW |

부 록 3

비밀 관리 규약

1. 비밀관리 책임자의 임명
2. 비밀관리 규정
3. 개인정보 관리 규정

부 록 4

비밀보호 서약서

서 약 자

성 명
국 적
주 소
소 속 기 관
직 위

본인은 대한민국 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본 프로젝트 관련 법률을 준수하며 성실히 프로젝트에서 맡은 임무를 수행할 것이며,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취득한 각종 비밀정보를 본 프로젝트를 위해서만 사용할 것이며, 허락된 용도를 벗어나 비밀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본인이 비밀정보를 임의로 사용, 유출, 무단 양도, 공개 등의 비밀누설 행위를 하여 본 프로젝트의 양 당사자 및 관련자들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민 형사상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됨을 인지한다.

[위 서약자가 이를 확인하고 서명함]

.....

서명

.....

일자

<영문판>

RESEARCH COLLABORATION AGREEMENT

[Party 1]

[Party 2]

[Party 3]

Executed date: 20[] [Month] [Date]

This Agreement is prepared in order to promote the convenience in entering into the agreement between the science technology research entities of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ions and enterprises of Republic of Korea and People's Republic of China, promote the friendship between two countries, and strengthen the cooperation in science.

This Agreement has not been prepared for any specific project and this may not be suitable for a particular collaboration agreement.

- ※ Individual agreement can be prepared by each party to fill out the below highlighted part.
- ※ The below marked in red considers a case with a multiple number of parties. Please delete the marked in red part if the agreement involves two parties.

Research Collaboration Agreement

This Agreement intends to prescribe the important matters like promoting the corporation between the parties in carrying out the research collaboration, attributing and distributing the rights.

[Party 1] incorporated under the laws of [insert the country], whose registered office is at [insert the address]

[Party 2] incorporated under the laws of [insert the country], whose registered office is at [insert the address]

[Party 3] incorporated under the laws of [insert the country], whose registered office is at [insert the address]

1. Definition

1.1 In this Agreement, the following term has the meaning defined below:

| | |
|--------------|---|
| Agreement | Agreement includes the current research collaboration agreement and appendixes, as amended from time to time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
| Project | the program of work described in Schedule 1, as amended from time to time; |
| Background | information, techniques, know-how, software and materials (regardless of the form or medium in which they are disclosed or stored) which are provided by one party to the other for use in the Project (whether before or after the date of this Agreement), except any Result; |
| Results | all information, Know-how, results, inventions, software and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dentified or first reduced to practice or writing in the course of the Project; |
| Improvements | all information, Know-how, results, inventions, software and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using the Results |

| | |
|---|--|
| | of the current Project but falls outside the scope of Results |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all the intangible rights including patent, utility model, design, trademark (including service mark), copyrights (including database and software right), confidential information, know how, etc |
| Know-how | unpatented technical information (including inventions, discoveries, concepts, methodologies, models, research, development and testing procedures, the results of experiments, tests and trials, manufacturing processes, techniques and specifications, quality control data, analyses, reports and submissions) which is not in the public domain |
| Confidential Information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Background, Results and Improvements disclosed by a party to the other party for the use in the Project |
| Confidentiality Protection Legislations | all the confidentiality protections related legislations or regulations including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of Republic of Korea and Anti-Unfair Competition Law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amendments, changes or replacements |
| Financial Contribution | Financial Contribution attributed by a company listed in the Appendix 2 |
| External Funding | Fund or subsidy made by a third party which is used by any party of the current Project |

1.2 A reference in this Agreement to writing or written includes email.

- 1.3 Any words in this Agreement following the expressions including, include, in particular, or any similar expression, are merely illustrative and do not limit the sense of the words, description, definition, phrase or expression preceding those expressions.
- 1.4. Time shall [not] be of the essence for all times, dates and periods specified in this Agreement.

2. THE PROJECT

- 2.1 The Project shall be performed from [insert date] until [insert date] at [insert place] under the supervision of [insert the name of principal investigator] or [insert the name of company supervisor]. The detailed task of the current Project shall be in accordance with Appendix 1. [If the Agreement is entered into after the execution date, it will apply retrospectively to work carried out in relation to the Project on or after the Commencement Date.]
- 2.1 The party of the Agreement shall perform the task allocated in accordance with Appendix 1 and provide the responsible personnel, facilities and devices allotted in Appendix 2.
- 2.2 Each of the parties shall use allreasonable endeavors to obtain all regulatory and ethical licenses, consents and approvals necessary to allow it to carry out the tasks listed in Appendix 1.
- 2.3 Each of the parties shallensure that its employees and students involved in the Project have adequate qualification; observe the regulations related to all the research and developments performed in relation to the Project; keep complete and accurate records of the performance of Project; and observe the confidential agreement in Appendix 3

- 2.4 Each of the parties shall use all reasonable endeavors to carry out the tasks listed in Appendix 1 but does not guarantee a particular result of research or successful result of the Project.
- 2.5 [] shall provide [monthly] or [quarterly] or [yearly] summary of project progress and a copy of all results to [].
- 2.6 Each of the parties warrants to the other that it has full power and authority under its constitution, and has taken all necessary actions and obtained all authorizations, licenses, consents and approvals required under its constitution or by law, to allow it to enter into this Agreement and perform its obligations under it.
- 2.7 Each of the parties will ensure that the party and its employees who work on or visit any premises owned, controlled or occupied by the other party, or who use any facilities provided by the other party, comply with all environmental protection policies, security and health and safety policies, regulations and procedures made known to them by the other party from time to time. Each of the parties will notify the other as soon as practicable of any health and safety hazards of which it becomes aware. Each party will notify the other immediately if any incident which causes any personal injury or damage to property which could give rise to any personal injury or damage to property occurs in the performance of this Agreement.

3. FINANCIAL CONTRIBUTION, EXTERNAL FUNDING AND PAYMENT

- 3.1 [A] shall pay the Financial Contribution to [B] in accordance with Appendix 2 within [30] or [60]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B] shall keep complete and accurate accounts of its expenditure on the project.

3.2 The amounts payable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paid in [KRW] or [RMB] and are [inclusive] or [exclusive] of any tax prescribed by laws of applicable country.

3.3 In case [A] is fails to make a payment within a prescribed time, [B] may charge interest on the amount outstanding, on a daily basis at the rate of [insert interest rate] per cent per annum.

3.4 [Except as set out in Appendix 2] each party shall own all equipment purchased or constructed by it, or for it, using the Financial Contribution or any External Funding.

3.5 If the Project receives any External Funding, [insert the applicable party] shall comply with the terms of that External Funding. In particular, each of the parties shall provide the other with reasonable assistance in submitting any report of the Project required by any provider of External Funding.

4. USE AND EXPLOIT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4.1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the ownership of an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any Background or in any other technology, design, work, invention, software, data, technique, Know-how, or materials other than the Results.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any Background will remain the property of the party which contributes them to the Project (or its licensors). Except the rights expressly granted in this Agreement, this Agreement shall not expressly or impliedly grant any license to use an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4.2 Each Party shall grant the other party a royalty-free, non-exclusive license to use its Background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ut the Project, but for no other purpose. Neither party may grant a sub-license to any third party to use the Background of the other Party.

4.3 [insert the name of who achieved the Result] shall have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the Result and may obtain a patent right for its Result in accordance with its discretionary decision at its own expenses. Further, it shall take necessary protections of i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commencing litigation against alleged or actual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4.3 [], [], [] (jointly achieved the Result) If the contribution of each party in the Result is possibly distinguished, each party shall jointly own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he relevant Results according to the contribution (If the contribution of each party is not distinguished, each party shall jointly own with the same proportion of rights. The proportion could be decided based on the agreement of the party). The joint owners may obtain a patent right for the Result at the equal proportion of expenses. Further, it shall take necessary protections of i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commencing litigation against alleged or actual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joint owner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Result, except when it may impeditment the right of the other joint owner(s), may use the relevan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if he or she is the sole owner.

4.4 Each party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promptly after indentifying any Result that is deemed to be patentable with a copy of the Result.

4.5. Where any third party such as a student or contractor is involved in the Project, the party engaging the third party shall ensure that the third party does not own an individu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 of the Result. Each Party shall comply with the duty to pay the compensation for the employment invention in accordance with the Invention Promotion Act of Republic of Korea or relevant laws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shall not cause any damages to the other party for this matter.

- 4.6 [Party] who owns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Result shall **or** **[not]** grant the other party a royalty-free **or [royalty]**, non-exclusive **or [exclusive]** license to use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Result in the field of relevant Project. **[]** may **or [not]** grant a sub-license to use the Result in order to perform the Project.
- 4.7 Each Party, its employees, contractors, students or those who has a legitimate right to use the Result of Project may invent the new Improvement beyond the scope of the Result by using the Result. Except agreed otherwise,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Improvement shall remain with the inventor of the Improvement.
- 4.8 The Party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if necessary, may take necessary procedures in order to record the approval of use agreement and [exclusive or non-exclusive] license agreement with the Stat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SIPO) in accordance with Paten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ontrac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Measures for the filing of Patent Exploitation License Contracts for the Party of Republic of Korea. The Party of Republic of Korea, if necessary, may take necessary procedures in order to record the [exclusive or non-exclusive] license agreement with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PO) for the Party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Each of the parties shall use all reasonable endeavors to carry out the procedures for the other party.

5. ACADEMIC USE AND PUBLICATION

5.1 [] shall, provided details of the intention to publish have been given to [] and no Confidentiality Notice under clause 5.2 has been given:

5.1.1 discuss work undertaken as part of the Project in University seminars, tutorials and lectures; and

5.1.2 publish any Background of the Company (unless it is the Company's Confidential Information) or any of the Results.

5.2 Those who wish to make an academic use and publication shall provide [] with details of any Results and any Background in writing at least [30] or [60] days before the date of the proposed submission for publication. [] may, by giving a written notice, require the other party to delay the proposed publication for a maximum of [insert number] month(s) after receipt of the Confidentiality Notice if the delay is necessary in order to seek patent or similar protection. [] must give that confidentiality notice within [15] or [30] days from a date of receiving details of the proposed Publication. The publication shall be proceed with a confidentiality notice is not received within that period. [] does not receive a confidentiality notice within this period, those who wish to made the purpose of publication shall proceed the proposed publication.

6. CONFIDENTIALITY PROTECTION

6.1 A party shall not [either during the Project Period or for [3][5][7][10] years] after the end of the Project Period] disclose to any third party or use for any purpose except carrying out the Project, any of the other party's Confidential Information.

6.2 A party shall not be deemed to be in breach of any obligation to keep any Background, Results or other confidential information or

disclose it to any other party if any of following:

- 6.2.1 is known to the party making the disclosure before its receipt from the other party, and not already subject to any obligation of confidentiality to the other party;
 - 6.2.2 is or becomes publicly known without any breach of this Agreement;
 - 6.2.3 has been obtained from a third party in circumstances where the party making the disclosure has no reason to believe that there has been a breach of an obligation of confidentiality owed to the other party;
 - 6.2.4 has been independently developed by the party making the disclosure;
 - 6.2.5 is disclosed pursuant to the requirement of any law or regulation and the party required to make that disclosure has informed the other,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being required to make the disclosure, of the requirement to make the disclosure and the information required to be disclosed;
 - 6.2.6 is approved for release in writing by an authorised representative of the other party; or
 - 6.2.7 must inform the other party even if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is disclosed to a third party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clause.
- 6.3 The publication of which [] is not confidential information but owned or licensed Result owned by [], or confidential information or information prohibited to disclose to a third party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in clause 5.2 shall not mount to the breach of confidential obligation.
- 6.4 Both Parties shall follow the below when processing any personal information obtained in the process of Project:
- 6.4.1 Each Party shall be the data controller of relevant personal information;

- 6.4.2 Each Party shall process the personal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and in only accordance with the specific written instructions;
- 6.4.3 Each Party shall take all appropriate technical and organizational measures against unauthorized or unlawful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and against accidental loss or destruction of, or damage to, personal information;
- 6.4.4 Each Party shall ensure the reliability of its employees, contractors, officers and agents who may have access to, or be involved in,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 6.4.5 Each Party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other party if there has been any unauthorized or unlawful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or any accidental loss or destruction of, or damage to, personal information or any breach of the Data Protection Act in relation to personal information.
- 6.5 [] or [] shall ensure the confidentiality obligation by its employees, students or subcontractors involved in the Project and set out the rules managing confidentiality prescribed in Appendix 3 and obtain the documents required for the protection of confidentiality including the pledge of confidentiality prescribed in Appendix 4
- 6.6 If the protection of confidentiality is filed by the breach of this clause by one Party, the damages experienced by the other Party shall be compensated.

7. EXPORT AND IMPORT OF TECHNOLOGY

The Party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of this Agreement, if necessary shall take all the necessary procedures for the approval of technology export and import and the recordation of technology export and import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Foreign Trad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Regulation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Administration of Import and Export of Technologies for the other Party. The Party of Republic of Korea shall take necessary procedures if any restrictions on the technology export and import under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of Republic of Korea.

8. LIMITATION OF LIABILITY

8.1 Each of the parties shall [or not] warrant to the other that the party, its employees [or students, etc] who work on the Project or works or information provided in connection with the Project shall not constitute or result in any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third party.

8.2 Each of the parties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losses of the other parties caused by the Party of its employees. It may not be so if the Party takes all the reasonable actions to minimize the damages by providing a prior notice to the other Party.

8.3 The aggregate liability of each party to the other for all and any breaches of this Agreement, any negligence or arising in any other way out of the subject matter of this Agreement, the Project and the Results, will not exceed in total [the monies actually paid by the Company under this Agreement].

9. FORCE MAJEURE

9.1 If the force majeure occurs and the performance by a party of it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it shall not cause the beach of this Agreement.

9.2 If the force majeure occurs, a party shall promptly provide a written notice to the other and shall prove that such force majeure has occurred

and be continued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of notice.

9.3 If the force majeure occurs, both parties shall immediately find the fair resolving solution by mutual agreement and endeavor its best to minimize the effect of the force majeure. However, if the delay in performance is more than [3] or [6] months, the o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with immediate effect by giving a written notice.

10. TERMINATION

10.1 Either party shall terminate this Agreement with immediate effect by giving notice to the other party if:

10.1.1 [subject to clause 10.2,] the other party is in breach of any provision of this Agreement and (if it is capable of remedy) the breach has not been remedied within [30]OR[60]OR[90] days after receipt of written notice specifying the breach and requiring its remedy; or

10.1.2 the other party becomes insolvent, or if an order is made or a resolution is passed for its winding up (except voluntarily for the purpose of solvent amalgamation or reconstruction), or if an administrator, administrative receiver or receiver is appointed over the whole or any part of the other party's assets, or if the other party makes any arrangement with its creditors.

10.2 After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the clauses, 5, 6, 7, 8, 10.2, 10.3, 11 and 12 shall survive the expiry of the Project Period of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in full force and effect.

10.3 On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both Parties shall make the full payment for all the researches performed prior to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If the Financial Contribution has been made by []

and the whole of that contribution has not, by the end of the Project Period or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been used for the purposes for which that Financial Contribution was provided, [] shall return the unused portion of that contribution.

11. COMPLIANCE OF LAW

Each of the parties shall comply with all applicable laws, regulations and codes of Republic of Korea,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all other relevant territory and cooperate for the legitimate research collabo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parties shall promptly report to the other party any request or demand for undue financial or other advantage of any kind received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12. NOTICE

Any notice to be given under this Agreement must be in [Korean] or [Chinese] or [English] and in writing, may be delivered to the other party or parties by any of the methods set out in the left hand column below, and will be deemed to be received on the corresponding day set out in the right hand column:

| Method of service | Deemed day of receipt |
|--------------------|--|
| By hand or courier | When sign the receipt |
| By mail | When sign the receipt |
| By email | When the receipt of email is confirmed |

The parties for the receipt of notices are as follows:

| [A] | [B] |
|----------------|----------------|
| Name: | Name: |
| Address: | Address: |
| Email address: | Email address: |

13. DISPUTE RESOLUTION

13.1 Governing law: This Agreement or any dispute or claim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Result (including non-contractual disputes or claims) are governed by, and are to be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People's Republic of China]OR[the Republic of Korea].

13.2 Jurisdiction: except that either party may bring proceedings in relation to the protection of i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Confidential Information, [Republic of Korea] or [People's Republic of China] shall have [non]exclusive jurisdiction to settle any dispute or claim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or its subject matter or formation (including non-contractual disputes or claims).

OR

13.2 Both Parties shall amicably discuss any dispute or claim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Agreement. If the negotiation cannot be achieved, any of party may seek an arbitration at [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or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or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The arbitration shall be carried out by the valid arbitration rules at the time of seeking arbitration. The venues shall be [Hong Kong] or [Beijing] or [Seoul]. The language of arbitration shall be [English] or [Chinese] or [Korean]다.

13.3 Proceedings relating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Confidential Information: Nothing in this Agreement will prevent either party from bringing an action in any jurisdiction in order to protect or enforce i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its rights in respect of Confidential Information.

14. GENERAL

14.1 Assignment: Neither party may assign or transfer this Agreement as a whole, or any of its rights or obligations under it, without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other party. The consent should be reasonably obtained.

- 14.2 Waiver of rights: If a party fails to enforce, or delays in enforcing, an obligation of the other party, or fails to exercise, or delays in exercising, a right under this Agreement, that failure or delay will not affect its right to enforce that obligation or constitute a waiver of that right. Any waiver of any provision of this Agreement will not, unless expressly stated to the contrary, constitute a waiver of that provision on a future occasion.
- 14.3 No agency: Nothing in this Agreement creates any partnership or joint venture between the parties, 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of principal and agent. Neither party has any authority to make any representation or commitment, or to incur any liability, on behalf of the other
- 14.4 Entire agreement: This Agreement constitutes the entir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relating to its subject matter. Each party acknowledges that it has not entered into this Agreement on the basis of any warranty, representation, statement, agreement or undertaking except those expressly set out in this Agreement.
- 14.5 Language: This Agreement shall be prepared in [Korean] or [Chinese] or [English]. If this Agreement is translated into any other language, [Korean] or [Chinese] or [English] shall prevail. If necessary, translation of this Agreement and other documents can be prepared.
- 14.6 This Agreement shall be executed in [2] or [3] counterparts and each copy shall have the same legal effect and be kept by [] [] [].

.....

Signature

Signature

Title

Title

Name

Name

.....

Date

Date]

Appendix 1

Project

Scope of the Project

Purpose of the Project

Any Key Personnel to be provided by [] (including the Principal Investigator)

Any Key Personnel to be provided by [] (including the Company's Supervisor (if any))

Numbers of other full and part time staff to be provided by each party

Students participating in the Project

Project Management

Personnel acting as overall project manager

Responsibilities of project manager

Project meeting (frequency, location and representation of each party)

provision of information and reports to any body providing External Funding

claiming External Funding

Facilities to be provided by each party

Equipment to be provided by each party (and whether, if provided for use by the other, it is donated to the other or is on loan until the end of the

Project).

Where the Project is to be carried out

Any Background (including materials) provided by []

Any Background (including materials) provided by []

Any Background (including materials) which is to be obtained by either party from a third party

Expected result of Result

The task carried out by each party (including the deadline for each major stage)

Appendix 2

Financial Contribution

The financial contribution which shall be paid by [] to [] sets out as below type, amount and time

| | First year | Second year |
|-----------------------|------------|-------------|
| Salary | KRW | KRW |
| Overheads | KRW | KRW |
| Consumables | KRW | KRW |
| Equipments [itemize] | KRW | KRW |
| Total | KRW | KRW |

Appendix 3

Rules managing confidentiality

1. Appointment of responsible personnel managing confidentiality
2. Rules managing confidentiality
3. Rules managing personal information

Appendix 4

Pledge of confidentiality

Pledger

Name

Nationality

Address

Employment

Title

I pledged to comply the relevant laws of Republic of Korea or People's Republic of China related to the current Project and sincerely carry out the duty of the Project; shall use the obtained confidential information related to the Project only for the purpose of the current Project; and shall not disclose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outside the authorized use.

I acknowledge that I am responsible in both civil and criminal for the damages to the parties of the Project and relevant personnel by the breach of confidence including the unauthorized use, discharge, assignment, disclosure and etc.

[the above pledge confirms and signs it]

.....
Signature

.....
Date

IV. 국제공동연구 협력 의향서(MOU)

국제공동연구협약 위한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하기에 앞서서 당사자가 상호 전반적인 협력의사를 타진하고 공동연구 전반에 관한 큰 그림을 함께 그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국제공동연구에 관한 협력의 초기단계에 있어서 당사자 간에 상호 최소한의 구속력을 부여하면서 합의된 사항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국제공동연구 협력 의향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작성할 수 있다.

협력 의향서는 일반적으로 매우 간단한 규정을 위주로 심플하게 작성되므로 협력 의향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을 위주로 표준계약서 형태로 작성하여 보았다. 다만, 협력 의향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각 당사자의 협력사항”은 프로젝트마다 다 달라서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바, **부록**으로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중문판〉

跨国科技合作 合作意向书

〔甲〕

〔乙〕

签订日期：20〔 〕年〔 〕月〔 〕日

本合同范本为了谋求韩国与中华人民共和国的大学、研究所及企业等科学技术研究主体之间签订协约的便利、增进两国的友好关系、强化科学技术领域的协作而制定。

本合同范本并不为了特定的项目或者项目的形态制定，可能不适合于签订特定的跨国科技合作协约。

※ 对于以下划黄线的部分，当事人可以通过选择或填空的方式，把合同范本完成为个别的合同。

跨国科技合作
合作意向书
(Memorandum Of Understanding)

本意向书，在双方当事人进行有关跨国科技合作的【(项目名称)】之前，为了互相合作，由以下双方在 20 年 月 日（“生效日”）签订：

【甲】是根据【】的法律合法成立的，位于【(地址)】。

【乙】是根据【】的法律合法成立的，位于【(地址)】。

以下将‘甲’和‘乙’合成为双方’，单独称‘一方’或‘另一方’。

1. 目的

签订本意向书的目的在于，基于本意向书所述的有关跨国科技合作的相互合作内容，通过战略性相互合作，以书面形式确认为开扩、实现并扩大潜在工作机会的相互合作意思。

2. 基本原则

双方通过【(项目名称)】为创造相互共同利益协作。

3. 诚信

双方基于信义，忠实于履行协议内容。

4. 当事人之间合作事项

双方当事人为达成共同的目标并在跨国科技研究时的合作，应履行‘附录’规定的各方当事人的合作事项。

5. 有效期间

本意向书的有效期间为自当事人签字并盖章后的【】年。

6. 保密

双方把相互交流的有本意向书的资料及信息只为达成本意向书规定的工作目的使用，不将把这些泄露或披露给第三方

7. 费用

当事人在有效期间内消费的有本意向书的各种费用由各方当事人承担，另一方对此不承担任何责任。

8. 变更

双方为了圆满履行相互业务合作，有需要时按双方协议可以变更本意向书的内容。

9. 部分无效

本意向书任何部分的更改或无效，不影响意向书其他部分的效力。

10. 权利转让

未经对方书面同意，本意向书项下的所有权利义务不得转让。

11. 适用法律

本意向书，法律之间有冲突除外，按【中国法律】或者【韩国法律】解释。

12. 争议解决

12.1 双方当事人之间发生纠纷时，【韩国】或者【中国】法院具有【非】独占性管辖权解决有本意向书、其内容、构成的纠纷和诉讼。

或者

12.1 因本意向书而产生的或与本意向书有关的所有争议，由双方友好协商解决。协商不成，任何一方均可向[香港国际仲裁中心]或[中国贸易仲裁委员会]或[大喊商事仲裁院]申请仲裁。仲裁应根据申请仲裁时该仲裁委届时有效的仲裁规则进行。仲裁地点为[香港]或[中国北京]或[韩国首尔]，仲裁使用[英文]或[中文]或[韩文]。

12.2 在仲裁期间，除与争议事项直接有关的事项外，双方应继续履行本意向书。

13. 其他

13.1 本意向书自双方法定代表人或授权代表签字并盖章后在在生效日生效。

13.2 本意向书取代各方先前口头或书面就保密事宜签署或出具的相关文件，并将构成双方之间就保密事宜达成的整体协议。

13.3 本意向书以[英文]或[中文]或[韩文]签署。签署的意向书有歧义，以[英文版]或[中文版]或[韩文版]为优先。

13.4 本意向书一式两份，‘甲’方各执一份，‘乙’方各执一份，具有同等法律效力。

【甲】代表 签署

【乙】代表签署

姓名

姓名

职位

职位

签名

签名

【 】已确认并理解

【 】已确认并理解

签名

签名



日期

日期

附 录

1. 甲方合作事项
2. 乙方合作事项

국제공동연구 협력 의향서

[갑]

[을]

계약체결일: 20[]년 []월 []일

-

본 표준계약은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대학, 연구소 및 기업 등 과학 기술 연구 주체 간의 국제공동연구 관련 협약 체결의 편의를 도모하고, 양국의 우호 증진과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본 표준계약은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제작되지 않았으며, 특정 국제공동연구 협약 체결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하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에는 당사자가 직접 입력함으로써 표준계약서를 개별계약으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국제공동연구 협력 의향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본 협력 의향서는 양 당사자 간에 국제공동연구에 관한 [프로젝트의 명칭 입력]를 추진하기에 앞서 상호 협력하기 위해 [20]년 []월[]일 (효력 발생일) 체결한다.

[갑] 는 []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으며, []에 주소지를 둔다.

[을] 는 []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으며, []에 주소지를 둔다.

‘갑’과 ‘을’을 이하에 합쳐서 “쌍방”이라 하고, 단독으로는 “일방” 혹은 “상대방”이라 한다.

1. 목적

본 의향서에 기술된 국제공동연구에 관한 상호협력 내용을 기초로 한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상호 협력하고 잠재적인 사업기회를 발굴함과 동시에 이를 실현하고, 확대하기 위한 상호협력 의사를 명문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기본원칙

양사는 [프로젝트의 명칭 입력]을 통하여 상호 공동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3. 신의성실

양사는 신의를 바탕으로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한다.

4. 당사자의 협력사항

양 당사자는 공동의 목표 달성과 국제 공동연구에 있어서 상호 협력을 위해 ‘부록’에 규정된 당사자의 협력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5. 유효기간

본 의향서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날부터 []년으로 한다.

6. 비밀보호

양사는 본 의향서와 관련하여 상호 교류하는 자료 및 정보를 본 의향서가 정하는 사업 목적달성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

7. 비용

본 의향서와 관련하여 유효기간 동안 소요된 당사자의 제반 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며 상대방은 그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8. 의향서의 변경

양사는 상호 업무제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 하에 본 의향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9. 일부 무효

본 의향서의 어떠한 부분이 변경되거나 무효로 되더라도, 의향서의 기타 부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0. 권리의 양도

상대방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본 의향서 하의 모든 권리 의무는 양도되어서는 안 된다.

11. 준거법

본 의향서는, 법 규정 상호간 충돌이 없는 한,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혹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한다.

12. 분쟁의 해결

12.1 양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한민국] 혹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원은 본 의향서, 그의 내용 그리고 구성에 관한 분쟁과 소송을 해결할 [비]독점적 관할권을 가진다.

혹은

12.1 본 의향서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혹은 본 의향서와 관련된 분쟁은 쌍방의 우호적인 협상으로 해결한다. 협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어느 일방이든 [홍콩 국제중재센터] 혹은 [중국 무역중재위원회] 혹은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는 중재 신청서의 유효한 중재규칙에 의하여 진행된다. 중재지는 [홍콩] 혹은 [중국 북경] 혹은 [대한민국 서울]이고, 중재 언어는 [영어] 혹은 [중국어] 혹은 [한국어]이다⁸⁾.

12.2 중재 기간에 있어, 쟁의 사항과 직접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 쌍방은 계속 본 의향서를 이행하여야 한다.

13. 기타

13.1 본 의향서는 쌍방 법정 대표인 혹은 수권대표의 서명 날인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13.2 본 의향서에 앞서 각 당사자에 의하여 구두 혹은 서면으로 비밀 보호 서명을 하거나 관련문건을 작성한 경우, 양 당사자 간에 성립된 비밀보호 전체 의향서를 구성한다.

13.3 본 의향서는 [영문] 혹은 [중문] 혹은 [한글]로 서명한다. 서명된 의향서 간에 의미상 불일치가 있는 경우 [영문본] 혹은 [중문본] 혹은 [한글본]이 우선한다.

13.4 본 의향서는 같은 양식 2부를 ‘갑’이 1부 ‘을’이 다른 1부를 가지며, 모두 동등한 법률 효력이 있다.

8) 이와 같은 중재조항을 두게 된다면, 추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해결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갑] 대표자 서명

[을] 대표자 서명:

성명

성명

직함

직함

서명

서명

[가 이를 확인하고 인지함 가 이를 확인하고 인지함

.....

서명

서명

.....

일자

일자

부 록

1. 갑의 협력사항
2. 을의 협력사항

<영문판>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RESEARCH COLLABORATION

[Party 1]

[Party 2]

Executed date: 20[] [Month] [Date]

This Agreement is prepared in order to promote the convenience in entering into the agreement between the science technology research entities of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ions and enterprises of Republic of Korea and People's Republic of China, promote the friendship between two countries, and strengthen the cooperation in science.

This Agreement has not been prepared for any specific project and this may not be suitable for a particular collaboration agreement.

※ Individual agreement can be prepared by each party to fill out the below highlighted part.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hereafter referred as "MoU") is executed in order to promote the cooperation among the parties prior to entering into the research collaboratio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on [20] [Month] [Date] (Executed Date).

[Party 1] incorporated under the laws of [insert the country], whose registered office is at [insert the address]

[Party 2] incorporated under the laws of [insert the country], whose registered office is at [insert the address]

Party 1 and Party 2 are collectively referred as the "Parties" and individually referred as "a Party" or "the other Party".

1. PURPOSE

This MoU intends to stipulate the understanding of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in order to find, fulfill and expand the potential business opportunity through the strategic cooperation based on the understanding related to research collaboration described in this MoU.

2. BASIC PRINCIPLE

The Parties shall cooperate in order to achieve the mutual common interest through [insert the name of project].

3. GOOD FAITH

The Parties shall faithfully perform the agreed matters with the good faith.

4. COOPERATION OF PARTIES

The Parties shall perform the cooperation tasks listed in the Appendix in order to achieve the mutual aims and collaborate regarding the research collaboration.

5. TERM

The term of MoU shall be [insert the period] from the Effective Date.

6. CONFIDENTIALITY

The Parties shall strictly use the materials and information exchanged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business prescribed in this MoU and shall not disclose or provide them to any third party.

7. COSTS

Each Party shall be responsible for its own costs during the term of this MoU and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any costs incurred by the other Party.

8. AMENDMENTS OR CHANGES

The MoU can be amended or changed by an agreement of both Parties if it is required to effectively perform the mutual collaboration.

9. PARTIAL INVALIDITY

If any part of any provision of this MoU is void or changed,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MoU shall not be affected.

10. ASSIGNMENT

Neither party may assign or transfer any of its rights or obligations under this MoU without written consent of the other party.

11. GOVERNING LAW

This MoU, unless any conflict of laws, is governed by, and are to be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or [the Republic of Korea].

12. DISPUTE RESOLUTION

12.1 When a dispute arises between the Parties, [Republic of Korea] or [People's Republic of China] shall have [non]exclusive jurisdiction to settle any dispute or claim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MoU or its subject matter or formation.

OR

12.2 Both Parties shall amicably discuss any dispute or claim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MoU. If the negotiation cannot be achieved, any of party may seek an arbitration at [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or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or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The arbitration shall be carried out by the valid arbitration rules at the time of seeking arbitration. The venues shall be [Hong Kong] or [Beijing] or [Seoul]. The language of arbitration shall be [English] or [Chinese] or [Korean].

13. GENERAL

13.1 This MoU shall be effective upon the execution by the legal representative or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both Parties.

13.2 If the Parties have executed an oral or a written MoU agreement or prepared the relevant documents prior to entering into this MoU, the entire documents shall constitute the MoU between the Parties.

13.3 This MoU shall be prepared in [Korean] or [Chinese] or [English]. If this Agreement is translated into any other language, [Korean] or [Chinese] or [English] shall prevail.

13.4 This MoU shall be executed in 2 counterparts and each copy is kept by each party with the same legal effect.

.....

| | |
|-----------|-----------|
| Signature | Signature |
| Title | Title |
| Name | Name |

.....

| | |
|------|-------|
| Date | Date] |
|------|-------|

Appendix

1. Cooperation tasks by Party 1
2. Cooperation tasks by Party 2

V. 비밀보호 협약서(NDA)

국제공동연구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각 당사자들이 모여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각 당사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자료, 기술 등을 부득이하게 상대방에게 공개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문제가 없겠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일단 공개된 정보, 자료, 기술 등을 다시 회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그러한 정보, 자료, 기술 등을 자발적으로 상대방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한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그러한 정보, 자료, 기술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말도록 강제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결국 정보, 자료, 기술 등을 공개한 자만 일방적으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요한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는 대부분 비밀유지계약(non-disclosure agreement)을 체결한다. 즉, 협상 과정에서 공개되거나 제공되는 정보, 자료, 기술 등은 비밀정보에 해당되고, 이를 협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협상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들 간에 체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비밀정보를 안전하게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있고, 그만큼 협상이 성공에 이를 가능성도 더욱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위해 협상을 시작할 때에도 이러한 비밀유지계약을 반드시 체결할 필요가 있는데, 비밀유지계약은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표준계약서의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추후 반복하여 활용하기에 편리하다.

<중문판>

保 密 协 议

[甲]

[乙]

协议签订日期：20[]年 []月 []日

本合同范本为了谋求韩国与中华人民共和国的大学、研究所及企业等科学技术研究主体之间签订协议的便利、增进两国的友好关系、强化科学技术领域的协作而制定。

本合同范本并不为了特定的项目或者项目的形态制定，可能不适合于签订特定的跨国科技合作协议。

※ 对于以下划黄线的部分，当事人可以通过选择或填空的方式，把合同范本完成为个别的合同。

保密协议

本保密协议，在双方当事人签订跨国科技合作协议之前，为了对事前协议过程当中往来的信息保密，由以下双方在 20 年 月 日（“生效日”）签订：

【甲】是根据【】的法律合法成立的，位于【（地址）】。

【乙】是根据【】的法律合法成立的，位于【（地址）】。

以下将‘甲’和‘乙’合成为双方’，单独称‘一方’或‘另一方’。

双方拟参与和讨论【（项目名称）】项目（以下简称“项目”）。鉴于在该项目进行过程中，基于“项目”之目的，‘甲’和‘乙’均有意向对方披露一定的信息。

这些信息“披露方”（定义见下文）认为是应保密的，双方同意受本协议约定的条款和条件的约束。

1. 定义

1.1“保密信息”是指本协议签订前及签订后，双方之间披露的和与该“项目”有关的披露之时不为公众所知晓的所有信息和数据以及在“项目”实施过程中形成的相关信息。包括但不限于研究计划、程序、生产、新产品、服务、市场及销售、商业计划、商业秘密、商业模式、预算及财务报表、证照、发明、工艺、设计、图纸、专有技术、工程、流程、方式、硬件配置信息、客户和供应商名单、合同、成本和价格、定价政策、公司决议，人力资源信息等方面的所有商业信息、财务信息、技术信息及管理信息等。不论此类信息和数据是口头形式的还是书面形式的，如果是按机器可读的形式形成的，任何其他方式提供的都无妨。

1.2“载体”是指用于植入、记载或反映“保密信息”的任何和所有的仪器、模型、样品、原型、纸样文本、图纸、磁盘、磁带、光盘、储存器、芯片、单片机、CD-ROM、CD-ROM 驱动器、硬盘、软件等物体。

1.3 “披露方”是指‘甲’与‘乙’中向另一方提供“保密信息”的一方。

1.4 “接受方”是指‘甲’与‘乙’中接受另一方所提供“保密信息”的一方。

1.5 “关联方”在关于任何一方时，指任何直接或间接控制、受控于该方或与该方处于同样控制之下的任何其他人（包括法人、其它组织或个人）。所谓控制是指直接或间接拥有或控制该企业、公司或其他实体 50% 以上的表决股权。

2. 保密规定

2.1 “接受方”只能因“项目”之目的使用“披露方”的“保密信息”，除非“披露方”以书面形式指明其他目的。

2.2 “接受方”不得以任何方式将“保密信息”泄露或披露给任何第三方，除了那些因“项目”有必要知晓该“保密信息”的“接受方”股东、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雇员、咨询顾问、代理人（以下合称“接受方职员”）以外。但“关联方”和“接受方职员”需要与“接受方”进行雇佣协议或其他书面协议，协议的条件不得比本协议的保密义务的拘束力弱。

2.3 “接受方”应对“披露方”的“保密信息”采取保密措施，以避免被披露或被泄露给任何第三方，且保密的注意程度要按照与对“接受方”自身的“保密信息”同等的程度采取保密措施

3. 除外

3.1 在“披露方”为“项目”之目的向“接受方”披露“保密信息”之时，“保密信息”已经合法为公众所知，或在披露之后非由于“接受方”违反本协议或其他违法的原因而使公众知晓。

3.2 在“披露方”披露“保密信息”之时，“接受方”对从第三方处知悉的“保密信息”不负有保密义务。这时，该第三方不应该违法取得“保密信息”或者通过其他途径承担保密信息义务。

3.3“接受方”根据有关法律或者按照有管辖权的法院、仲裁机构、交易所或政府机构组织的要求可以披露“保密信息”。这时，“接受方”应立即向“披露方”发出书面通知告知披露要求的情况以便“披露方”有合理时间采取必要措施，且如“披露方”提出合理请求，应向“披露方”提供该保密信息系合法披露的法律意见书。“接受方”应用尽所有可行的法律补救手段且使该等披露控制在最小的范围内。

3.4 在“保密信息”被披露之前或之时，“接受方”未参考“保密信息”而独立开发出的信息，将不负保密义务。

3.5 “披露方”事前书面同意的，可以披露“保密信息”。

4. 免责

“披露方”不对其所披露的“保密信息”的真实、完整和准确性做出保证。

5. 保密期限

保密期限为自本协议生效之日起至保密信息依法为社会公众知悉之日止，该期限不因本项目实施完毕或本项目终止而终止。

或者

保密期限为自本协议生效之日起至[20]年 []月 []日止，该期限因本项目实施完毕或本项目终止而终止

6. “载体”的返还或销毁

在保密期限届满后或在本协议期限内任何时候有“披露方”的要求时，“接受方”应根据情况选择归还或销毁“保密信息”的所有“载体”及其相关拷贝。此类要求应由“披露方”以书面形式通知“接受方”。“接受方”须在接到“披露方”要求后的[]日内完成，并以书面形式向“接受方”保证其未留存任何“载体”及其相关拷贝。没有“披露方”的书面许可，“接受方”不得擅自丢弃或处理“保密信息”的任何“载体”及其相关拷贝。

7. 赔偿

如果“接受方”（包括其“接受方职员”）违反或怠于履行本协议下的任何规定、保证及陈述的，“接受方”应当赔偿“披露方”及其“关联方”因此而遭受的全部损失。

8. 知识产权的授予

“披露方”向“接受方”披露“保密信息”的，目前或今后不得被视为向“接受方”转让或授予任何与知识产权相关的权益

9. 义务和费用承担

为避免产生歧义，除双方另有约定外，本协议的签署及“披露方”根据本协议向“接受方”披露“保密信息”的行为均不得解释为双方之间建立了确定的合作关系或任何一方有义务与另一方建立任何形式的合作关系，包括但不限于授权、成立公司等，任何一方均无义务必须向另一方披露“保密信息”。根据“披露方”的判断，“披露方”可以随时终止“保密信息”的披露。双方均应当自行承担其因履行本协议而产生的所有费用。

10. 适用法律

本协议，法律之间有冲突除外，按[中国法律]或者[韩国法律]解释。

11. 争议解决

11.1 双方当事人之间发生纠纷时，[韩国]或者[中国]法院具有[非]独占性管辖权解决有关本协议、其内容、构成的纠纷和诉讼。

或者

11.1 因本协议而产生的或与本协议有关的所有争议，由双方友好协商解决。协商不成，任何一方均可向[香港国际仲裁中心]或[中国贸易仲裁委员会]或[大喊商事仲裁院]申请仲裁。仲裁应根据申请仲裁时该仲裁委届时有效的仲裁规则进行。仲裁地点为[香港]或[中国北京]或[韩国首尔]，仲裁使用[英文]或[

中文]或[韩文]。

11.2 在仲裁期间，除与争议事项直接有关的事项外，双方应继续履行本协议。

12. 部分无效

本协议任何部分的更改或无效，不影响协议其他部分的效力。

13. 权利转让

未经对方书面同意，本协议项下的所有权利义务不得转让。

14. 其它

14.1 本协议自双方法定代表人或授权代表签字并盖章后在在生效日生效。

14.2 本协议取代各方先前口头或书面就保密事宜签署或出具的相关文件，并将构成双方之间就保密事宜达成的整体协议。

14.3 本协议以[英文]或[中文]或[韩文]签署。签署的协议有歧义，以[英文版]或[中文版]或[韩文版]为优先。

14.4 本协议一式两份，‘甲’方各执一份，‘乙’方各执一份，具有同等法律效力。

【甲】代表 签署

姓名

职位

签名

【乙】代表签署

姓名

职位

签名

【甲】已确认并理解 【乙】已确认并理解

签名 签名

日期 日期

비밀 보호 협약서

[갑]

[을]

계약체결일: 20[] 년 [] 월 [] 일

본 표준계약은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대학, 연구소 및 기업 등 과학 기술 연구 주체 간의 국제공동연구 관련 협약 체결의 편의를 도모하고, 양국의 우호 증진과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본 표준계약은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제작되지 않았으며, 특정 국제공동연구 협약 체결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하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에는 당사자가 직접 입력함으로써 표준계약서를 개별 계약으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비밀보호 협의

1. (NON-DISCLOSURE AGREEMENT)

본 비밀보호 협의는 양 당사자 간에 국제공동연구에 관한 협의를 체결하기에 앞서 사전 협의 과정에서 주고 받는 정보에 관한 비밀보호를 위해 [20]년 []월[]일 (효력 발생일) 체결한다:

[갑] 는 []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으며, []에 주소지를 둔다.

[을] 는 []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으며, []에 주소지를 둔다.

‘갑’과 ‘을’을 이하에 합쳐서 “쌍방”이라 하고, 단독으로는 “일방” 혹은 “상대방”이라 한다.

쌍방이 참여하여 [프로젝트의 명칭 입력] 프로젝트를 의논한다(이하 ‘프로젝트’라 칭함).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의 목적에 기초하여, ‘갑’과 ‘을’이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

이와 같은 정보는 ‘제공자’(정의는 이하를 참조)가 비밀이라고 여기는 것이며, 쌍방은 본 협의 약정의 조건과 조항이 구속력이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1. 정의

1.1 ‘비밀정보’는 본 협의 체결 전과 체결 후, 쌍방간에 공개한 것과, 본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공개할 무렵 공중에 알려지지 않은 모든 정보와 데이터 및 ‘프로젝트’ 실시 과정 중 형성된 관련 정보를 의미한다. 모든 연구계획, 절차, 생산, 신상품, 서비스, 시장 및 판매, 상업계획, 상업비밀, 사업 유형, 예산 및 재무제표, 증명사진, 발명, 공예, 설계, 도면, 전유기술, 공정, 흐름도, 방식, 기계 설비 배치 정보, 고객과 공급상 명단, 계약, 원가와 가격, 가격정책, 회사결의, 인력자원 정보 등 해당 방면의 모든 상업 정보, 재무 정보, 기술정보 및 관리 정보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 같은 종류의 정보와 데이터는 구두, 서면으로 된 것을 막론하고 기계가 해독할 수 있도록 형성된 것이면 어떠한 방식으로 제공된 것이라도 무방하다.

1.2 ‘매체’는 측정기구, 견본, 샘플, 원형, 종이문건, 도면, 자기 디스크, 자기 테이프, 콤팩트 디스크, 메모리, 칩, 단편 기계, CD-ROM, CD-ROM 구동기, 하드 디스크, 소프트웨어 등 어떠한 비밀정보를 착상, 기록 혹은 반영하는 데 사용하는 모든 물체를 지칭한다.

- 1.3 ‘제공자’는 ‘값’과 ‘을’ 중 상대방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를 지칭한다.
- 1.4 ‘수령자’는 ‘값’과 ‘을’ 중 상대방이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수령하는 당사자를 지칭한다.
- 1.5 ‘관련자’는 어떠한 당사자 일방이 직접 혹은 간접으로 통제, 제어하는 해당 당사자 혹은 해당 당사자와 같은 통제하에 있는 어떠한 타인을 의미한다 (법인, 기타 조직, 혹은 개인을 포함한다). 여기서 말하는 통제라 함은, 해당 기업, 회사 혹은 기타 실체의 [50]% 이상의 지분 표결을 통제할 권리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가지는 것을 지칭한다.

2. 비밀보호 규정

- 2.1 ‘수령자’는, ‘제공자’가 서면 형식으로 기타 목적을 명시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오로지 ‘프로젝트’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 2.2 ‘수령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비밀정보’를, ‘프로젝트’ 때문에 필수적으로 ‘비밀정보’를 알아야 하는 ‘수령자’의 주주, 동사, 감사, 고급관리원, 종업원, 고문, 대리인(이하 ‘수령자 직원’이라 칭함) 등을 제외한, 어떠한 제3자에게 누설, 혹은 공표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자’ 및 ‘수령자 직원’은 ‘수령자’와 고용협의 혹은 기타 서면협의를 하여야 하는데, 협의의 조건은 본 협의의 비밀보호 의무의 구속력보다 약해서는 안 된다.
- 2.3 ‘수령자’는 ‘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해, 어떠한 제3자에 대해서도 누설, 공표되지 않도록 비밀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비밀보호의 주의 정도는 ‘수령자’ 자신의 ‘비밀정보’와 동등한 정도로 비밀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비밀보호의 예외

- 3.1 ‘제공자’가 ‘프로젝트’의 목적 때문에 ‘수령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할 때, ‘비밀정보’가 이미 합법적으로 대중에게 알려져 있거나, ‘수령자’가 본 협의에 위반하거나 기타 위법한 원인으로 공중에게 알려지게 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 3.2 ‘제공자’가 ‘비밀정보’를 제공할 때, ‘수령자’는 제3자 제공으로 알게 된 ‘비밀정보’에 대해서는 비밀보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때 제3자가 법에 위반하여 ‘비밀정보’를 취득하거나, 다른 경로로 비밀보호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야 한다.
- 3.3 ‘수령자’는 관련법률에 의하여 혹은 관할법원, 중재기구, 교역소 혹은 정부 기구조직이 요구하면 ‘비밀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때, ‘수령자’는 ‘제공자’에게 서면 통지로 공개가 요구되는 상황을 알려서 ‘제공자’가 합리적인 시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해야 하며, ‘제공자’의 합리적인 청구가 있으면, ‘제공자’에게 해당 ‘비밀정보’의 공개가 합법적이라는 법률의견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수령자’는 가능한 모든 법률 구제수단을 사용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통제해야 한다.
- 3.4 ‘비밀정보’가 공개되기 전 혹은 공개될 때, ‘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참고하지 않고 단독으로 개발한 정보는 비밀보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3.5 ‘제공자’가 사전에 서면 동의한 경우 ‘비밀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4. 면책

‘제공자’는 제공하는 ‘비밀정보’가 진실하고 완전하며 정확한 것임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5. 비밀보호 기간

비밀보호 기간은 본 협의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비밀정보’가 사회 공중에 합법적으로 알려지기 전까지 존속하며, 해당 기한은 본 ‘프로젝트’의 완성 혹은 본 ‘프로젝트’의 종료로 중지되지 않는다.

혹은

비밀보호 기간은 본 협의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20]년 []월 []일까지 존속하며, 해당 기한은 본 ‘프로젝트’의 완성 혹은 본 ‘프로젝트’의 종료로 중지된다.

6. ‘매체’의 반환 혹은 폐기

보호기간 만료 후 혹은 본 협의기간 내에 언제든지 ‘제공자’의 요구가 있을 때, ‘수령자’는 상황에 따라 ‘비밀정보’가 담긴 모든 ‘매체’ 및 관련 복사물을 반환할 것인지 혹은 폐기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이 같은 요구는 응당 ‘제공자’가 서면형식으로 ‘수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령자’는 반드시 ‘제공자’의 요구를 받은 후 []일 내에 완성해야 하고, ‘수령자’에게 서면 형식으로 어떠한 ‘매체’ 및 관련 복사물이 남아있지 않음을 보증하게 해야 한다. ‘제공자’의 서면허가 없이, ‘수령자’가 독단적으로 ‘비밀정보’의 어떠한 ‘매체’나 복사물을 버리거나 처리하면 안 된다.

7. 배상

‘수령자’(‘수령자 직원’를 포함)가 본 협의하의 어떠한 규정, 보장 혹은 진술을 위반하거나 이행을 태만히 하는 경우, ‘수령자’는 응당 ‘제공자’ 및 ‘관련자’에게 그로 인해 받은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8. 지식재산권의 수여

‘제공자’가 ‘수령자’에게 ‘비밀정보’를 공개한 것은 현재 그리고 이후에 ‘제공자’에게 어떠한 지식재산권 관련 권익을 양도하거나 수여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9. 의무 및 비용부담

쌍방 당사자의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의미 혼동을 피하기 위해, 본 협의의 서명 및 '제공자'가 본 협의에 근거하여 '수령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모두 쌍방 간에 합작관계를 확정하거나 혹은 어떠한 일방이 상대방과 어떠한 합작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는, 수권, 회사 설립 등, 어떠한 일방이 필수적으로 상대방에게 '비밀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경우를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제공자'의 판단에 근거하여, '제공자'는 수시로 '비밀정보'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쌍방 모두 본 협의의 이행으로 발생된 비용은 응당 스스로 부담한다.

10. 준거법

본 협의는, 법 규정 상호간 충돌이 없는 한,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혹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한다.

11. 분쟁해결

11.1 양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한민국] 혹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원은 본 협의, 그의 내용 그리고 구성에 관한 분쟁과 소송을 해결할 [비]독점적 관할권을 가진다.

혹은

11.1 본 협의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혹은 본 협의와 관련된 분쟁은 쌍방의 우호적인 협상으로 해결한다. 협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어느 일방이든 [홍콩 국제중재센터] 혹은 [중국 무역중재위원회] 혹은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는 중재 신청시의 유효한 중재규칙에 의하여 진행된다. 중재지는 [홍콩] 혹은 [중국 북경] 혹은 [대한민국 서울]이고, 중재 언어는 [영어] 혹은 [중국어] 혹은 [한국어]⁹⁾이다.

11.2 중재 기간에 있어, 쟁의 사항과 직접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 쌍방은 계속 본 협의를 이행하여야 한다.

9) 이와 같은 중재조항을 두게 된다면, 추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해결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12. 일부 무효

본 협의의 어떠한 부분이 변경되거나 무효로 되더라도, 협의의 기타 부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3. 권리의 양도

상대방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본 협의하의 모든 권리 의무는 양도되어서는 안 된다.

14. 기타

14.1 본 협의는 쌍방 법정 대표인 혹은 수권대표의 서명 날인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14.2 본 협의에 앞서 각 당사자에 의하여 구두 혹은 서면으로 비밀 보호 서명을 하거나 관련문건을 작성한 경우, 양 당사자 간에 성립된 비밀보호에 관한 전체 협의를 구성한다.

14.3 본 협의는 [영문] 혹은 [중문] 혹은 [한글]로 서명한다. 서명된 협약서 간에 의미상 불일치가 있는 경우 [영문본] 혹은 [중문본] 혹은 [한글본]이 우선한다.

14.4 본 협의는 같은 양식 2부를 ‘갑’이 1부 ‘을’이 다른 1부를 가지며, 모두 동등한 법률 효력이 있다.

[갑] 대표자 서명

[을] 대표자 서명:

성명

성명

직함

직함

서명

서명

[가 이를 확인하고 인지함 가 이를 확인하고 인지함

..... .

서명

서명

..... .

일자

일자

<영문판>

NON-DISCLOSURE AGREEMENT

[Party 1]

[Party 2]

Executed date: 20[] [Month] [Date]

This Agreement is prepared in order to promote the convenience in entering into the agreement between the science technology research entities of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ions and enterprises of Republic of Korea and People's Republic of China, promote the friendship between two countries, and strengthen the cooperation in science.

This Agreement has not been prepared for any specific project and this may not be suitable for a particular collaboration agreement.

- ※ Individual agreement can be prepared by each party to fill out the below highlighted part.

NON-DISCLOSURE AGREEMENT

This Non-Disclosure Agreement is executed in order to protect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exchanged during the discussion prior to entering into the research collaboratio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on [20] [Month] [Date] (Executed Date).

[Party 1] incorporated under the laws of [insert the country], whose registered office is at [insert the address]

[Party 2] incorporated under the laws of [insert the country], whose registered office is at [insert the address]

Party 1 and Party 2 are collectively referred as the "Parties" and individually referred as "a Party" or "the other Party".

Whereas, the Parties intend to discuss the [insert the name of project] project (here after referred "Project"). In the course and for the purpose of the Project, the Parties will disclose to each other certain information, which the Disclosing Party (as defined below) regards as confidential.

Now therefore, the Parties agree to be bound by the terms and conditions set forth herein:

1. DEFINITION

1.1 "Confidential Information" shall mean any and all business, financial, technical, management and any other information and data disclosed, prior to and after the execution hereof, between the Parties in connection with the Project, which is not known to the public, and the same generated in the process of implement thereof,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research plans, programs, manufacturing, new products, services, markets and sales, business plans, trade secrets, business models, budgets and financial statements, licensed documentation, inventions, technology, designs, drawings, know-how, projects,

processes, formulae, hardware configuration information, identities of customers and suppliers, contracts, costs and prices, pricing policies, company resolutions, human resources, whether disclosed orally, in writing, machine readable or any other manner, regardless of the Media (as defined below) on which such information and data is embedded, recorded or reflected.

- 1.2 "Media" shall mean any materials embedded, recorded or reflected Confidential Information,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instrument, models, samples, prototypes, written and printed documents, drawings, disks, tapes, CDs, storage devices, chips, Single-Chip Microcomputers, CD-ROMs, CD-ROM disk drives, hard disks, software and so on.
- 1.3 "Disclosing Party" shall mean either Party 1 or Party 2 who discloses to the other Confidential Information.
- 1.4 "Receiving Party" shall mean either Party 1 or Party 2 who receives Confidential Information.
- 1.5 "Affiliate" means, with respect to any Party, any other party (including legal person, other association or individual) that directly or indirectly controls, is controlled by, or is under common control with such Party, where control means ownership or control, direct or indirect, of more than **insert the number of percent** of the voting capital of such corporation, company or other entity. Thus, any such corporation, company or other entity shall be deemed as a related company of one of the Parties so long as such ownership or control exists.

2. CONFIDENTIALITY

- 2.1 The Receiving Party shall use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exclusively for the purpose of the Project, unless otherwise expressly agreed to in writing by the Disclosing Party.

2.2 The Receiving Party shall not distribute or disclose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in any way or form to any third party except the directors, supervisors, officers, employees, consultants, agents, representatives, and stakeholders of the Receiving Party's (hereinafter collectively referred to as to "Representatives") who reasonably need to know such Confidential Information for the purpose of the Project, subject to that the Representatives are bound to confidentiality either by their employment agreement or otherwise to an extent not less stringent than the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2.3 The Receiving Party shall refrain any Representatives from divulging, disclosing or communicating in any manner Confidential Information to any third party, directly or indirectly, or shall not grant permission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to be divulged, disclosed or communicated. Receiving Party shall hold responsible for any breach thereof by any Representatives to the Disclosing Party.

3. EXCEPTIONS TO THE CONFIDENTIAL OBLIGATIONS

3.1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is at the time of disclosure already in the public domain legally or becomes available to the public through no breach by the Receiving Party of this Agreement or otherwise violation of law.

3.2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becomes known to the Receiving Party from a third party other than the Disclosing Party on and before the date of the disclosure, subject to that such third party does not breach any confidential obligation regarding such Confidential Information.

3.3 The Receiving Party discloses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upon the request of law, or a competent court, arbitral tribunal, securities exchange or any governmental organization, provided that the Receiving Party will promptly notify the Disclosing Party in writing thereof as to provide the Disclosing Party a reasonable time period to take necessary

actions and submit legal opinion to certify the legality of such disclosure if so requested. The Receiving Party shall exhaust all available legal remedies and minimize such disclosure.

3.4 The information is independently developed by the Receiving Party without reference to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3.5 The disclosure is approved by a written consent by the Disclosing Party.

4. EXEMPTION

The Disclosing Party makes no warranties regarding the authenticity, completeness or accuracy of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5. TERM OF CONFIDENTIALITY

The term of Confidentiality shall commence from and on the Effective Date and continue to the time that Confidential Information is disclosed in the public domain legally, and shall not expire due to the completion or termination of the Project.

OR

The term of Confidentiality shall commence from and on the Effective Date till [Year] [Month] [Date] and expire due to the completion or termination of the Project.

6. RETURN OR DESTRUCTION OF THE MEDIA

The Receiving Party shall, upon the written request of the Disclosing Party, at the Receiving Party's sole discretion, either return to the Disclosing Party or destroy all the Media with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together with any related copies thereof. A written statement shall be issued by the Receiving Party certifying no Media or copies retained to the Disclosing

Party within [insert the number of working days] working days after the date of receiving the request. The RECEIVING PARTY shall not discard or dispose any Media or copies on its own.

7. INDEMNITY

If the Receiving Party (including its Representative), breaches any of the provisions, warranties and representations under this Agreement, the Receiving Party shall compensate or indemnify the Disclosing Party against any and all losses which may be suffered or incurred by the Disclosing Party and its Affiliate resulting from the breach.

8. NO RIGHT TO INTELLECTUAL PROPERTY

No right or license of any intellectual property that the Disclosing Party may now or hereafter own or control shall be deemed as having been granted to the Receiving Party upon the disclosure of the information by the Disclosing Party.

9. NO COMMITMENT AND COST

For avoidance of doubt,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execution hereof and/or disclosure of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by the Disclosing Party to the Receiving Party shall not be construed the establishment or the obligation of establishment of a definitive cooperation relationship,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uthorize, incorporate a company, and neither Party is obliged to disclose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to the other. The Disclosing Party may, at its sole discretion, terminate the disclosure. All costs incurred regarding the performance hereof shall be borne by the Party that incurs such costs.

10. GOVERNING LAW

This Agreement, unless any conflict of laws, is governed by, and are to be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or [the Republic of Korea].

11. DISPUTE RESOLUTION

11.1 When a dispute arises between the Parties, [Republic of Korea] or [People's Republic of China] shall have [non]exclusive jurisdiction to settle any dispute or claim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or its subject matter or formation.

OR

11.1 Both Parties shall amicably discuss any dispute or claim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Agreement. If the negotiation cannot be achieved, any of party may seek an arbitration at [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or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or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The arbitration shall be carried out by the valid arbitration rules at the time of seeking arbitration. The venues shall be [Hong Kong] or [Beijing] or [Seoul]. The language of arbitration shall be [English] or [Chinese] or [Korean].

11.2 In relation to the period of arbitration, except the issues and directly related matters, the Parties shall continuously perform the current Agreement.

12. PARTIAL INVALIDITY

If any part of any provision of this Agreement is void or changed,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not be affected.

13. ASSIGNMENT

Neither party may assign or transfer any of its rights or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without written consent of the other party.

14. GENERAL

14.1 This Agreement shall be effective upon the execution by the legal representative or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both Parties.

14.2 If the Parties have executed an oral or a written non-disclosure agreement or prepared the relevant documents prior to entering into this Agreement, the entire documents shall constitute the agreement related to the non-disclosure between the Parties.

14.3 This Agreement shall be prepared in [Korean] or [Chinese] or [English]. If this Agreement is translated into any other language, [Korean] or [Chinese] or [English] shall prevail.

14.4 This Agreement shall be executed in 2 counterparts and each copy is kept by each party with the same legal effect.

| | |
|-----------|-----------|
| | |
| Signature | Signature |
| Title | Title |
| Name | Name |
| □ | |
| Date | Date] |

VI. 국제공동연구 관련 용어의 해설

1. 지식재산권(知识产权)

한국 지식재산권에 대응하는 용어이다. 중국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지식산권이 라고 칭한다. 지식재산권은 전리권, 상표권과 같은 산업재산권 뿐만 아니라 저작권, 영업비밀, 반도체 배치설계권, 식물 품종 등에 대한 권리등을 포괄하는 무체 재산권이다.

2. 전리(专利)

중국에서는 발명뿐만 아니라 실용신안 및 디자인을 포함하는 다소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중국의 전리법(专利法)은 발명전리(发明专利) 뿐만 아니라 실용신안전리(实用新型专利), 외관설계전리(外观设计专利)를 같이 보호한다. 좁은 의미의 전리(专利)는 발명을 지칭하는 것으로, 상품, 방법 혹은 그 개선을 위해 제기한 새로운 기술방안을 지칭한다.

3. 실용신안(实用新型)

제품의 형태, 구조 또는 그 결합에 대해 제기한 실용적인 신기술방안을 의미한다.

4. 외관설계(外观设计专利)

제품의 형태, 도면 또는 그 결합, 그리고 컬러와 형태, 도안의 결합에 미적 감각을 부여하는 공업응용에 적합한 새로운 설계를 의미한다.

5. 판권(版权)

한국의 저작권을 의미한다. 중국에서는 판권(版权) 혹은 저작권(著作权)이라고도 한다.

6. 국가지식재산권국(国家知识产权局)

국가지식재산권국 산하의 전리국이 지식재산권 중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한국의 특허청과 유사한 기관으로 생각하면 된다. 다만, 한국의 특허청은 상표관련 업무도 담당하는데, 중국은 상표관련 업무는 아래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산하 상표국이 담당한다.

7.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国家工商管理总局)

공상행정관리총국 산하 상표국에서 상표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부정당경쟁국에서는 영업비밀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8. 전리 공유(专利共有)

중국 전리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전리출원권 혹은 전리권을 다수의 개인 혹은 단위(단체)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형태이다. 전리공유관계에서 권리행사에 관하여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한다. 약정이 없는 경우 공유자는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보통 허가 방식으로 타인에게 당해 전리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이점은 한국의 특허권 공유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다.

9. 기술개발계약(技术开发合同)

중국 계약법 제330조에 규정되어 있다. 기술개발계약은 당사자간에 신기술 신상품 신공예 또는 신재료 및 그 계통의 연구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다. 또한, 기술개발계약은 위탁개발계약과 합작개발계약을 포함한다.

10. 기술양도계약(技术转让合同)

중국 계약법 제342조에 규정되어 있다. 기술양도계약은 특허권양도·특허신청권양도·기술비밀양도·특허실시허가 계약을 포함한다.

11. 실시허가(实施许可)

지식재산권의 권리자가 타인에게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 다시 말해 라이선스를 허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에서는 실시허가를 보통실시허가, 배타 실시허가, 독점실시허가의 3종으로 구별한다.

12. 보통실시허가(普通实施许可)

보통실시허가 계약에 따르면, 라이선서와 라이선시 모두 동일한 지역과 시간 내에 해당 전리를 실시할 수 있고, 또한 라이선서는 제 3자에게 중첩적으로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통상실시권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13. 배타실시허가(排他实施许可)

배타실시허가는 라이선시에게 배타적 실시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즉, 라이선서 자신은 해당 전리에 대한 실시권이 있으나 제 3자에게 실시권을 부여하지 못한다. 배타실시 허가와 아래 독점실시 허가의 차이점은, 라이선서에게 실시권이 있는지 여부이다.

13. 독점실시허가(独占实施许可)

독점적 실시허락은 라이선서가 계약에서 약정한 시간과 지역 범위 내에서 라이선서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실시권을 배척하고 라이선시에게만 실시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전용실시권과 유사하다.

14. 등록

중국 법제도에서 등록을 의미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이다. 모두 한국말로로는 등록이라고 해석되는데, 중국 법률에서는 쓰임이 다르다.

| | |
|--------|---|
| 등록(登记) | ‘기술수출입계약 등록 관리 규칙’에서 사용되고 있다. 기술수출입 계약서를 중국 상무부 정부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하는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
| 등록(备案) | ‘전리 실시허가계약 등록방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실시허가 계약의 체결 후 중국 전리국에 등록하도록 하는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
| 등록(注册) | 상표 등 출원에 대해서 상표권 수여를 허락하여 등록 시킬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

16. 비밀보호(保护秘密)

중국 반부정당경쟁법 제10조에서 상업비밀이라 함은 공중에게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권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며, 실용성을 구비하고, 그 권리자가 비밀조치를 취한 기술정보와 경영정보라고 정의한다.

17. 비밀보호 규약(保密规约)

기관이나 단체 등 조직에서 비밀보호를 위해 제정하는 내부 규정을 의미한다. 비밀유지규정에는 비밀의 범위, 비밀 관리기구와 담당 직원, 비밀유

지 의무, 비밀 서류의 관리, 폐기된 서류, 폐기물의 처리와 관리제도, 비밀의 신고와 심사,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등의 내용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18. 비밀유지 협의회(保密协议)

기관이나 단체 등 조직에서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종업원, 혹은 하청업체, 공급상, 수탁자 등 조직 외부의 제3자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비밀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종의 서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19. 경업제한(竞业限制)

비밀정보를 취득하던 종업원이 타 업체로 이직을 하거나 혹은 스스로 경쟁영업을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종업원에게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혹은 연봉계약 체결 시점에 작성함) 일정기간 동안 경쟁업체에 이직하거나 스스로 경쟁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서약서이다.

20. 직무발명(职务发明)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1. 기술수출입(技术进出口)

중국 국외에서 중국 국내로 또는 중국 국내에서 중국 국외로 무역, 투자 또는 경제 기술합작 등의 방식을 통해 기술을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기술 수출입 행위에는 특허권의 양도, 특허 출원권 양도, 특허실시허가, 노하우 이전, 기술 서비스 및 기타 방식의 기술이전이 포함된다.

22. 개량기술(改进技术)

기존의 기술을 활용하여 해당 기술의 범위를 벗어나는 새로운 기술을 얻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23. PCT 출원(PCT 申請)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국제 출원절차를 통일하고 간소화하기 위하여 다자간 조약으로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에 의거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등을 통해 용이하게 국제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다.

25. 사법해석(司法解釋)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법의 흠결을 보충할 판례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제시하는 법률 해석의 기준을 말한다.

26. 대외무역법(對外貿易法)

상품의 수출입, 기술의 수출입 및 국제 서비스 무역 등 외국과의 무역 및 대외무역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해서 규율하는 중국의 법률이다.

27. 불가항력(不可抗力)

당사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거래 관념상 필요한 주의와 예방으로 막을 수 없는 일을 의미한다.

28. 관할권(管轄權)

특정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29. 중재(仲裁)

법원이 아닌 제3자 혹은 제3의 기관이 분쟁 당사자 사이에 들어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일을 말한다.

Ⅶ. 국제공동연구 계약 체크리스트

| 조항 | 내용요약 | 검토사항 |
|---------------|---|--|
| 전문 및 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칭 - 주소 - 설립형태(개인, 법인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칭과 주소는 당사자를 특정하는 요소이므로 정식 명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 주소도登記부에 따른 주소를 기재하여야 함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 설명 - 계약 목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 특정 및 계약의 해석 시 참조를 위해 당사자 설명과 계약 목적을 간단히 기재하도록 함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서 본문에서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는 가능하면 모두 정의할 필요가 있음 - 용어 정의를 소홀히 하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능한 한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함 |
| 프로젝트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범위 2) 역할과 책임 3) 허가 및 허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의 범위, 각 당사자의 맡은 역할과 책임 사항은 계약서 본문에 일일이 적을 수 없으므로, 별지를 사용하여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재한 후 계약서 본문에 부록으로 추가하도록 함 - 각 당사자별로 연구책임자를 두어 각자 맡은 역할을 관리하도록 함 - 각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은 계약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누가, 언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지 등) 기재하여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 |
| 연구비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비 부담 2) 연구비 지원 3) 지연손해금 4) 면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자 맡은 부분에 대한 연구비는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 연구비를 지원 받는 경우 금액, 지급시기, 예상결과물, 보고서 제출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부록으로 작성하도록 함 - 연구비를 지원 받는 경우 연구비 지급이 적시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연손해금과 같은 벌칙을 부과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음 |

| | | |
|--------------------|--|--|
| 지식재산의 사용과 활용 | <p>1) IP 소유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 - 단독 개발된 '성과' - 공동 개발된 '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은 각자 소유하고 공동연구의 영향을 받지 않음 - 단독 개발된 '성과'는 개발 당사자 단독 소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협의에 따라 공동 소유하는 경우도 있음 - 공동 개발된 '성과'는 공동 소유하는 것이 일반적임. 다만, 지분을 균등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건별로 지분을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도 있음 |
| | <p>2) IP 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 - 단독 개발된 '성과' - 공동 개발된 '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은 각자 책임임 - 단독 개발된 '성과'는 단독 소유의 경우 소유자 책임이며 비용도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임. - 공동 개발된 '성과'는 지분에 따라 비용 분담하여 공동 출원하는 것이 일반적임. |
| | <p>3) IP 사용 및 라이선스 부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 - 단독 개발된 '성과' - 공동 개발된 '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은 연구개발 및 결과물 사용 목적으로 사용을 허락해야 공동연구의 의의가 있음. 연구와 관련한 사용은 무상, 비독점적, 비양도, 재실시 불가가 일반적이며, 상업적 사용의 경우 별도의 계약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단독 개발된 '성과'는 단독 소유하는 경우 공동연구의 목적에 따라 상대방에게 무상, 비독점적, 비양도, 재실시 불가의 조건으로 사용을 허락하는 것이 일반적임. 다만 상업적 사용 시 별도의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 공동 개발된 '성과'는 다른 공유자 동의나 보상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임. - 자유로운 사용을 허락하되, 다른 공유자의 경쟁사에 라이선스를 주거나 지분을 양도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협의할 수도 있음 - 라이선스와 관련해서 한국 혹은 중국에 필요한 절차는 해당 국가 당사자가 상대방을 위하여 이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함 |

| | | |
|--------------------|--|--|
| | <p>4) 종업원이나 제3자에 의한 발명</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은 직무발명에 대해 사용자 주의를 취함 - 한국은 원칙적으로 모든 발명의 권리는 종업원이 원시적으로 소유하므로, 공동연구계약에 따라 소유 및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종업원으로부터 모든 권리를 승계받아야 함 - 승계 의무를 각 당사자에게 부과하여 연구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 | <p>5) 성과를 이용한 '개량'</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연구 '성과'를 이용하여 '성과'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개량'을 창조하는 경우, 그 권리 귀속에 대해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 '개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개량'의 창작자에게 권리가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임 |
| <p>학술적 사용과 간행물</p> | <p>1) 학술적 사용 2) 출판 3) 비밀통지</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나 연구소는 공동연구의 결과물에 관하여 논문이나 보고서로 공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원칙적으로 학술적 사용과 자유로운 출판을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 공동연구의 특성 상 상대방의 비밀정보나 특허 출원 전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보통 출판 전에 상대방에게 미리 살펴보도록 하고, 일시 보류를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
| <p>비밀유지</p> | <p>1) 비밀유지의무 2) 예외 3) 기간 4) 개인정보의 보호</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기간 동안 주고 받는 주요 정보나 자료는 비밀정보로 정의하고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비밀유지기간은 기술의 발전 속도 등에 따라 3~10년 정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 계약이 어느 일방 당사자의 잘못으로 해지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반환하게 하고 모 |

| | | |
|---------|---|---|
| | | <p>든 사본을 폐기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p> |
| 기술의 수출입 | <p>1) 중국-대외무역법 및 기술수출입 관리조례 2) 한국-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p> | <p>- 기술 수출입에 관한 각 국가의 인허가 및 절차는 해당 국가의 당사자가 상대방을 위해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함</p> |
| 면책 | <p>1) 연구결과에 대한 면책 2) 계약 관련 손해 면책 3) 손해의 한도</p> | <p>- 연구결과를 보장하기는 어려우므로 연구결과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서로 부담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 계약의 이행, 불이행, 그 밖에 계약에 참여하여 발생하는 간접적 손해(이익 감소, 이미지 손상, 인력 유출 등)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어떠한 보장을 할 수 없음 - 설령 계약관련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의 상한선을 규정하여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p> |
| 불가항력 | <p>1) 의무 정지 2) 상대방에 대한 통지 3) 장기간 정지에 의한 해지 4) 예방 의무</p> | <p>- 천재지변, 전쟁, 전염병 등 어느 일방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이행의무를 잠정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이 일반적임 - 너무 오래 중단되면 안 되므로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도 재개될 가능성이 적다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탈퇴를 허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p> |
| 종료 | <p>1) 계약기간 2) 해지 3) 해지 효과 4) 존속 규정</p> | <p>- 계약기간은 연구기간과 동일하게 정함 - 계약이 중간에 해지될 수 있도록 해지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해지 절차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해지가 되는 경우 그 때까지 진행된 연구결과물에 대한 권리문제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미지급된 연구에 대한 보수 문제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p>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더라도 손해 배상, 지식재산권 귀속 및 사용, 분쟁해결 등은 계속 효력을 유지해야 함 |
| 법률준수 | 법률 준수 및 상호 협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양국의 법제도를 상호 준수하고 존중하는 것은 기본 전제임 |
| 통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지 주소 - 연락처 정보 업데이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공동연구는 거리, 시간상 제약이 있으므로 통지의 방법, 절차, 횟수 등을 가능한 한 유연하게 정할 필요가 있음 |
| 분쟁해결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준거법 2) 협상 3) 소송 4) 중재 5) 지식재산권 혹은 비밀 보호 관련 법적 절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거법은 자국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함 - 만약 준거법을 양보했다면 분쟁해결의 장소를 양보 받는 것이 바람직 - 분쟁이 발생하면 우선 당사자 간의 호의로 협상을 진행할 것을 권장함 - 협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소송과 중재를 둘 다 할 수는 없고 반드시 하나만 선택하여야 함 - 소송은 특정 국가의 절차법에 따라 그 나라 법원에서 그 나라 언어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상대방에게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음 - 중재는 세계 공통의 규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각국의 중재원에서 진행하더라도 각 당사자가 자신의 국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영어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비교적 공정하며, 1심제이므로 비용도 경제적인 편임 - 중재지는 제3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 지식재산권 혹은 비밀보호와 관련된 법적절차에 대해서는 특정 관할권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 |
| 일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도금지 2) 권리 불포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의 권리의무는 양도 불가능하다고 합의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3) 에이전시 관계 금지 4) 완전합의 5) 언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님을 의례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임 - 계약서 어떤 문구도 일방이 상대방과 에이전시 관계이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 이전에 구두나 서면으로 합의된 내용이 있으면 본 계약으로 모두 대체되도록 하여야 계약 내용이 2중으로 합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 계약서 작성언어 및 다른 언어로 작성된 계약서 상호간의 우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
| <p style="text-align: center;">서명</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명일 - 성명 - 직책 - 서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명일이 계약 효력발생일인 경우가 많으나, 국제공동연구계약은 서명을 각자 다른 날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효력발생일을 언제로 할지 명확하게 정해야 함 - 서명하는 자는 각 당사자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므로 그러한 권한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 <p style="text-align: center;">부록</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프로젝트 2) 재정 기여금 3) 비밀 관리 규약 4) 비밀 보호 서약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범위, 기간, 내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부록으로 추가하여야 함 - 각 당사자가 맡은 역할, 책임사항, 준수할 일정, 제출할 결과물이나 보고 등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함 - 연구비를 지원받는 경우 금액, 지급일, 지급방법, 환율 계산, 미지급 시 벌칙 등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함 - 비밀 관리 규약을 제정하고 프로젝트 참가자들에게 비밀 보호 서약서를 징구하는 것이 바람직 |